

言論仲裁

1999. 겨울

▣ 特輯 / 〈결산〉 1990년대 한국언론과 언론법제

- 언론관계판결 경향
- 언론자율규제의 변천과 성과
-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
- 언론법제연구 동향

▣ 國內論文

한국언론과 보도유보(엠바고)

▣ 寄稿

공직자와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 資料 IV / 최근의 國內言論關係判決

1.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공익을 목적으로 방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동의없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넘겨받아 음성변조처리 없이 방송하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3. 원고의 공천헌금수수 관련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

言論仲裁委員會

言論仲裁

1999. 겨울

▣ 特輯/〈결산〉 1990년대 한국언론과 언론법제

- 언론관계판결 경향
- 언론자율규제의 변천과 성과
-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
- 언론법제연구 동향

▣ 國內論文

- 한국언론과 보도유보(엠바고)

▣ 寄稿

- 공직자와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

言論仲裁委員會

言論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 法律」, 「放送法」 및 「綜合有線放送法」,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거 反論 및 訂正報道請求와 追後報道請求에 따른 紛爭을 仲裁하고, 言論侵害에 관한 사항을 審議합니다.

1999. 겨울

季刊 1999년 겨울호
 제19권 제4호 통권73호
 印刷: 1999년 12월 20일
 發行: 1999년 12월 30일
 登錄: 1981년 10월 14일
 登錄番號: 바-692
 發行人: 朴英植
 編輯人: 李柄熏
 印刷人: 金行述
 發行: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732-6031~5, 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 730-9420, 730-5487,
 732-7585
 인터넷 홈페이지: www.pac.or.kr
 E-mail: research@pac.or.kr

寫眞植字: 태성기획
 印刷: 정화인쇄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평동 39
 題字·金膺顯
 本誌는 雜誌倫理實踐要綱을 준수한다.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
 다.
 ※이 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조성
 한 공익자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비매품>

特輯/〈결산〉 1990년대 한국언론과 언론법제

언론관계판결 경향 황도수 · 6
 언론자유규제의 변천과 성과..... 최선열 · 26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 한동원 · 39
 언론법제연구 동향 정진석 · 48

國內論文

한국언론과 보도유보(엠바고) 김해도 · 70

위원칼럼

언론의 진실보도와 오보 공병진 · 80

寄稿

공직자와 명예훼손: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염규호 · 82

地方討論會

<광주> 언론자유와 중재제도 서정우 · 94
 토 론 사회 · 구양술 · 96
 <경남>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김현태 · 99
 토 론 사회 · 조현종 · 101

해의시찰

해외언론계 시찰기 황정근 · 103

해외동향

資料 I / 言論仲裁申請事例 114

資料 II / 外國의 言論關係判決

獨逸 · 프랑스 142

資料 III / 外國新聞評議會事例

美國 · 濠洲 149

資料 IV / 최근의 國內言論關係判決

1.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공익을 목적으로 방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54
2. 동의없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넘겨받아
 음성변조처리 없이 방송하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156
3. 원고의 공천헌금수수 관련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161

1999년도 총목차 색인 169

언론관계 판결 경향

황도수

변호사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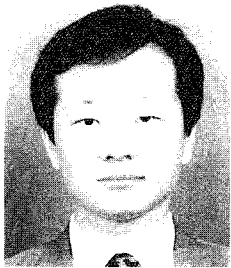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고 있고,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주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체제에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는 이문이 없다.

한편,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삶

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로부터 파생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 향유하며, 이러한 기본권 향유를 위하여 국가가 국가안전을 보장하며, 건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게 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자유가 서로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호 충돌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3자가 향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출
서울대 법학박사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희
대 겸임교수
- 헌 변호사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제243조의 성폭속에 관한 죄 기타 기망 및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이하, 방송법 제41조 이하,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이하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 및 국가보안법 규정 등은 위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검양을 미덕으로 공개적인 표현을 삼가하는 전통적 사회에서 상대주의를 기본으로 개방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서구식 민주주의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출판에 관한 법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에 우리 사법부가 형성한 언론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언론관련 판례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판례를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고, 사후제한은 다시 언론·출판의 자유가 국가적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 사회적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 개인적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개인적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제도, 불법행위책임제도, 형사법적 제재제도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였다.

II. 1990년대의 언론관계판례에 대한 개관

1990년대의 언론관련판례 경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980년대에 형성된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내용이 풍부한 판례를 다량 생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수립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1980

년대에 그 동안 전개되어 왔던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형법의 명예훼손, 음란반포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종래의 해석을 재차 확립하는 한편, 언론기본법 제49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밝힘으로써¹⁾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가 별개임을 분명히 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이론적 기본틀을 형성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980년대 후반 1989. 9. 4. 88헌마22사건에서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질 수 있는 외연의 폭을 대폭 넓혀 놓았다.

이러한 1980년대의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1990년대는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었다. 다양한 이론형성은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활동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외국의 이론을 다양하게 도입하면서 언론·출판 자유의 실질화에 앞장섰다.

헌법재판소는 1990. 4. 2. 89헌가113사건에서 명확성이론을 전개하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및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던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6. 10. 4. 93헌가13 등 사건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하는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

1) 대법원 1986. 1. 28. 판결 85다카1973

헌법재판소는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외국의 이론을 다양하게 도입하면서
언론·출판 자유의 실질화에 앞장 서

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전검열·허가의 절대적 금지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98. 4. 30. 95헌가16사건에서는 “‘음란’이란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예술적·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못하는 표현이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법원도 1990년대에 언론관련판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구체적인 언론관계분쟁에서 대법원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이론이라든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이론의 내용을 풍부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항목을 나누어 1990년대의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례이론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Ⅲ. 사전제한의 금지

1. 개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문언에 충실하여 헌법재판소는 1996. 10. 4. 93헌가13 등 사건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의 명문에 따라 ‘허가나 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허가나 검열’에 대하여 절대적 금지를 선언한 동전의 반대면으로, 헌법재판소는 ‘허가나 검열’의 개념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1996. 10. 4. 93헌가13, 93헌바10(병합) 결정에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로 정의하여, 허가·검열의 개념과 범위를 최소화하였다. 이로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은 ‘허가·검열제도’와 ‘기타 사전제한제도’로 이원화되게 되었다.

2. 허가·검열

가. 요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하면,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일반인들에게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만이 허가·검열에 해당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는 헌법상의 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²⁾ 그리고 정신 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나, 발행된 정간물을 공보처에 납부하는 것은 그 정간물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³⁾

또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제도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의 경우에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물적' 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법정하여 등록하게 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보도의 '내용'을 검열하고 간섭하는 것과는 구분된다.⁴⁾ 마지막으로 '일반대중', 즉 민주 시민에 도달되는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등급을 심사하는 것도 허가나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의 방론에서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설사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상영금지에는 심의의 결과가 아니고 단지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⁵⁾라고 판시

하였다.

나. 효과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명분에 따라 '허가나 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법률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언론·출판의 내재적이고도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하였다.⁶⁾

3. 금지가처분 : 출판물인쇄배포 등, 방영 등

가. 의의

이론적으로 허가·검열 이외의 사전제한의 형태는 다양하게 예상할 수 있으나, 법원에 의한 금지가처분제도를 가장 일반적인 사전제한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금지가처분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일정한 표현행위가 이미 행해져서 제3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한 뒤, 더 이상의 법익침해적 표현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의 금지가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표현되지도 아니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제3의 법익이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미리 표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를 제한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금지가처분이다. 전자의 금지가처분은 이미 표현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위법한 효과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게 하려는 중지효과를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사후제한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고,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과 관련되는 사전제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헌법 제21조 제2항의 주된 목적을 '발표된 뒤에 책임진다'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하급심 결정례

2) 1996. 10. 4. 93헌가13, 93헌바10(병합) 헌8-2,224

3) 1992. 6. 26. 90헌바26 헌4,371

4) 1992. 6. 26. 90헌가23 헌4,308

5) 1996. 10. 4. 93헌가13, 93헌바10(병합) 헌8-2,224,225

6) 1992. 6. 26. 90헌가23 헌4,308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가적 법익의 충돌시 언론·출판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헌재 결정 나와

금지가처분제도를 운영하는 우리 나라 하급심 결정례에서도 크게 두 종류의 판례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사전제한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설정한 결정례이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6. 6. 11. 96카합1545 서적의 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어떠한 표현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 등에 대한 금지청구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제한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유사한 것으로서 표현행위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출판 등의 금지청구권은 피침해자의 사회적 지위, 그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 침해행위의 태양 및 정도, 침해자의 주관적 의도, 침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지방법원 1998. 11. 11. 자 결정 (98카합3441)에서도 “언론·출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헌법 제21조 제4항), 고위 공직자의 신념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다는 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적 주장의 대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장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견해의 표명에 대하여도 공정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나 ‘비방중상이나 과도한 인신공격이 되는 정도의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둘째는, 가처분의 일반이론에 따라 표현에 대

한 사전제한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정례이다. 서울지방법원 1996. 11. 23. 96카합3181 인쇄물판매, 배포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일반원칙을 선언한 뒤,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언론기관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라고 판시하였다.⁷⁾ 서울지방법원 1998. 3. 18. 자 결정 (98카합878)에서도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을 주사파로 묘사하는 이 사건 기사 부분을 게재한 이 사건 월간지의 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신청인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은 그 침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월간지 중 이 사건 기사 부분의 발행, 판매,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하급심판례의 경향이 이원화되는 이유는 금지가처분제도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적인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처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청구

7) 위 법원 위 판시부분을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에서 인용하였다.

원인을 살펴서 각 기능에 맞는 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 효과

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언론·출판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 결정의 주문으로 선고된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7. 4. 98카합1639 결정의 주문 ; 신청인들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연대하여 피신청인을 위하여 공동보증으로 금 5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1) 일정한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2) 일정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여서는 아니되고, (3) 일정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게재한 유인물, 광고지, 기타 출판물 등의 인쇄물을 제작,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지방법원 1998. 3. 18. 98카합878 결정의 주문 ; 1.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편집한 월간지 일정기재 부분을 삭제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월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월간지 및 그 인쇄물 지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만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월간지 중 일정 기재 부분을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 또는 말소한 후 위 월간지의 보관을 풀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일정 기재 부분을 판독할 수 없게 삭제 또는 말소한 후에는 위 월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2. 피신청인은 일정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단행본 및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광고지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를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IV. 국가적 법익과의 충돌

1. 개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가적 법익과의 충돌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가적 법익이 충돌할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었는데,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전개한 이론들이다.

2. 명확성의 원칙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1996. 8. 29. 94헌바15, 판례집 8-2, 74; 1996. 11. 28. 96헌가15, 판례집 8-2, 526 참조).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형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에 의해 보호되

8)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선거기간 중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

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⁹⁾

헌법재판소는 1990. 4. 2. 89헌가113결정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및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던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하여 ‘문제의 소재는 범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에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적 요소가 생기게 되어 있는 점이며, 이는 단순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떠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성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2. 2. 25. 89헌가104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혼용하면서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가능한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관계당국에서 어떠한 사항을 군사기밀로 규정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실질가치의 유무 및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군사기밀이 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이 군사기밀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단적이고 배타적인 지정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법 소정의 군사기밀의 개념을 보면 군사사항을 거의 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즉, 군사기밀보호법 소정의 군사기밀은 그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무효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아울러 이를 신장하기 위하여서는 그 범위가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온당하며, 그럼으로써 과잉금지(특히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고 규범 내용의 광범성에서 배태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의 우려도 불식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 선거운동의 제한과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1995. 7. 21. 92헌마177,199(병합)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사건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언론·출판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기보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가 갖는 긍정적 및 부

9)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정적 기능, 우리 나라에서의 여론조사에 관한 의견 및 신뢰도, 국민의식수준, 선거문화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V. 사회적 법익과의 충돌

1. 개설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과의 충돌문제는 형법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다.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 의한 음화반포 등 죄가 그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례

음란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1970. 10. 30. 70도1879판결에서 “비록 명화집에 실려 있는 그림이라 하여도 이를 예술, 문학,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품 특히 성냥갑 속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사진을 복사제도하거나 시중에 판매할 때에는 이를 보는 자에게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동시에 일반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의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화라고 본다”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건전한 윤리감정을 침해하느냐 여부를 음란성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판례이론은 1990년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대법원은 1995. 6. 16. 94도2413 판결에서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형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목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그 본지는 과거와 같이 하면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결정례

1990년대에 들어와 헌법재판소는 음란에 관하여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1998. 4. 30. 95헌가16결정에서 “모든 표현이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표현은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대립되는 사상의 자유경쟁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는 국가의 개입이 1차적인 것으로 용인되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데, 위에서 본 헌법 제21조 제4항이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음란 또는 저속한 표현 중 ‘음란’이란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1990년대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 및 요건, 효과에 관한 법적 해석·적용이 풍부하게 전개된 시기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이론은 대법원의 판례이론과 반드시 배치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이론 사이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VI. 개인적 법익과의 충돌 : 반론보도청구

1. 개설

대법원은 1986. 1. 28. 85다카1973 판결에서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위 규정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거니와, 언론사측으로서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 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절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판시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러한 1980년대의 대법원 해석은 1990년대에 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대법원은 1996. 12. 23. 95다37278판결에서 ‘구 방송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방송의 보도가 개인적인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형성에 미치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는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입론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반론보도청구가 합헌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1. 9. 16. 89헌마165결정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방송법 제41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의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위 법률조항은 비록 그 표제 및 범문 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행 정

정보도청구권제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론개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반론보도청구제도가 합헌임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1990년대 중반에 입법에 반영되었는 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이하, 방송법 제41조 이하,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이하의 규정에서 그 권리의 제목을 종래 정정보도청구권에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종래 정정보도청구권의 명칭이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변경되면서 '정정보도'개념은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기존의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보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가 전환되었고, 이러한 정정보도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아무튼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은 1990년대에 들어와 요건과 효과에 관한 해석·적용을 통하여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요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41조 제1항,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제1항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반론보도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첫째,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보도를 대상으로 할 것, 둘째,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받았을 것, 셋째, 보도내용과 피해자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¹⁰⁾

가. 사실적 주장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소정의 반론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비평이나 평론과 같은 주관적인 의견의 개진에 대하여는 반론이 허용되지 아니한다.¹¹⁾ 그러므로 "KBS가 유적지를 불법훼손한 것처럼 잘못 보도"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보도에서 적시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허가없이 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동법 제82조 제2항) 등에 위반한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불법'이라는 것은 단지 보도자측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고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¹²⁾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이하 원문보도라 한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참조).¹³⁾

나. 피해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명예훼손의 정도에 이를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반대의 주장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일정한 보도에 대해 신청인(피해자)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

10) 서울지방법원 1997. 11. 28. 97카기6915

11) 서울지방법원 1998. 2. 6. 97카기6916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11. 19. 98카합5492

13) 대법원 1998. 2. 24. 96다40998

14) 서울지방법원 1998. 2. 6. 97카기6916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 여부는 보도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 보도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는 피신청인의 주장, 입증에 없는 이상 신청인은 일응 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¹⁵⁾

다. 개별적 연관성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당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참조). 여기에서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구 방송법이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위 법 개정으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사실 보도한 내용과 개별적으로 연관된 사람(위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당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할 것이다.¹⁶⁾

3. 항변사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방송법 제41조 제3항,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제3항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2항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 방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에서 인정되는 이들 항변사유는 명예훼손에서 인정되는 항변사유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의 피청구인은 명예훼손에서 인정되는 항변사유로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8. 11. 19. 98카합5492결정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언론보도

15) 서울지방법원 1998. 2. 6. 97카기6916

16) 대법원 1996. 12. 23. 95다37278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그 반대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가의 판단은 사건 보도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 보도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7. 16. 98카합3568결정에서 '피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보도 및 그 후에 방송된 1998. 4. 26.자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이미 위 청구인의 반박주장을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내용 중에 위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 보도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중에 나타난 위 청구인의 반대주장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보도 이후에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위 청구인의 반대주장이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 자체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으로서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위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항변에서 주목할 것으로는 피청구인이 사건 보도를 하기 전에 청구인측에게 수 차례에 걸쳐 위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정당한 이익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¹⁷⁾

4. 절차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방송

법 제42조,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제10항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간이절차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1. 9. 16. 89헌마165결정 및 1996. 4. 25. 95헌바25결정에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또한 예외사유도 법의 문언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들이므로 반론권을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본안절차에 따르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자유와 본질적 내용과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5. 효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4항, 제5항, 방송법 제41조 제4항 내지 제6항,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제4항에 의하면,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고,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방송국이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11. 19. 98카합5492

1990년대 들어 개인의 권리의식 강화와
언론·출판 자유의 신장으로 말미암아
인격권, 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소송 크게 증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수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법 제41조 제5항이 규정하는 정정보도문의 자수 제한은 훈시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이 방송을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문보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관한 간결한 기재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정정보도문의 자수가 원문보도문의 자수를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¹⁸⁾

Ⅶ. 개인적 법익과의 충돌 ;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 개설

민법 제750조 및 제764조가 정하는 불법행위규정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남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개인의 법익침해를 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개인의 권리의식의 강화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초래되는 인격권, 재산권 내지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위법한 언론·출판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례내용이 충실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침해권리와 다양한 형태의 침해태양을 찾아 볼 수 있다.

2. 요건

가. 가해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8. 2. 27. 97가합

15881판결에서 '피고 이○○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자유기고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사와 같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기사에 관하여 취재원이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자신의 사진을 삽입할 것까지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여성잡지를 발간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이○○로부터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사진을 제공받을 때에 그 취재원을 상대로 진실로 인터뷰를 한 것인지, 그의 사진을 사용하는데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사를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로서도 이 사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이○○가 도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언론·출판을 통한 침해행위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민사적인 주의의무 위반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행정법이나 형사법에서 정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28. 96가합12130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송을 포함한 언론기관의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언론기관에 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도주체의 보도행위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임을 먼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방

18) 대법원 1996. 12. 23. 95다37278

송보도 주체에게 요구되는 보도자로서의 주의의 무관 방송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확인의무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도의 공정성이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보도로서의 균형있는 보도와 동일 시간이나 동량지면을 할당하여 사물에 대한 쌍방의 견해를 편향되지 않게 취급하려는 보도경향으로서의 형평적인 보도를 의미하고, 보도의 객관성이란 전달자가 보도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1998. 7. 14. 96다17257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 예하 사초경찰서 소속 수사담당 경찰관은 경찰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원고 유명자 등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피고 언론 각사 소속신문 및 방송 기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고 유명자 및 망 정성삼 등의 피의사실을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각 해당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원고 유명자 및 망 정성삼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위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피해법익

종전에는 주로 명예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남용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적 법익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990년대에 들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활동으로 국민의 기본권 의식이 강화된 데에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신용권 등이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위법한 표현행위로부터 보호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될 이익으로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22조에 근거를 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1998. 9. 4. 96다11327 판결에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27. 97가합15881 판결은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그의 동의없이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을 촬영한 사진이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 이○○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도록 피고회사에 기고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그 법인이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 내용이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때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결 등 참조).¹⁹⁾ 따라서, 자연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도 그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 신용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²⁰⁾

라. 침해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²¹⁾

서울지방법원은 1996. 5. 14. 94가합91515결정에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주체는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전 취지나 주위의 사정상 특정인을 추지(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고, 특히 잡지의 배포에 의한 사실적시라는 방법이 취하여진 때에는 그 독자 전원이 명예가 훼손된 특정인이 누구인가를 알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있어서 그 사실의 표현 전체나 특정인에 대한 예비지식을 종합해서 적시된 사실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를 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한편 일반적으로 취재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수기형식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취재원의 동일

성에 관한 오인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재원의 특정에 관하여 이를 아예 추상화하거나 아니면 비록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한 특정방법을 통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단순히 독자들에게 가벼운 오락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가공의 사실을 수기형식으로 기사화하는 경우에도 독자들이 기사 중의 모델을 실제 인물에 맞추어서 추측하는 수도 있으므로 기사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반인들이 그 기사내용을 완전한 허구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승화시켜 특정인의 구체적 행동을 추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뒤, '비록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서울대학교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이고 특히 원고 오영나, 원고 이호영은 전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인 점, 서울대학교 사회대에는 86학번 여학생들이 49명의 소수인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모델이 원고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침해방법

신문이나 월간지 등에 게재된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²²⁾ 그 침해의 태양은 다양하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기사나 보도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통상의 건전한 상

19) 대법원 1998. 10. 27. 98다9892

20)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97가합93499

21) 대법원 1998. 10. 27. 98다9892

22) 서울고등법원 1997. 12. 5. 96나39389

식을 가진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신문을 읽거나 보도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나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나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참조),²³⁾ 기사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하는 경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제(제목)의 성질상 다소간의 과장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표제만 읽고 본문을 읽지 아니하는 독자가 적지 아니하므로 본문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장, 윤색된 제목은 그 제목만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⁴⁾ 즉,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²⁵⁾ 그리고, 비록 위 각 기사와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자의 단순한 견해나 추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저술 기법 면에서 관련자들의 증언과 문헌을 인용하는 형식을 일부 취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²⁶⁾

예술 관련 기사에 의한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작품이나 창작 활동에 대한 견해 표명 또는 비평의 차원을 넘어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그러한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함에는, 기사의 명시적인 내용 이외에도 제목과 전문의 내용, 구성과 배치, 편집 의도 그밖에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지식 수준, 독자들이 기사를 읽는 방법 등을 종합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²⁷⁾ 서울지방법원 1998. 8. 12. 98가합 15397판결에서는 ‘한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 만화(Cartoon)의 경우, 그 장르의 성격상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 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함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한편, 만평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그를 회화적으로 묘사한 경우, 그 만평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않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 감정이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만평을 통해 표현된 사상이 허위의 내용이고, 나아가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의 기법이나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민법상의 명예훼손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 이외에도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비방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표현의 방법은 질문의 형태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이라는 식으로 타인의 주장 또는 풍문을 전파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에도 일반 시청자나 독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발언자가 그 주장 내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 또는 풍문의 존재 자체만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주장의 내용을 이

23) 부산고등법원 1998. 7. 24. 96나8789 ; 서울고등법원 1998. 7. 9. 97나47790

24) 부산고등법원 1998. 7. 24. 96나8789

25)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97나57360

26) 서울지방법원 1998. 7. 1. 97가합88220

27) 서울지방법원 1998. 4. 22. 96가합7224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표현 방법 등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과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루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그 주장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으로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²⁸⁾

3. 항변사유

가. 개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에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²⁹⁾

또한,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³⁰⁾

아래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의 보도에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공공의 이익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범,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4. 12. 선고94도3309 판결, 1996. 10. 11. 선고95다36329 판결,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³¹⁾ 1990년대에는 남북관련문제에 관한 보도,³²⁾ 대통령선거에 관한 보도,³³⁾ 범죄사건에 관한 보도,³⁴⁾

28)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97가합93499

29) 대법원 1998. 7. 14. 96다17257

30) 대법원 1998. 9. 4. 96다11327

31) 대법원 1998. 7. 14. 96다17257

32) 서울고등법원 1997. 12. 5. 96나39389

33) 서울지방법원 1998. 7. 1. 97가합88220

34) 대법원 1998. 7. 14. 96다17257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식품검사 행정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³⁵⁾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 진실 내지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의 신빙성, 피해자와의 대면 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³⁶⁾ 대법원은 ‘피고가 열람한 수사기록은 위 박○○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 역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위 박○○의 진술만을 근거한 것으로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³⁷⁾ ‘형법 제126조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 제27조 제4항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 담당 공무원의 발표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이 진실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 담당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³⁸⁾ 한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4. 17. 97가합6965 판결에서는 ‘수사당국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취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과정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하여는 더욱더 진위여부의 확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³⁹⁾ 같은 취지에서 서울고등법원 1996. 9. 18. 95나41965결정은 ‘일반적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 법성이 없다 할 것이나,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볼 때 신문사가 통신사와 통신 송수신 및 전채계약을 맺고 그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면서도 그 전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

35) 부산고등법원 1998. 7. 24. 96나8789

36) 대법원 1998. 5. 8. 96다36395 ; 대법원 1997. 9. 30. 97다24207

37) 대법원 1998. 5. 8. 96다36395

38) 대법원 1998. 7. 14. 96다17257

39) 대법원 1996. 5. 28. 94다33828

1990년대는 80년대의 이론적 모색단계를 벗어나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판례내용이 풍부하게 전개

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4. 효과

가. 개설

언론·출판의 자유의 남용이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제750조 및 제75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남용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히 정신적 손해에 머무르지 아니한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재산적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⁴⁰⁾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건 기사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기사의 크기, 기사를 포함한 보도매체의 발행 부수 및 사회적 영향력,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⁴¹⁾

다.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청구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되고 나면 그 사후 구제만으로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피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장래 침해 행위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사건 예방적 구제의 수단으로 장래 침해 행위의 정지·금지라는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⁴²⁾ 그리고, 원고가 위 기사로 명예 훼손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⁴³⁾

다만, 사죄광고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1991. 4. 1. 89헌마160결정에서 '우리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죄광고를 구하는 판결이 아니고도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하여도 사죄광고의 경우처럼 양심결정의 강제나 인격권을 무시하는 등의 헌법위반의 문제는 별로 생길 수가 없다. 취소광고라 하더라도 윤리적 판단이 여기에 개재된 것이 아니고 공연히 적시된

4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28. 96가합12130 참조.

41) 서울지방법원 1998. 9. 30. 98가합18280 ; 서울지방법원 1998. 12. 4. 97가합90841 참조.

42) 서울지방법원 1998. 7. 1. 97가합88220

43) 서울지방법원 1998. 9. 30. 98가합18280

사실의 존재의 취소를 명하는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명하는 처분이라 함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단 생긴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가능한 한 정정시키려는 처분 곧 부정적 평가의 자료가 되었던 정보의 정정의 효과가 있는 처분을 뜻한다 한다. 사죄광고 아닌 위에서 본 다른 방법도 민법 제764조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다른 처분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또 금전배상청구도 배제하지 않는 터이며 결코 사죄광고만이 명예회복에 유일무이의 수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태여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 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제도는 어디까지나 과도한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하였다.

라. 간접 강제

한편, 부작위 채무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부작위를 명하는 것만으로 그 판결의 실효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판결 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93조 제1항 참

조). 따라서, 만약 피고들이 위 부작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은 그러한 경우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위반 행위 1건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씩을 지급할 의무를 명할 수 있다.⁴⁴⁾

VIII. 결론

위에서 1990년대 언론관계관결의 경향을 대체로 살펴보았다. 본론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1990년대의 언론관계관결의 경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980년대의 이론적 모색단계를 벗어나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관결의 내용이 풍부하게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관결이론이 상속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아직 사전제한의 금지와 관련하여 '허가·검열 이외의 사전제한'에서 적용될 법리가 정돈되지 아니하였고, 음란성개념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괴리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혼용됨으로써 이들 법리가 차지하는 각자의 위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새로운 2000년대는 1990년대에 풍부하게 형성된 법이론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2000년대 사법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

44) 서울지방법원 1998. 7. 1. 97가합88220

언론자율규제의 변천과 성과

최 선 열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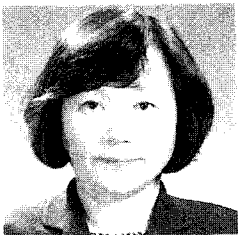
언론인의 윤리문제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높은 공익적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은 언제 어디에서고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999년 7월 19일자 기자협회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적 파탄이 아닌가?”라고 언론인들에게 묻고 있다. 그날 기자협회보의 머리기사인 표제는 “평기자에서 사주까지, 서울과 지방 모두, 사기, 투기, 도박, 수뢰, 언론인 비리 끝이 안 보인다.”¹⁾였다. 공영 방송사 전 사장이 재임시 재벌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경제부 기자가 취재 중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어 사법처리되고, 주요 일간지 주필의 부동산 투기의혹, 언론 사주의 탈세, 원정도박, 붓물처럼 터졌던 언론계의 비리에 분노했던 국민들은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한 사람

이 현직 기자였다는 사실과 그것이 정권핵심자에게 전달되었고 또 다른 기자에 의해 무단 유출되어 야당 정치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90년대 초부터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자사 윤리 강령을 만들었고 1996년에는 새로운 신문윤리 강령이 선포되는 등 90년대에는 언론의 자율규제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 매우 발전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들이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인가?

우리 나라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윤리강령을 접한 언론인이 많지도 않았고, 신문윤리강령과 같은 자율규제는 언론인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기·김학수, 1997; 안병찬·정연구, 1996). 결국 온 국민이 되뇌이던 ‘교육현장’이 교실의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언론윤리강령도 언론인의 ‘도덕적 파탄’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90년대의 몇 가지 사회사적 요인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90년대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였다. 우선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결과 우리 사회는 서서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 이화여대 영문과 졸, 미국 위스콘신대 언론학 박사
□ 코리아헤럴드 기자
□ 현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중재위원

1) 기자협회보 1002호, 1999. 7. 19.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으로는 93년에는 WTO체제로, 그리고 95년에는 OECD에 가입되어 급격하게 세계화가 추진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급속도로 정보화가 추진되어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날 수 있을 정도로 개방화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언론환경도 크게 변화시켰는데,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자유를 누리게 된 언론사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극심한 상업주의로 치닫게 되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언론인들은 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대신 특혜와 보호를 받아오면서 특별한식과 관행을 굳혀왔다. 언론이 여전히 현재의 변화에 역행하는 관행과 특혜를 버리지 못한 데서 윤리적 위기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미국의 언론윤리학자 Goodwin(1987)은 언론인들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달리 인식하는 것이 언론윤리의 확립에 방해가 되며 언론윤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 또는 언론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충고와는 반대로 우리 나라 언론인들은 아직도 그들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면책특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적 탄압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무모한 경쟁과 상업주의에 빠져 국민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를 일삼는 언론에 대해 국민은 더 이상 관대하지 않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 건수의 획기적인 증가와 언론관련 소송을 보면 국민의 언론에 대한 냉엄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법원은 또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허가 없는 문서반출, 무단 주거 침입,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통해 언론활동의 법적 규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언론인들에게 권위주의 시대에 주어졌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과거 언론사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법적 환경이 현재 크게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언론인들의 자율규제 수준이 높아져 언론에 대한 공적 신뢰와 공익적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1920년대 신문윤리강령을 제

정한 이유가 그 당시 미국 신문의 고질적인 선정주의 때문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 언론은 특히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 탐사보도를 통해 윤리성과 공익성을 크게 향상시켰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언론이 그 당시 집요하게 닳은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이었는데 결국 자신이 윤리적이지 않고는 공인들의 기만을 감시할 수 없다는 윤리의식을 언론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임기 전에 하야시킨 그 보도 덕분에 미국언론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공익적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Goodwin, 1987). 이와 같은 사회사적 맥락에서 미국 언론들이 40년대에 확립된 막연한 사회적 책임논리로부터 탈피하여 70년대부터는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언론윤리를 확립해 왔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언론윤리강령이 추상적,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개인행동윤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정기, 1999).

90년대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사실상 모든 사회제도들이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언론윤리의 위기는 우리 언론이 바로 이 변화의 시점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기(1999)는 우리나라 언론윤리강령도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언적 윤리에서 개인의 행동윤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90년대 한국언론의 자율규제의 변화와 성과를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90년대 있었던 자율규제의 변화과정을 윤리강령, 사내 기사심의, 옴부즈맨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언론인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우리 나라 언론인들의 윤리의식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자율규제의 성과

1. 신문윤리강령

우리 나라 언론인들의 윤리문제가 이렇게 심각

현실과 유리된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윤리강령에 대해 기자들의 인지도 매우 낮아

하게 된 것은 윤리강령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내용이 언론인들의 정상적인 언론활동에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령의 내용 자체가 너무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나 지속적인 교육이 없이는 일상적인 언론 활동에 통합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언론인들의 윤리강령 접촉도와 영향력 평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안병훈과 정연구의 연구(1996)는 신·구강령 중 어느 하나도 접해보지 않은 언론인이 조사대상 기자(120명) 중 40.8%나 된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신 윤리강령을 본 기자는 30%인 36명인데 그 중 3명만이 그 내용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접촉도가 이와 같이 낮기 때문에 윤리강령의 영향력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 김정기와 김학수의 연구(1997)를 보면 보도기사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평가에서 “윤리강령이나 시행요강”은 9점 척도상 3.44로 평가되어 11개 요인 중 두 번째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속사 사주 내지 경영진의 영향력” 6.97, “소속사 간부에 의한 세부 지침 하달” 6.60, “매체간의 경쟁” 6.37, “대광고주의 영향력” 6.24, 순으로 높았다. “정부의 행정적 규제나 간섭” 5.54, “언론활동에 대한 제한입법이나 법적규제”가 4.44인 점을 감안할 때 윤리강령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90년대 우리나라 기자들이 정치적 압력이나 전문직업주의보다는 상업주의와 경쟁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먼저 1996년 채택된 새 신문윤리강령과 언론사 자체 윤리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성과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1996년 4월 7일 근대신문 100주년을 맞는 신문 의 날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선포하였다. 새로운 윤리강령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와 책임을 균형있게 강조한 것일 것이다. 이는 언론탄압이 심했던 구 강령 제정 당시에(1957년) 비해 달라진 언론환경과 수용자들의 언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강령과 실천요강으로 구성된 새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의 자유(제1조), 언론의 책임(제2조), 언론의 독립(제3조), 보도와 평론(제4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존중(제5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제6조), 언론인의 품위(제7조) 등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성과는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을 추가한 것이다. 이 조항은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제도 정착과 함께 수용자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강령 제1조와 제3조와 서로 어긋나 기자들로 하여금 윤리적 이해상충 상황에 빠지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김정기는 언론법제가 언론의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데 실천요강이 아닌 강령의 조문으로서 언론자유와 대등하게 반론권을 인정하는 것은 언론인들에게 억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정기, 1999).

새 윤리강령과 함께 실천요강도 보강되었다. 구 실천요강의 준칙인 ‘보도와 논평의 태도,’ ‘독립성,’ ‘타인의 명예와 자유,’ ‘품격’ 등 4개항으로부터 16개 조항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28종의 규범이 63종의 규범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취재관행과 편집관행에 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실천 요강들은 불법적인 취재행위로부터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4조와 15조는 이해 상충의 문제에 대해 윤리적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

새 언론윤리강령이 구 강령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 언론인들에게는 여전히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것 같다.

2. 언론사별 자체 윤리강령

90년대는 또한 언론사별로 자체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붐을 이룬 시기였다. 1988년 5월 한겨레신문이 창사직전 자사 윤리강령을 제정한 뒤 90년대 초부터 자사 윤리강령 제정이 이어졌다. 한겨레신문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는 언론자유 수호, 사실과 진실보도의 책임을 규정한 선언적인 기본강령 외에도 독자의 반론권 보장, 취재원 보호, 사생활보호, 정당 및 종교활동에 대한 자세, 언론인의 품위, 판매 및 광고활동, 사내 민주주의 확립, 윤리실천 요강, 윤리위원회 설치 등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윤리강령 실천요강으로 언론자유 수호, 금품, 보도 및 논평 자료, 취재비용과 여행,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활동 금지, 외부활동의 제한, 윤리위원회 조항을 마련해 두었다. 또한 윤리위원회를 두어 그 준수여부를 심의하도록 실천적 의지를 명시한 점이 평가된다.

한겨레신문에 이어 두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 윤리강령'이 1991년 3월에 제정되었고 이어서 개별사 윤리강령 제정붐이 일어나 중앙일간지 대부분 그리고 방송3사 모두 자체 윤리강령을 갖게 되었다. 이는 91년 가을, 보사부 촌지사건으로 언론인의 윤리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자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천요강이 필요하

게 되었기 때문이다.²⁾

대체로 언론사별 윤리강령은 언론인의 품위나 직업윤리에 해당하는 행동준칙은 물론 보도의 진실성, 자유, 책임 등 저널리즘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제정된 윤리강령은 여전히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고 제정에만 의의를 두었을 뿐 각사의 실천적 의지가 약해 거의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별 언론사의 윤리강령 역시 내용들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애매해서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의 지침이 되지 못했다. 또한 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절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윤리강령이 형식적인 걸치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창룡, 1996). 이런 윤리강령들은 언론사들의 단순한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 언론사들의 자사 윤리강령은 이해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적 윤리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구체적인 처벌규정에 따라 해고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심각한 사태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와주고 있다³⁾.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실제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사들의 자체 언론윤리강령들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연합뉴스, KBS, SBS, 그리고 중앙일보는 사내 윤리강령을 대폭 정비하면서 이해상충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처벌조항을 포함하는 등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었다(표1 참조). 이들 개별사 강령에는 '선물, 무료여행, 입장권, 식사' '금품, 청탁, 향응거절' '취재비용' 등에 관한 준칙이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 실용적 행동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제재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여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개별 윤리강령 중 바로 지난 9월 개정된 중앙

2) 91년 9월 말 보사부 기자단 기자 14명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녀왔는데 그 경비를 관련업체와 언론단체로부터 모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 미국편집인협회의 웹사이트(www.asne.org/ideas/codes/codes.htm)에 들어가 보면 33개 미국 언론사의 언론인 윤리강령이 있으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해의 상충'이다.

90년대 언론의 상업주의와 매체간 경쟁이 윤리강령의 실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일보의 기자윤리강령과 세부지침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언론인의 품위유지부터 공정한 기사작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일보의 기자윤리강령은 기존의 개별사 윤리강령에 비해 구체성에서나 실천가능성에서 확실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사 기자의 불법정보유출 및 주식투자 사건으로 대두된 언론인의 이해상충분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당히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윤리강령 실천을 위해 노사 합의로 선출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두고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위반 사례 심의,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⁴⁾

3. 기사심의제도, 공정정보위원회, 윤리위원회

대부분의 신문사에 설치된 자율규제 장치인 기사심의제도와 공정정보위원회는 둘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사측의 기사심의제도는 상업주의와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경영진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종이나 타사보다 돋보이는 기사를 원하는 사측의 압력으로 윤리강령 실천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창룡, 1996).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정기와 김학수의 연구에 의하면 기자들의 취재보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사 사주 내지 경영진의 영향력,” “소속사 간부에 의한 세부지침 하달,” “언론수용자 확보를 위한 매체간의 경쟁, 대광고주의 영향력”순으로 높았다.

이 네 요인 모두 상업주의와 타사와의 경쟁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90년대 언론의 상업주의와 경쟁이 윤리강령의 실천에 부정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측이 주도하는 기사심의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자율규제 장치가 되지 못했다. 또한 IMF사태 이후 언론사들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심의실이나 심의국은 우선적인 정리대상이 되어 폐쇄되거나 합병, 축소되는 등, 그 위상이 더 낮아지게 되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문화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국제신문, 매일신문, 부산방송 등은 심의실을 완전히 폐쇄하였고 연합통신은 심의실을 논설위원실로 통합하였다⁵⁾.

노조의 공정정보위원회는 노조활동의 부진으로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외압에 의한 왜곡을 바로 잡고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던 공정정보위원회는 90년대에 들어와서 외압보다는 사내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한 왜곡보도를 바로잡는 일을 주로 하게 되면서 그 활동이 크게 약화되었고, 증면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게 되었다(김창룡, 1996). 따라서, 공정정보위원회는 자율규제 장치로 성장하지 못하고 폐쇄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윤리위원회는 자사 윤리강령 제정과 함께 일부 언론사들이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한겨레신문 이외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장치가 되었다. 한번도 소집한 적도 없고 처벌을 시도한 적도 없는 윤리위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외 홍보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김창룡,

4) 기자협회보, 1009호, 1999. 8. 2.

5) 김택환, 「언론사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 현황」, 『관훈저널』, 제70호, 1999, pp.56-59.

1996). 최근 중앙일보가 윤리강령을 대폭 보강하면서 윤리강령에 대한 유권해석, 위반사례, 심의 등을 담당할 윤리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것이다.⁶⁾

4. 옴부즈맨 제도

미국에서 옴부즈맨은 주로 사내비평과 독자의 불만, 제안, 질문을 처리하고, 불만을 조사하여 정당할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도 하며 불만을 편집자들에게 주지시키기도 하는 등 상당히 효과적인 자율규제 제도로 발전하였다. 칼럼, 내부회람, 직원회의, 질문서, 연설 등의 통로를 통해 신문의 자기반성과 비판자 역할을 주로 하지만 때로는 신문의 옹호자로서 활동하기도 한다(김정기, 1995).

이와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맨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언론사가 한 곳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 언론사들은 옴부즈맨 활동 중 독자의 불만, 질문의 처리와 기사심의에 중점을 두는 사내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대외적인 자기반성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93년 3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한 조선일보는 이 기구를 기사의 심사와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옴부즈맨 제도를 사장실 직속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역할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옴부즈맨 활동 중 하나인 컬럼만을 도입한 신문들도 있다. 한겨레신문이 언론비평 컬럼을 운영하고 있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올해부터

외부인사를 컬럼니스트로 초빙하여 옴부즈맨 컬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컬럼도 전문 옴부즈맨이 아닌 여론지도층 독자가 집필하기 때문에 옴부즈맨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비판의 강도와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문의 잘못을 인정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옴부즈맨 컬럼은 언론인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신문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자율규제 제도라고 생각된다.

5. 기타 : 「변호사 기사열람제」⁷⁾,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보도기준」⁸⁾

90년대 언론자율규제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96년에 실시하기 시작한 「변호사 기사열람제」와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보도기준」을 들 수 있다. 조선일보는 96년에 독자들의 인격권 피해를 보도가 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인 「변호사 기사열람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전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변호사들이 주요 기사를 법률적으로 미리 스크린하는 과정으로 언론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일보는 국내언론사상 최초로 1997년 1월부터 헌법정신을 골간으로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보도 기준'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보도 기준'은 기존의 취재관행에서 탈피하여 언론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공인과 사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사인은 익명으로 한다"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당사자의 반론

6) 기자협회보, 1009호, 1999. 8. 2.

7)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피해를 사후에 복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전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날그날 주요기사를 법률적으로 스크린하는 것은 물론, 인쇄된 초판신문 기사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언론자유에 걸맞는 책임과 윤리를 지키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신문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8) 97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총 5개항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사건보도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기준은 '실명과 익명을 엄격히 구분한다', '개인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한다', '당사자의 반론권을 중시한다',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70, 80년대의 권위주의 시대에 굳혀진 언론인의 왜곡된 직업의식과 취재관행이 문제

권”을 존중하여 범죄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반론을 실도록 하며, 범죄인에게도 경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언론이 무시했었던 개인의 인격권 신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6년 중앙일보가 고정란으로 ‘정정과 반론’을 신설한 것도 자율규제의 성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Ⅲ. 기자의식 조사

새로운 윤리강령이 언론사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언론인들이 70, 80년대에 굳혀왔던 관행과 왜곡된 직업의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기자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⁹⁾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기자들의 취재 보도 관행을 조사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고, 기자들 사이에 윤리강령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행히 최근에 발표된 김정기와 김학수의 공동연구 “한국언론인의 취재보도행태에 관한 연구”와 안병찬과 정연구의 “언론 윤리강령에 관한 현역 언론인 의식 조사”는 상당부분 윤리강령

과 관련된 취재관행과 기사작성 관행을 다루고 있어 우리 나라 기자들의 윤리의식과 행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¹⁰⁾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김정기와 김학수의 1997년도 연구결과와 안병찬과 정연구의 96년도 연구결과¹¹⁾, 그리고 한국언론연구원이 격년으로 실시한 전국 언론인의 직업의식 조사¹²⁾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나라 기자들의 윤리의식과 행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중요한 내용은 발췌하여 <표2>에 정리하였다.

윤리강령 제2조 1항의 신분사칭, 위장 금지 항목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알아본 결과 김정기와 김학수의 연구에서는 변조경험이 있는 기자가 64.8%에 달했다. 안병찬과 정연구의 연구에서는 신분변조와 문서 반출 금지를 함께 묶어 의견을 물었는데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응답이 51.7%나 되었고 할 수 없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하였다. 참고로 95년도 언론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역시 우리 나라 기자들은 신분변조 취재 방식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3점 척도상 평균 2.36).

윤리강령 제2조 1항과 관련하여 취재원의 승인 없이 문서, 자료 등의 무단반출 경험이 있는가 물어본 결과 유경험자가 51.3%나 되었다. 96년도의 안병찬과 정연구의 연구에서는 실제 경험을

9) 기자협회보, 1012호, 1999. 8. 23.

10) 이 연구는 관훈클럽의 『한국언론 2000년 연구과제』의 일부이며 연구결과는 김정기 외 지음, 『한국언론의 병리: 21세기를 위한 분석과 대안』,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에 수록되어 있다. 조사는 전국언론인을 대상으로 다단계 비례할당 무선표집으로 630명을 표집하여 1997년 1월부터 2월까지 행해졌다.

11) 이 연구는 전국언론인중 다단계 비례할당 무선 표집방법으로 뽑힌 120명을 대상으로 1996년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한국 언론의 자율규제,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1996년 10월에 열린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윤리강령 국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다.

12) 한국언론연구원(현 언론재단)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라 기자들의 직업의식을 연구해왔다. 여기에서는 기자들의 책임과 윤리의식 항목들이 포함된 93, 95, 97년도 연구 결과를 사용하였고 99년도 보고서는 아직 출간되지 않아 일부 발췌된 것만 참고하였다. 조사는 전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다단계 비례할당 무선 표집으로 1000명 정도를 추출하여 격년제로 실시하였다.

묻지 않고 가능성을 물었는데 53.4%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윤리강령 실천요강 중 신분위장, 무단 문서 반출 금지 조항에 대해서 우리 나라 기자들의 절반 정도가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년에 일어났던 국민일보 변현명 기자의 불법 자료출력 사건은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나 우리 나라 기자들 가운데 둘 중 하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건조물 침입과 무단 절취와 같은 불법 취재방법은 명백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구성하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관행은 법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난과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출 것을 규정한 제2조 2항에 관해서도 약 30% 정도만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김학수의 연구에서는 29.6%만이 신분을 밝히고 양해를 얻어 취재한다고 답했으며, 안병찬, 정연구의 연구에서는 38.3%만이 그렇게 해야한다고 답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인터뷰나 촬영하는 경우 보호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지키는 기자는 24.6%에 불과하였다.

2조 6항의 형사피의자, 참고인, 증인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보도 금지에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어느 누구든 촬영보도 하지 못한다는 윤리규범을 엄격하게 수용하는 응답자는 5.5%에 불과하였으며 현행법, 공인, 참고인, 증인 등 공익상 필요하다면 모두 촬영보도한다는 응답자가 55.5%나 되었다.

취재원 모르게 전화녹음이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2조 5항) 취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불과 24.7%에 불과하였다. 안병찬과 정연구의 1996년 조사에서도 전화도청 내지 몰래 촬영에 대한 반대의견이 26.7%에 불과하였다. 최근 미국 법원이 기자가 직접 도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 도청된 결과를 보도만 했더라도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보면 이에 관한 인격권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최첨단 전자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는 현실점에서 이와 같이 낮은 기자들의 윤리의식은

위장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보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이재경, 1997).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 처리문제(5조 4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검증가능할 때까지 보류가 11.1%에 불과하고 의문을 갖고 검증하며 검증 안되면 경위를 보도 내용에 밝힌다는 응답자가 49.6%였으며, 일단 발표내용에 대해 충실한 보도를 한다는 응답자가 39.3%나 되어, 우리 나라 기자들의 취재원 제공 보도자료 의존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안병찬과 정연구의 조사에서도 보도자료 의존률이 33.3%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취재원의 신원이나 제공정보에 대한 비보도 요청에 기자가 동의했을 경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제5조 4항에 대해서 김정기와 김학수의 연구에서는 48.5%만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찬과 정연구의 96년 조사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26.7%에 불과하였다. 95년도 언론연구원 조사에서는 3점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1.41로 나타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 들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익명 요청을 받아 들이는 경우가 김정기와 김학수의 연구에서는 59%로 나타났고, 안병찬과 정연구의 연구에서는 53.3%가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시적 보도보류 요청의 수용(제6조 1항)도 57.8% 수준에 그쳤다.

언론인과 취재원과의 대인관계의 수준을 보면 고질적인 유착관계가 잘 나타난다. 김정기와 김학수의 연구 결과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한다는 응답이 21.7%에 불과하고 공사구분이 힘들다는 응답이 21.9%, 보다 심도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사적인 유대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응답이 40.6%나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적인 관계에서 15조 2항의 윤리규정이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문건 사건에 관련된 두 기자의 정치인과의 유착관계가 기자 사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관계임이 결과는 보여준다.

취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로부터 받아도 괜찮

새로운 윤리강령이 제정되었으며 다양한 자율규제기구가 도입되었으나 그 어느 것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다고 생각되는 대접이 무엇인지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니 식사대접, 초대권, 명절선물, 기념품 등의 대접을 받는 것은 괜찮다는 응답이 총 748개의 복수 응답 중 76%를 차지하였다. 어떤 경품이나 향응도 받을 수 없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하였다. 실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규범적인 질문을 한 안병찬과 정연구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3.3%가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인들의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99년도 한국언론인의 직업의식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언론인의 65.6%가 한가지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촌지의 종류 중 향응과 접대가 39.5%로 가장 많았고 선물형태는 32.9%, 금전 18.9%, 무료티켓 15.5%, 취재관련 무료여행 9.7%, 취재와 무관한 외유성 체재여행 3.4%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기와 김학수의 연구에서는 자신이나 주위 동료들이 지금도 현금위주의 촌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 중 47.5%가 현금 중심의 촌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촌지가 제공되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요구없이 관행적으로”라는 응답이 43.6%를 차지하였다. 언론연구원의 95년도 조사에서도 58.8%의 언론인들이 관행적으로 촌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기사용도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14조에 대해서는 97년도 연구 대상자의 15.9%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보의 부당 이용금지에 관해서는 비교적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자들의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기자 전체를 볼 때 이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조 보도준칙에서는 보도기사와 의견을 명

백히 구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인들은 이 보도준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97년도 연구에서 보면 사실 전달에만 충실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2.8%에 불과하였다. 또한 제8조 2항의 티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조항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32.6%가 다른 언론사 기자가 쓴 기사내용을 확인없이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답해 아직도 표절이 성행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8조 1항의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조항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김정기와 김학수의 연구에서는 39.3%, 안병찬과 정연구의 연구에서도 39.2%나 되어 저작권에 대한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제10조의 편집지침에 있어서도 4항의 기고기사의 변경금지의 경우 철저히 기고자의 동의를 따르는 경우는 19.6%에 불과하였다. 7항의 사진제작 금지조항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경우에도 보도사건의 실제적 내용을 수정, 변형할 수 없다는 응답이 58.6%였으며, 안병찬과 정연구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나라 언론인들의 윤리강령 수용은 대체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재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의 인격권 침해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관행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용자들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최근의 판례를 통해 나타난 냉엄한 법적 환경을 감안할 때 언론인들의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언론은 앞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언론인의 자율

규제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이 제정되었으며 언론사마다 자사 윤리강령을 만들었고, 기사심의위원회, 공정보도위원회, 윤리위원회, 옴부즈맨 제도 등 다양한 사내 자율규제기구들을 도입하였으나 어느 것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시도 자체를 성과라고 본다면 90년대 우리 언론의 자율규제 활동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인들의 윤리강령 수용과 취재관행에 대한 조사를 보면 그러한 외형적인 변화만큼 내실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의 자율규제 수준이 전혀 향상되지 않은 이유는 언론인들 스스로가 인정한 바와 같이 권위주의 시대에 굳혀진 언론인들의 왜곡된 직업의식과 취재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사의 책임 또한 마찬가지로 크다고 하겠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거품경제속에서 언론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며 극심한 상업주의에 빠졌던 것과 IMF사태를 맞아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시도했던 것이 자율규제기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원인이었다. 언론사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윤리강령의 준수보다는 특종을 내는 것이 더 중요했고, 무리한 증면으로 기자들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공정보도위원회와 같은 자율규제기구가 가동되기 힘들었던 것이다. 결국 IMF사태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의실과 같은 자율규제기구가 희생되었고 새로운 자율규제기구들도 성장할 수 없었다.

이처럼 격동의 90년대는 우리 언론에게 도전과 시련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런 가운데에서 자율규제활동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다. 앞에서 지적한 상황적 요인들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우리 언론의 자율규제 능력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진단이 나와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

인 것은 최근에 연이어 일어난 언론인 비리 사건을 겪으면서 언론인들이 윤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윤리규정 개정, 교육 등을 통해 언론인의 윤리의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¹³⁾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기, 「언론윤리의 발상 전환」, 『관훈저널』, 72호, 1999, 가을.
- 김정기, 「옴부즈맨 컬럼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소 편, 『언론의 자율적 감시제도 제도화를 위한 연구』.
- 김정기 외, 『한국언론의 병리』,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9.
- 김택환, 「언론사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현황」, 『관훈저널』, 70호, 1999, 여름.
- 김창룡, 「한국언론사의 개별윤리강령과 사내 기사 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1996 한국언론학회 주최, 언론윤리강령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 안병찬, 정연구, 「언론윤리강령에 관한 현역 언론인 의식조사」, 1996 한국언론 학회 주최, 언론윤리강령 국제심포지움 발표 논문.
-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제4회 전국 기자 직업 의식 조사, 1995.
-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제5회 전국 기자 직업 의식 조사, 1997.
- 황치성, 「한국언론인의 윤리의식-제6회 언론인 의식조사결과」, 『신문과 방송』 Vol. 345, pp.20-24. 1999.
- Goodwin, H.Eugere,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m*, 2nd ed, Ames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

13) 기자회견보 1007호, 1999. 8. 23. ; 1022호, 1999. 11. 1.

〈표 1〉 언론사 윤리강령 세부지침

세부지침		언론매체	중앙 일보	조선 일보	동아 일보	연합 통신	KBS	MBC	SBS
취재원의 경비부담 ¹⁾			×	×	×	×	×	×	×
품 위 유 지	선물향응 편의제공		×	×	-	×	×	×	×
		예외인정	×	○	-	○	○	×	×
	촌지 (현금수표)	개인적	×	×	-	×	×	×	×
		의례적	×	×	-	×	○	×	×
	본의아니게 받은 선물		기탁	×	-	-	-	-	×
	국내외 정부 기업 단체 초청자 부담 출장 ²⁾		×	×	-	-	-	×	-
	무료입장권, 상품권, 회원권, 무료숙식권, 현물	취재용	○	-	-	×	×	×	×
		그외	×	-	-	×	○	×	×
과다할인 혜택			×	-	-	×	×	-	
		예외인정	×	-	-	○	○	-	×
인사청탁, 광고압력			×	-	-	-	-	-	-
올바른 정보 사용	취득정보 사적 사용		×	-	×	×	×	-	-
	경제관련 부서 주식투자	직접투자	×	-	-	-	-	-	×
		간접투자	○	-	-	-	-	-	-
	부동산 투자		×	-	-	-	-	-	-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기사화를 위해 유·무형의 압력		×	-	-	-	-	-	-
	정치부서 특정 정치인과의 유착		-	-	-	-	-	×	×
취재정보를 소속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용		×	-	-	-	-	×	-	
공 정 보 도	외부부당압력 거부		○	-	-	-	-	-	-
	취재원 익명처리 비보도, 엠바고 약속 금지		○	○*	○ ³⁾	-	-	-	-
	다른 언론, 자료 인용시 출처 명시		○	-	-	-	-	-	-
	오보, 기타 실수 발생시 신속하게 정정, 반론 게재		○	○*	○	-	-	-	-
방 송 제 작 ⁴⁾	외부접필 강연좌담회		-	-	×	-	×	×	-
		조건	-	-	×	-	○	○	-
	현재 취재대상 혹은, 장래 가능성 이 있는 개인, 단체의 강연 의뢰			-	-	×	-	×	×
		예외	-	-	×	-	○	-	

• 조선일보는 정표로 주는 경우, 연합통신은 사회통념상, 혹은 부서와 협의하여, KBS는 상식수준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각 신문사는 중앙일보 윤리강령을, 연합통신은 기사작성 길잡이, SBS와 KBS는 제작가이드라인, MBC는 프로그램제작강령 참고

1) 취재원의 경비부담과 관련하여, 방송국의 경우 예외인정은 군사시설, 과학탐사, 체육경기장 이용시

2) 조선일보의 예외인정은 초청자 부담 출장을 전제로 한 기사화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3) 비공개 원칙시, 이를 지키고, 엠바고 약속을 지킨다.

4) MBC 외부강연 및 외부활동의 경우 예외인정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장 혹은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97년부터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보도기준'을 제정

<표 2> 윤리강령 항목에 대한 언론인 의식조사* 결과

윤리강령 항목	언론인 의식조사 결과	비 고
취재수행단계		
일상적 취재 불가능시 신분변조 취재 경험 (제2조 1항)	97-1조사: 64.8%(신분을 바꾸어 취재해본 경험 있음) 97-2조사: 45.1%(정당화할 수 있음) 96조사: 53.4%(가능성에 대한 질문결과, 긍정적 응답) 95조사: 평균 2.36(3점 척도)	95조사는 신분을 속이는 취재 방식에 대한 평가적 의견질문 결과임 96조사는 제2조 1항의 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 반출금지에 대해 한 문항으로 질문하였음
취재원 승인없이 자료 반출 내지 검색 경험 (제2조 1항)	97-1조사: 51.3%(그런 경험이 있음) 97-2조사: 45.1%(정당화할 수 있음) 96조사: 53.4%(그럴 가능성에 대한 질문 결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 95조사: 1.84(3점 척도)	95조사는 사적 문서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적 의견 질문 결과임
재난 내지 사고시의 피해자 및 가족대상 취재관행 (제2조 2항)	97-1조사: 29.6%(신분을 밝힌다) 96조사: 38.3% 95조사: -	95조사에는 없음
취재원 모르개 전화 녹음 내지 몰래카메라 이용 (제2조 5항)	97-1조사: 24.7%(취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96조사: 26.7% 95조사: -	95조사에는 없음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증인에 대한 촬영보도 (제2조 6항)	97-1조사: 5.5%(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하지 않음) 96조사: 9.2%(반드시 취재원의 동의하에 촬영) 95조사: -	95조사에는 없음
공익을 위해 취재원이 익명 요청으로 배경 설명을 할 때 대처 방안 (제5조 1항)	97-1조사: 59.0%(대부분 조건을 받아 들임) 96조사: 53.3% 95조사: -	95조사에는 없음
취재원의 비보도 약속에 동의했을 경우의 대응 (제5조 4항)	97-1조사: 48.5%(동의했을 경우, 약속을 지켜야 함) 97-2조사: 75.9%(약속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음) 96조사: 26.7%(반드시 약속을 지키) 95조사: 1.41(3점 척도: 1점 정당화됨)	
취재원의 한시적 보도 보류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제6조 1항)	97-1조사: 57.8%(신뢰를 위해 보도보류 존중) 96조사: - 95조사: -	95, 96조사에는 없음
취재원의 사생활침해 (관련 항의받은 경험) (제12조 3항)	99조사: 36.7% (항의받은 적 있음) 97-2조사: 7.0% (항의받은 적 있음) 96조사: -, 95조사: -	95, 96조사에는 없음
어린이 대상 인터뷰, 촬영 (제13조 1항)	97-1조사: 24.6%(부모나 보호자의 승인하에서만 함) 96조사: - 95조사: -	95, 96조사에는 없음
취재원 제공 보도자료 처리 (제13조 5항)	97-1조사: 39.3%(발표 내용에 대해 충실히 보도함) 96조사: 33.3% 95조사: -	95조사에는 없음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기사용도의 사용 경험 (제14조)	97-1조사: 15.9%(기사용도외로 사용한 경험이 있음) 96조사: - 95조사: -	95, 96조사에는 없음

윤리강령 항목	언론인 의식조사 결과	비 고
취재수행단계		
취재보도 관련 이해 당사자의 대접 수용 (제15조 1항)	99조사: 65.6%(한가지 이상의 찬지를 받음) 97-1조사: 76.0%(식사대접, 초대권, 명절선물, 기념품 등의 대접을 받는 것은 괜찮음) 96조사: 43.3%(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된다) 95조사: -	복수응답 95조사에는 없음
언론인 자신이나 주위 동료들의 찬지 수수 (제15조 1항)	99조사: 18.9%(금전적 찬지를 받음) 97-1조사: 47.5%(현금증심의 찬지를 받고 있음) 97-2조사: 10.7%(기사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 받아도 괜찮다) 96조사: - 95조사: -	95, 96조사에는 없음
	찬지가 제공되는 경우 97-1조사: 43.6%(별다른 요구없이 관행적으로) 97-2조사: 51.8%(별다른 요구없이 관행적으로) 96조사: - 95조사: 58.8%(관행적으로 찬지를 받고 있음)	96조사에는 없음
	찬지수수가 기사내용에 미치는 영향 99조사: 53.2%(기사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97-2조사: 54.9%	
취재원과의 대인관계 수준 유지 (제15조 2항)	97-1조사: 62.5%(공사 구분을 하지 않거나, 사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함) 96조사: -, 95조사: -	95, 96조사에는 없음
기사작성단계		
출처 불분명 내지 미확인 사실의 기사화 처리 (제3조 2항)	97-1조사: 71.5%(기사행간에서 미확인내용 적절히 밝힘) 96조사: 65.0%(기사행간 이용) 95조사: -	95조사에는 없음
표절실태 (제8조)	소속사에서 통신기사 사용 방법 (1항) 97-1조사: 39.3%(출입처를 밝히지 않음) 96조사: 39.2% 95조사: -	95조사에는 없음
	다른 언론사 기사 확인없이 기사화(2항) 97-1조사: 32.6%(확인없이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다) 96조사: - 95조사: -	95, 96조사에는 없음
기사작성시 하고 있는 행태 (제13조 1항)	97-1조사: 32.8%(사실 전달에만 충실하려고 애씀) 96조사: - 95조사: -	95, 96조사에는 없음
편집단계		
사의 기고기사에 대해 필요한 수정조치 (제10조 4항)	97-1조사: 71.6%(문장오류에 대해 기고자의 동의 없이 수정) 96조사: -, 95조사: -	95, 96조사에는 없음
보도사진 내용의 수정, 변형에 대한 의견 (제10조 7항)	97-1조사: 58.6%(보도사진의 내용 수정, 변형불가) 96조사: -, 95조사: -	95, 96조사에는 없음

* 99조사 : 한국언론재단, 『전국기자 직업의식조사』 (아직 출판되지 않음) /
97-1조사 : 김정기·김학수, 『한국언론인의 취재보도행태에 관한 연구』, 97-2조사 : 한국언론연구원, 『전국기자 직업 의식 조사』/96조사 : 안병찬·정연규, 『언론인 조사』/95조사: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 원장

I.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 후 9년째인 90년에 들어서면서 중재신청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94년부터는 500건을 넘어섰으며, 98년에는 602건을 처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1년 4월 설립 이후 99년 11월 11일 현재까지 총 5,027건의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는 1,445건(28.7%)에 대해 합의를 중재했으며, 취하 2,184건 중 1,021건, 중재불성립 1,158건 중 177건(15.3%)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55.2%의 피해구제율을 보여 중재신청인들의 훼손된 권리를 회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80년대 9년간의 중재신청이 총 550건에 불과했던데 비해 90년대 10년간에는 80년대의 8배 이상인 4,477건의 급증세를 보여 중재위원회의 활동

이 돋보였다.

합의율을 살펴보면 80년대의 평균 합의율은 25.8%로 비교적 저조한 상태를 유지했으나 9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합의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97년 이후 합의율이 33~37.5%로 높아졌으며 중재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90년대 후반에 와서 한층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재제도는 아직까지도 원론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으나 그나마 중재제도를 대신할만한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의 자율규제에 맡기거나 사법기관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언론인들의 주장이 있지만 중재제도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논리로서는 때늦은 감이 있다.

81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하기 전까지는 언론침해에 의한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이나 판결례가 1건도 없었고 언론사들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에 의한 피해자구제도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에 와서 1년에 600건이 넘는 중재신청인들의 피해를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사의 자율규제능력, 자율규제의지가 없거나 부족할 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부담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중재신청인들의 항의에 대해 언론사 측이 취한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86.7%의 신



- 서울대 법대 졸, 일본 동경대 대학원 신문학과 수료
- MBC 기자, 서울신문 외신부장
-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중재위원, 한국언론연구원 원장
- 현 대한언론인회 이사

중재신청의 급증과 함께 96년 중재결정권 도입으로 합의율도 상승추세

청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8.3%만이 “잘못을 인정하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답했다.

이러한 언론사측의 태도는 자율규제의식이나 자율규제능력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언론에 대한 불신만 높여주고 상대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중재신청인의 항의에 대한 대응에 관해 피신청인(언론인)들의 응답은 “사전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71.4%), “중재신청을 권유했다”(20.8%)로 상반되게 나타나 혼란을 주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중재신청인의 82.5%보다 더 높게 피신청인(언론인)의 95.1%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은 의외의 일이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양당사자의 신인도(信認度)가 모두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언론인들이 자율규제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중재신청인들의 78.6%가 “언론사에 항의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항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

이제 확고하게 자리잡은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의 침해에 의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분쟁을 중재함에 있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게 하면서 중재신청인의 만족스러운 피해회복을 위해 현안의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개선, 보완하여 중재기능을 보다 더 효율화해야만 할 것이다.

II.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심의기능

중재위원회에는 법률적으로 중재와 시정권고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중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으로 한다) 제 1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침해의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해 중재해 줄 것을 청구해 왔을 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다.

시정권고는 ‘정간물법’ 제18조 8항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행사되는 기능으로 1개월에 한 번씩 시정권고사항을 당해 언론사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시정을 권고받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기대할 수밖에 없다.

먼저 중재신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반기에 해당하는 80년대에 비해 후반기인 90년대에는 중재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87년 6.29선언 이후 등록요건의 완화에 따른 매체증가와 언론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빚어지고 있는 선정성 보도의 증대 등 매체환경의 변화로 언론침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0년대에 1년 평균 50건 내외이던 중재신청이 80년대 마지막 해인 89년에 12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어 90년대 첫해인 90년에는 159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어 91년 220건, 92

1) 위에서 인용한 조사는 96년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중재위원회, 1996. 참조.

년 381건, 93년 423건, 94년 541건, 95년 528건, 96년 556건, 97년 490건, 98년에는 마침내 600건을 돌파, 602건을 기록했다. 이는 80년대 연평균 신청건수의 12배를 넘어선 것이며 87년 6.29선언 이후 2배 내지 5배까지 늘어난 일간, 주간, 월간지 등의 매체증가율을 훨씬 앞서고 있다. 90년대 마지막 해인 99년에도 11월11일 현재 577건이므로 600건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중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재신청의 급증과 함께 합의율도 80년대의 평균 26%에 비해 90년대에는 평균 29.1%로 약간의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간에는 32.9%(97년), 37.5%(98년), 35.9%(99년 11월 11일까지)로 높아져 앞으로의 합의율 추이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중재를 통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중재신청인이 취하하는 조건으로 언론사측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PR기사 등으로 피해회복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80년대의 평균 34.9%에 비해 90년대에는 49.6%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재신청을 취하하는 신청인들의 약 50%가 피해회복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불성립결정의 경우에도 불성립된 중재신청 사건의 14.3%가 언론사측의 호의(?)로 반론보도나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취하 및 불성립결정된 신청사건 중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신청사건과, 합의에 의해 피해회복을 받은 신청사건을 포함하면 계수상으로는 전체 중재신청사건의 55.2%가 피해회복을 받은 결과가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97년부터 합의율이 높아진데 대해서는 언론사의 호의, 피해자들의 강경한 주장, 중재위원들의 조정 기법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95년에 개정,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간물법'에 새로 도입한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과 법원에 제소되었을 때의 인용결정이 중재위원회에서의 합의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개정된 '정간물법'에서 종전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념정리가 되면서 언론사들이 '정정' 아닌 '반론'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부담의 경감도 합의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정보도'는 언론사가 오보를 하여 100% 잘못했다는 것을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알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잘못을 노출시키지 않고 후속기사 형식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반론을 게재해 준다는 점에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와 같이 계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합의율이나 취하, 불성립된 사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구제는 그런대로 상당한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중재신청을 했던 당사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합의율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에 와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96년의 언론중재제도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합의를 본 신청인 중 37.5%만이 합의내용대로 즉시 정정보도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합의내용을 축소보도 했다는 응답이 40%, 다른 날짜에 정정보도를 냈다는 응답이 5%, 합의해 놓고도 전혀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1%나 되었다. 합의를 본 신청인 중 56%가 합의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불만스러운 응답을 하고 있어 피해구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합의 결과로 실시한 정정보도문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30% 정도만이 만족한다고 했고, 45%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수치상의 합의율과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취하를 시켜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나 사과를 받고 취하하는 경우 등은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시정권고는 발족 초기 법률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87년도까지는 지지부진했으며 88년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업무

시정권고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으나 일부 지방신문이 시정권고된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것이 문제

가 진행되었다. 시정권고 건수는 88년 37건, 89년 180건으로 비교적 적었으나 90년에는 311건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91년 264건, 92년 390건, 93년 344건, 94년 204건, 95년 282건, 96년 310건, 97년 469건, 98년 348건으로 전반적으로는 보합 내지는 증가추세이다.

90년대를 개관할 때, 시정권고건수가 크게 늘지는 않았으나 10여 년을 두고 매월 4~5개항의 침해사항을 반복적으로 시정권고 했음에도 일부 지방신문들이 시정권고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98년의 경우 일간신문 71종, 주간신문 2종, 주간지 10종, 월간지 8종, 통신 1종 등 모두 92개 매체를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97년에 비해 시정권고가 25.8% 감소했으며 중앙지의 경우 97년의 114건에서 98년에는 5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오랫동안의 시정권고가 언론사로 하여금 언론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여 년에 걸쳐 시정권고를 하는 동안, 언론침해유형 중 “성폭행 당한 자의 신원공개”는 92년의 123건을 장점으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98년에는 16건에 불과했다. 또 “미성년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도 93년의 228건을 정점으로 급감, 98년에는 29건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침해유형에 따라 시정권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량, 사용방법 공개”는 95년 121건, 96년 117건, 97년 109건, 98년 137건으로 나타났으며,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도 96년 22건, 97년 182건, 98년 151건으로 급증, 시정권고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2개 침해유형에 대한 시정권고가, 앞의 두개 침해유형이 10여 년 동안의 시정권고 끝에 감

소효과를 거둔 것과는 달리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Ⅲ.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언론보도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은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절차면에서 간편해야 하며 또 그 처리가 확실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하물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보도침해의 경우 피해회복은 시간을 다투는 긴요한 사안이다. 특히 투표일 2~3일전의 선거보도침해는 선거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

선거보도에 의한 이러한 피해자(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피해회복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회는 1997년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으로 한다)에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제도를 도입했다. 법률적으로 선거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선거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조속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선거기간 중 인신공격이나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는 획기적인 피해구제장치이다.

그러나 이 법이 발효된 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선거 등 두 차례의 전국규모의 선거와 몇 차례의 보궐선거를 치루었으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가 신청창구인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단 1건도 없었다.

우리 나라 언론(정기간행물과 방송)들이 완벽하게 공정보도를 했기 때문에 단 1명의 선거보도

에 의한 피해자도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선거보도침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언론의 속성상 선거보도에서 완벽하게 공정성과 공평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히려 일반보도에 의한 침해보다 선거보도에 의한 침해가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피해자는 있게 마련이며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선법’에 특칙으로 도입된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두 차례나 전국규모의 선거가 있었고 여러 차례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음에도 99년말 현재까지 단 1건의 반론보도청구가 없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의하여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방송사의 대표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공선법 제8조4의 1항)과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공선법 제8조4의 1항)은 선거보도로 피해를 받은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평소에는 물론 특히 선거기간 중에는 전적으로 언론에 의지해야 하고 또 언론에 잘 보여야만 될 입장에 있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후보자에게 피해를 준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반론보도청구를 하도록 한 것은 대단히 어려운 주문이다.

특히 공선법 제8조3의 2항과 동법 제8조4의 2항에서, 방송사의 대표와 언론사의 대표는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의 경우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무료로 방송하여야 하고, 정기간행물의 경우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평소 수용자들의 반론 또는 정정보도요구를 받아들이는데 극히 인색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언론의 속성으로 보아 긴급을 요하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응해줄지도 의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합의율이 3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전혀 현실적인 매체환경이나 언론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 후보자가 현행 규정대로 당해 언론사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제3의 분쟁중재기관에도 분쟁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던가 아니면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방송사의 대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처리하여야 한다(공선법 제8조3의 3항)는 규정과, 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언론사의 대표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공선법 제8조4의 3항)는 규정은 선거보도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인 언론사(방송 포함)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언론사에게만 이를 언론중재위원회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이율배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방송사의 대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언론사의 대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라

중재결정 효력을 상실케 하는 이의신청제도는 재고되어야

는 규정을 ‘반드시 회부해야하는’ 강제조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방송사나 언론사가 회부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회부하도록 할 것인지 별척도, 아무런 대안도 없다.

반론보도를 해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방송사나 언론사에게 회부하도록 한 것 자체가, 약간 비약이기는 하지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채권자는 할 수 없고 채무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이 지난 2년동안 여러 차례의 선거가 있었음에도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단 1건도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가 없게 한 원인이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되 방송사나 언론사에 청구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도 언론중재위원회 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회부되도록 해야한다.

셋째, 선거보도에 의한 후보자의 피해, 특히 선거일 직전의 피해는 일반보도에 의한 피해보다 한층 더 신속한 회복조치가 필요하다. 선거일을 하루 또는 2~3일 앞두고 공표된 선거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피해가 바로 당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일반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과는 별도로 법제화한 것도 이러한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실제적으로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이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일 1~2일 전이나 며칠을 앞두고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처리문제이다. 선거일까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

다면 피해회복은 여유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거일 1~2일 전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의 한 사람이 언론에 공표된 인신공격이나 정책의 왜곡선전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아 당락에 영향을 미칠만큼 위급한 상황일 때 그 피해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선거기간(보통 20일 전후) 중에 발생하는 선거보도침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긴급을 요하는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일한 언론침해 구제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정간물법 제18조6항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라는 규정에서와 같이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법원제소에 관계없이 집행력을 갖도록 해야한다. (3) 선거일 하루전의 반론보도청구까지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근하는 상설 중재부를 두어야 한다. 시간을 다투는 반론보도청구는 현재 중재위원회에서 취하고 있는 통상적인 중재절차를 적용해서는 그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거일 하루 전의 조건이나 방송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후보자의 반론보도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때 상설 중재부가 즉각 중재결정을 하여 선거당일의 당해 조간신문 혹은 선거당일 아침의 방송 보도에서도 반론의 기회를 갖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IV. 효율적인 중재제도 운용을 위한 제언

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인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사간의 대등한 관계설정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중재제도가 언론보도의 침해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존립하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인 중재신청인 중심으로 중재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다고 언론의 막강한 힘에 밀려 피해자 구제에 소홀해서도 안된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최대한 보장되면서 동시에 중재신청인의 피해도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중재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중재제도의 운용과제라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없애야 한다. 아니면 '이의신청'이 제기된 '중재결정' 사건은 자동적으로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가 제기되도록 해야 한다.

'중재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가 96년 77.8%(9건 중 7건), 97년 33.3%(15건 중 5건), 98년 41.7%(24건 중 10건), 99년은 11월 11일 현재 63.6%(22건 중 14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재결정'제도는 큰 시련에 직면했다고 하겠으며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 것 같다.

1995년 12월 18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법률에서 도입된 '중재결정'제도의 도입은 중재신청인의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언론사의 자세에 대응하여 중재부의 직권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그 취지가 점차 퇴색되어 가는 느낌이다.

한편 중재결정은 함부로 남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정간물법 제18조6항)라는 규정에 따라 중재부장인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주재하에 신중하게 중재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립되는 중재결정을 아무런 제약없이 언론사의 이의신청(피해자도 할 수 있다)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문제이며, 최악의 경우 100%의 이의신청으로 '중재결정'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사태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간물법 제19조의2(불복절차) ①"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중재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하고 바로 집행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간물법 제20조에 의한 추후보도청구는 관련사법기관의 입증자료만 제출되면 '중재결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정간물법 제20조의 추후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권리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추후보도청구권자는 언론의 오보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들이다.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라는 관련 사법기관의 판단과 결정은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당연히 추후보도로 피해회복을 해주어야 할 사안을 가지고 중재회의에서 추후보도 여부에 관해 언론사의 동의 또는 합의를 구한다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다.

추후보도는 언론사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 행위일 수 없으며 언론사가 의무적으로 당연히 수용해야 할 책임이며 법 정신이기도 하다.

셋째, 손해배상 등 언론보도의 침해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구제수단들을 반론보도청구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피해자나 언론사를 위해 편리할 것이라는 방안이 많은 언론법제 전문가들에 의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시되어왔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법원에서 손해배상 등으로 법적 분쟁을 해야 하는 번거롭고 소모적인 송사를 피할 수 있고 균형있게 일괄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는 점

에서 분쟁당사자들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넷째, '정간물법',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공선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있는 반론보도청구권과 중재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 체계속에 수용하고 처리기관도 피해구제 전담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

현재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정간물법'에, 방송에 관한 것은 '방송법'에, 유선방송에 관한 것은 '유선방송법'에 규정해 놓고 그 처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은 '공선법'에 규정해 놓고는 방송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는 당해 방송사에 한 다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송사의 대표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도록 했고,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는 당해 언론사에 한 다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사의 대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회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섯째,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1차적으로 당해 방송사와 언론사에 대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방송사 및 언론사의 대표만이 이를 지체없이 각각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 내지는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회부할 권리는 언론사보다는 피해자쪽에 우선권이 있어야 하며 최초로 행사하는 반론보도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선거일에 임박하여 행하여지는 반론보도청구는 '중재결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 기간동안 상설 중재부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

〈표 1〉 언론중재신청 처리현황

()안은 실질적인 피해구제건수

'81. 3. 31. ~ '99. 11. 11.

연도	신청건수	처리결과									비고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1981	44	9				12(5)	1	2	20(2)		
1982	50	19				19(5)		2	10(4)		
1983	71	21				22(7)	1	1	26(8)		
1984	54	12				29(8)	3		10(5)		
1985	59	12				28(5)	4		15(7)		
1986	49	14				10(2)	1		24(11)		
1987	47	10				9(4)	1		27(2)		
1988	55	16				12(5)		1	26(13)		
1989	121	29				35(10)		6	51(21)		
1990	159	42				43(10)	1	2	71(40)		
1991	220	52				48(9)	3	1	116(43)		
1992	381	81				79(12)	19		202(107)		
1993	423	132				96(16)	8	2	185(84)		
1994	541	162				127(10)	7		245(128)		
1995	528	111				150(25)	26	3	238(124)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137)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108)		
1998	602	226	14	10		97(8)	5		250(106)		
1999	577	207	8	14(2)	3	94(2)	20(2)	5	206(71)	20	
계	5,027 100.0%	1,445 28.7%	34 0.7%	36(4) 0.7%	3 0.1%	1,158(177) 23.0%	117(2) 2.3%	30 0.6%	2,184(1,021) 43.4%	20 0.4%	

<표 2> 시정권고현황

()안은 %

연 도	시정 권고 건수	침 해 유 형								간 별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일 간 지	주 간 지	월 간 지	통 신
		성폭행 당한자 신원 공포	정신 질환자 신원 공포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1981	0												
1982	0												
1983	3								3	1	2		
1984	0												
1985	0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	109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계	3,151 (100)	575 (18.2)	100 (3.2)	1,349 (42.8)	386 (12.3)	224 (7.1)	1 (0.03)	492 (15.6)	24 (0.8)	3,036 (96.4)	22 (0.7)	12 (0.4)	81 (2.6)

언론법제연구 동향

정진석

한국의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연구동향 개관

1990년대는 언론법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10년이였다. 저서, 학위논문, 일반논문을 통틀어 이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때는 없었다. 연구의 성과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저서 25편, 번역서 10편, 박사학위 논문 26편 등이 있다. 일반논문도 언론침해와 이의구제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 명예훼손, 초상권, 인격권, 반론권, 중재제도, 프라이버시 등 언론침해에 관련된 주제의 논문이 90년대 후반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인권침해 건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만,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같은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언론 법제의 연구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에 의한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현상이다. 반대로 언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소송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일반적인 개념 외에도 초상권, 인격권, 반론권 등의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추이를 분석하는 논문도 많이 나왔다. 중재신청과 소송이 늘어나면서 피고소인(또는 피신청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 일선 기자들이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언론 전문지에서도 명예훼손, 윤리 등의 특집을 자주 다루었다.

언론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연구성



- 서울대 신문학과 석사, 런던대 박사
- 관훈클럽 사무국장, 중재위원, 방송위원회 위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 역임
- 「한국언론사 연구」 「한국 언론사」 「언론유사」 「한국 언론관계 법령 전집」 등 다수
- 현 한국의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과도 많이 나타났다.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와 수용자의 주권 문제 등을 다룬 논문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특히 방송법에 관한 논문이 많이 나왔다. 통합방송법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입법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 1999년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의 이름으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방송위원의 선임 문제를 비롯하여 KBS의 경영위원회 설치 요구,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 등 많은 주장을 반영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이다. 방송법에 관해서는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관련법을 비롯하여 영상·정보·통신법의 정책에 관련된 연구와 이를 규제하는 문제, 이에 따른 저작권과 인권침해 문제 등 새로운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문제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이 분야 산업을 보호 육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문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 관련 논문은 너무 많은 양이 발표된 탓에 같은 필자의 중복된 주장, 또는 원칙론에 치우친 논문 등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국내의 저작권만이 아니라 외국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1990년대의 언론법제 연구 동향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안은 연구물 수치이다.

1. 저 서(25)
2. 번역서(10)
3. 박사논문(26)
 - 1) 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4)
 - 2) 언론중재(1)
 - 3) 반론권(2)
 - 4) 언론자유(7)
 - 5) 언론윤리(2)
 - 6) 저작권(3)
 - 7) 정보공개(1)
 - 8) 통제(3)
 - 9) 광고규제(3)
4. 일반논문(443)
 - 1) 명예훼손(인격권-초상권)(35)
 - 2) 언론중재(소송)(16)

- 3) 반론권(17)
- 4) 프라이버시(35)
- 5) 국가이익(안보-군사기밀)(6)
- 6) 언론법(방송법)(65)
- 7) 영상-통신-정보법(7)
- 8) 수용자(11)
- 9) 언론자유(알 권리-표현의 자유)(71)
- 10) 언론윤리-자율규제(42)
- 11) 저작권(100)
- 12) 정보공개(38)
5. 석사학위 논문(182)
 - 1) 명예훼손(인격권-초상권)(17)
 - 2) 언론중재(5)
 - 3) 반론권(접근권)(5)
 - 4) 프라이버시(32)
 - 5) 국가이익(안보-군사기밀)(8)
 - 6) 언론법(방송법)(5)
 - 7) 언론자유(알 권리-표현의 자유)(13)
 - 8) 언론윤리·통제(36)
 - 9) 저작권(39)
 - 10) 정보공개(22)

II. 주제별 연구 동향

1. 언론전문지의 특집 기사

명예훼손에 관한 논문은 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구 언론연구원), 기자협회, 관훈클럽 등에서 발행하는 언론전문지에서 특집으로 마련하였을 정도로 언론계의 큰 관심사였다. 근년에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소송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용적인 필요성에서 이를 연구한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하는 『언론중재』는 명예훼손을 주제로 4차례의 특집을 마련했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92년 봄, 93년 가을, 98년 여름호) 특집을 마련하였고, 99년 가을호에도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을 특집으로 꾸몄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일반적인 개념 외에
초상권, 인격권, 반론권 등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기자협회와 언론재단이 급년부터 공동으로 발행하는 『기자통신』이 명예훼손소송을 피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특집을 마련한 것도 언론법제 연구의 한 새로운 현상이다. 『기자통신』은 1999년 1월에 창간된 이래 여러 차례 특집을 마련했다. 5월호는 기획특집으로 「언론상대 명예훼손 소송, 돌파구는 없는가?」를 마련하여 「소송을 예방하는 방법 찾기」, 「소송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늘어나는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현장기자들의 제언」등으로 꾸몄다. 이어서 7월호에는 「공익보도와 명예훼손소송」이라는 특집으로 방송을 상대로 하는 방영금지처분신청과 반론보도청구가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들을 실었다. 『기자통신』은 일선 기자들이 자주 명예훼손소송을 당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다루는 글을 9월호와 10월호에도 연달아 실어서 기자들의 명예훼손소송에 민감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매체에서도 이에 관한 관심의 표명으로 방송협회가 발행하는 『방송문화』도 1999년 8월호에 「방송과 명예훼손」이라는 특집을 마련해서 최근에 급증하는 방송사 상대 명예훼손의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훼손과 방송 표현의 자유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방송사 상대 명예훼손소송은 작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7월 현재 소송 중인 건수만 KBS, MBC, SBS 3사를 합치면 30건이 넘고 청구된 손해배상 액수는 110억원을 웃돈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재단(구 언론연구원)이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은 유일상의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1993년 8월(272)부터 1994년 3월까지 8회 연재하였다. 관훈클럽이 발행하는 『신문연구』(1999년 봄부터 『관훈저널』로 제호 변경)도 「명예훼손과 언론보도」(1999 여름)라

는 주제의 특집을 비롯하여 「언론과 윤리」(1999 가을호)에 관한 특집을 마련하였다.

2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 인격권 연구

명예훼손(인격권-초상권)에 관한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1건을 비롯하여 일반논문(35건), 석사논문(17건) 등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논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특수한 주제를 다룬 논문으로는 「신문의 독자편지와 명예훼손」(염규호, 1991 언론중재40),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광고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성낙인, 1992 언론중재42),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손동권, 1992 언론중재42), 「의견광고와 명예훼손 및 그 대책」(유일상, 1997 언론중재63) 등이 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형법 307~308조를 중심으로」(유의선, 1998 한국언론학보4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이재진, 1998 언론중재66)가 그것이다.

인격권에 관한 논문은 「언론의 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 침해」(박용상, 1995, 인권과정의228),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최상호, 1994, 계명대 사회과학논총13), 「언론자유와 적용 법리와 인격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전희락, 1997 중앙대 언론연구6), 등의 논문을 비롯하여, 언론연구원에서 발행한 『세계언론판례 총람』(1998) 등이 있다.

명예훼손소송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사학위 논

문으로는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박윤희, 서울대, 1995)과 「반론권제도의 언론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김병국, 서울대, 1998)가 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문은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근년에는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다룬 논문이 많이 나왔다.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수사상 프라이버시의 보호시설」(이기호, 1993) 같은 논문도 나왔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새로운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프라이버시」(변재욱, 1994) 같은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박사논문으로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민사책임」(김광삼, 전북대 대학원 1998), 「한국의 통합정보관리 체계에서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박홍운, 서울대, 1994),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중심으로」(이관기, 한양대, 1993),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기정보 통제권」(차맹진, 인하대, 1991) 등이 있다.

3. 저서와 외국의 언론법제 연구

저서 가운데는 현직 판사와 검사가 쓴 두 권의 책이 깊이 있는 내용으로 두드러진다. 박용상 판사의 『언론과 개인법익』(조선일보사, 1997)은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제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언론법 전문가인 현직 법관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법익 침해의 법률관계와 그에 대한 구제제도를 법적으로 살펴본 저서다. 저자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1982), 『방송법 제론』(1988)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언론과 개인법익,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일반이론, 미국 명예훼손법상의 면책특권, 반론권의 보도청구권의 이론과 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성수 검사의 『언론과 명예훼손』(육법사,

1997)은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명예훼손법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책으로 현직 부장검사가 실무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인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저서이다.

『세계언론판례 총람』(한국언론연구원, 1998)은 현직 법관과 법학교수(박용상, 성낙인, 한위수, 김재협, 황도수)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이다. 1)서론, 2)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한계, 3)취재와 법적 규제, 4)명예훼손, 5)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 6)명예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7)보도의 특수문제, 8)언론경영, 9)방송과 뉴미디어편으로 나누어 각국의 판례를 모아 934페이지의 분량에 수록하였다.

김창봉 교수의 『법을 알고 기사쓰기』(언론연구원, 1997)는 「취재보도 판례」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명예훼손소송 사건의 판례를 모아 기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인 책이다. 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대형화, 거액화 하고 있는 실정이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언론에 불리한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언론이 언론의 판례를 알 수 있도록 만든 실무서이다.

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재단)은 90년대 중반 이후 언론법제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책을 출간하였다. 언론연구원은 1995년에 『세계언론법』을 상, 하 2권으로 출간한 데 이어서 『세계 언론법제 동향』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를 증보하는 형식인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국의 언론법 조문과 함께 이에 대한 해설과 새로운 법제 동향 등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물론이고, 입법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자료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간한 것이다. 1997년 7월에 첫 호를 발간한 이래 연 2회씩 1998년 12월까지 4권을 발행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대상국가는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이웃한 국가, 동구권, 기타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우리와 비슷한 나라로 확대했다.

이구현의 『미국 언론법』(커뮤니케이션북스 1998)은 미국의 언론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책이다. 외국 언론법제를 소개하는 책도 여러 권 번역되었다. (명단 참조)

Ⅲ. 저서 논문 목록<발표 연도순>

1. 저서

- 한국언론연구원, 오보와 정정 / 한국언론연구원 1990
- 한병구, 언론법제통론 / 나남 1990
-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 아침 1991
-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의 윤리강령과 보도기준 / 한국언론연구원 1991
- 김동민 편저, 언론 법제의 이론과 현실 / 한나래 1993
-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 한국언론연구원 1993
- 팽원순, 한국언론법제론 / 법문사 1994
- 한국언론연구원, 언론과 수용자 / 한국언론연구원 1994
- 한국언론연구원, 세계언론법(상-하) / 한국언론연구원 1995
-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 한국언론연구원 1995
-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한국언론연구원, 뉴미디어와 저작권 / 한국언론연구원 1996
- 한국언론학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널리즘과 언론법제 /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 한국언론학회 1996
- 김병국, 언론과 시민권 / 커뮤니케이션선북스 1997
-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제도 / 조선일보사, 1997
- 손수진, 광고관련 법원판례집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997
- 이구현, 광고법학, 1997
-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 1997
- 김창룡, 법을 알고 기사 쓰기(취재보도 판례) / 한국언론연구원 1997
- 한국언론연구원, 21세기 한국 언론정책 · 법제 연구 : 한국과 외국의 매스미디어 산업 · 정책 · 법제 비교 / 한국언론연구원 1997
- 한국언론연구원, 세계언론법제 동향 / 한국언론연구원 1997
- 유일상, 언론법제론 / 박영사 1998
- 이구현, 미국 언론법 / 커뮤니케이션선북스 1998
- 한국언론연구원, 범죄익명보도 / 한국언론연구원 1998
-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 1999 나남

2. 번역서

- 유재천 편역, 언론 윤리의 원칙과 실제 / John L. Hulteng 저 ; 을유문화사 1992
- 문화체육부, 외국의 출판법제 / 문화체육부-한국출판금고 1994
- 우병동 역, 언론 윤리의 모색 / H. Eugene Goodwin 저 ; 한나래 1995
- 한국언론연구원 편역, 언론윤리 / Conrad C. Fink 저 ; 한국언론연구원 1995
- 방송위원회, 영국방송법, 방송위원회, 1996, 1998
- 김여노 · 한상필 역, 미국광고법의 이해 / Dean K. Fuerothne저 ; 한울아카데미, 1998
- 이우승 역, 독일 미디어법 / 마리아 파쉬케 ; 한울아카데미 1998
- 한국언론연구원, 범죄익명보도 / 淺野健一, 山口正紀 ; 한국언론연구원 1998.
- 김대호 역, 세계의 방송법 / Eric Barendt, 한울아카데미, 1998
- 한국방송공사, KBS방송제작가이드라인 / 한국방송공사 1998

3. 박사학위 논문

1) 명예훼손 · 프라이버시 침해(4)

- 차맹진, 프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인하대 대학원 1991
- 이관기,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한양대 대학원 1993
- 박홍윤,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대학원 1994
- 김광삼,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민사책임 / 전북대 대학원 1998

2) 언론중재(1)

- 임병국, 한국 일간신문의 오보와 그 구제에 관한 연구 : 4대 일간지의 고침 기사와 언론중재사례를 중심으로 / 경희대 대학원 1990

3) 반론권(2)

- 박운희,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 서울대 대학원

원 1995

· 김병국, 반론권제도의 언론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대학원 1998

4) 언론자유(7)

· 박철언, 언론자유와 국가안보의 상충과 조화에 관한 연구 : 국가비밀에 대한 접근이용의 제한을 중심으로 / 한양대 대학원 1990

· 이동훈, 언론자유와 현대적 기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액세스권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 대학원 1991

· 유종원, 한국신문에 나타난 언론자유의 이념적 성격에 관한 연구 : 4개 전국지의 언론관계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대 대학원 1992

· 문중대, 언론자유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접근 / 서강대 대학원 1995

· 박상익, 밀턴의 '아레오파기타카'와 표현의 자유 / 경희대 대학원 1996

· 김서중,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대학원 1996

· 조규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 대학원 1998

5) 윤리 (2)

· 황두환, 한국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 한양대 대학원 1990

· 이경희, 한국 언론윤리에 관한 체계론적 연구 / 성신여대 대학원 1998

6) 저작권(3)

· 김정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 전남대 대학원 1990

· 전영표, 지식의 국제유통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 한양대 대학원 1992

· 이호열, WTO체제하의 저작권 대책 :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을 중심으로 / 고려대 대학원 1998

7) 정보공개(1)

· 김효진, 지방자치제도상 주민참가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이론과 실례를 중심으로 / 대구대 대학원 1997

8) 통제(3)

· 김종서, 시청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대학원 1994

· 유창하, Gatekeeping의 내적 통제에 관한 연구 : 기자들의 뉴스 가치관과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 고려대 대학원 1990

· 신현웅, 한국중고방송에서의 언론자유와 통제에 관한 연구 : 보도의 공정성과 편파성을 중심으로 / 서강대 대학원 1993

9) 광고규제(3)

· 허갑중, 광고의 성표현 규제에 관한 의식연구 : 자연적 성표현과 문화적 성표현을 중심으로 / 한양대 대학원 1990

· 이윤호, 한국신문의 광고윤리에 관한 분석적 연구 / 성균관대 대학원 1998

· 홍승철, 광고규제의 헌법문제 / 중앙대 대학원 1999

4. 일반논문

1) 명예훼손(인격권 - 초상권) (35)

· 염규호,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受繼 / 1990 언론중재 37(90. 12) : pp.44-49

· 조일환, 이동훈, 언론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책임의 연구 : 미국의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 1990 동의법정 6(90. 2) : pp.1-19

· 박동희, 언론자유와 명예훼손 / 1991 고시계 418(91. 12) : pp.115-128

· 염규호, 신문의 독자편지와 명예훼손 / 1991 언론중재 40(91. 9) : pp.73-83

·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의 명예훼손과 해고의 정당성 / 1991 노동관례 32(91. 4) : pp.36-41

· 성낙인,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광고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 1992 언론중재 42(92. 3) : pp.27-42

· 손동권, 언론보도와 死者의 명예훼손 / 1992 언론중재 42(92. 3) : pp.6-11

· 염규호, 잘못 인용과 명예훼손 : 메이슨 대 뉴요커 사건을 중심으로 / 1992 신문과방송 259(92. 7) : pp.38-45

· 최우찬, 명예훼손의 정당화 사유에 관한 형법적 고찰 : 특히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1992 언론중재 42(92. 3) : pp.12-18

· 홍춘의, 명예훼손과 민사책임 / 1992 전북대법학연구 19(92. 9) : pp.139-180

· 고승덕, 국제적인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적용할 법과 소송절차에 관하여 : 한국법과 미국법을 중심으로 / 1993 언론중재 48(93. 10) : pp.14-32

· 김양기, 어떤 기사가 명예훼손 걸리나/1993 저널리즘 30(93. 9) : pp.202-214

· 양삼승,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한 연구: 정정보도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1993 언론중재48(93. 10) : pp.6-13

· 염규호, 통신사 기사 게재와 명예훼손: 미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법·판례/1993 언론중재 49(93. 12) : pp.61-70

· 장영수, 최근의 언론관련판례 개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1993 언론중재 48(93. 10) : pp. 33-43

· 염규호, 미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헌법이론과 학설을 중심으로/1994 언론중재 51(94. 6) : pp.36-51

· 염규호, 미국의 언론법과 사법제도: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사건의 관점에서/1994 언론중재 50(94. 3) : pp.47-61

· 이광진,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미국판례상의 Actual Malice Rule을 중심으로/1994 한양법학 4·5(94. 2) : pp.295-313

· 최상호,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1994 계명대사회과학논총 13(94. 12) : pp. 171-187

· 한위수,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1995 인권과정의 228(95. 8) : pp.45-62

· 류일상, 법정공개와 피의자 인권, 알 권리/1996 언론중재58(96. 3) : pp.38-50

· 한위수, 명예훼손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판례와 쟁점/1996 언론중재61(96. 12) : pp.6-26

· 김민중·김광삼,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민사상 제문제/1997 전북대법학연구 20(97. 3) : pp.97-111

· 유일상, 의견광고와 명예훼손 및 그 대책/1997 언론중재63(97. 6) : pp.42-58

· 윤철홍,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사법적 구제/1997 법과사회14(97. 4) : pp.82-103

· 전희락, 언론자유와 적용 범위와 인격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1997 중앙대언론연구 6(97. 12) : pp.77-98

· 황삼재,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와 쟁점들: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1997 정보법학1(97. 12) : pp.297-313

· 손수진, 광고와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1998 광고연구39(98. 6) : pp.111-127

· 유의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형법 307-308조를 중심으로/1998 한국언론학보43-2(98. 12) : pp.179-209

· 이재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1998 언론 중재66(98. 3) : pp.25-35

· 황도수,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의 범위와 실제/1998 언론중재67(98. 6) : pp.6-17

· 엄동섭, 방송과 명예훼손/방송문화 1999. 6

· 엄동섭, 방송과 초상권/방송문화 1999. 5

· 이도형, 특정단체의 '명예'값 근거는 무엇인가/1999 한국논단113(99. 1) : pp.12-18

· 이성용,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과 손해배상 소송 실무의 개관/1999 인권과정의 271(99. 3) : pp. 80-103

2) 언론중재(소송)(16)

· 엄영철, 언론중재: 소송 외 방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1990 저작권10(90. 6) : pp.50-52

· 이해복, 김동훈, 공정정보와 언론윤리: 언론중재제도의 강화필요성/1991 언론중재 41(91. 12) : pp.45-49

· 성낙인, 언론 표현에 의한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관하여/1995 나라의길38(95. 12) : pp.85-94

· 성낙인, 언론피해구제의 실제: 언론중재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1995 언론중재56(95. 9) : pp.19-34

· 조해현, 정정보도 강제이행 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1995 언론중재57(95. 12) : pp.34-42

· 박영상, 언론자유, 책무 그리고 중재제도/1997 언론중재63(97. 6) : pp.86-89

· 방석호, 언론피해구제와 방송법/1997 경희법학32.1(97. 8) : pp.285-303

· 성낙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중재/1997 법과사회 14(97. 4) : pp.6-37

· 안광식, 언론의 환경변화와 언론중재/1997 언론중재 64(97. 9) : pp.76-85

· 김학수, 취재보도관행과 언론중재제도의 보완기능/1998 언론중재68(98. 9) : pp.62-64

· 성낙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언론중재/1998 언론중재67(98. 6) : pp.82-84

· 조준원,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 분석/신문과방송 1998. 10

· 박형상, 법률 속 언론-황혼이혼 재판보도/신문과방송 1999. 4

· 이구현, 미국 방송사들 형평원칙 위헌소송 제기/신문과

방송 1999. 1

- 이두석, 법조계의 언론상대 집단 소송 - 그 원인과 대책 / 신문과방송 1999. 6
- 장영수, 98년도 언론관계 판결 회고 / 언론중재 1999. 봄

3) 반론권(17)

- 강경근, 반론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 / 1994 언론중재53(94. 12) : pp.16-37
- 김택환, 독일 자물란트주 신문법 반론권 조항 개정 / 1994 신문과방송283(94. 7) : pp.52-58
- 정진식, 언론과 반론권 : 언론옴부즈만제도를 중심으로 / 1994 언론중재53(94. 12) : pp.7-15
- 강경근, 헌법상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 / 1995 송실대법학논총8(95. 2) : pp.135-168
- 박운희, 독일의 반론권(상, 하) / 1995 언론중재55(95. 6) : pp.40-57, 언론중재 56(95. 9) : pp.50-59
- 박운희, 프랑스에 있어서의 반론권 / 1995 언론중재54(95. 3) : pp.47-70
- 김장완, 경찰관의 Interview Guide Line과 반론권 / 1996 경찰대논문집16(96. 10) : pp.407-438
- 박인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문제점 / 1996 형평과정의11(96. 12) : pp.43-69
- 양삼승,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 반론권의 해설을 중심으로 / 1996 법조480(96. 9) : pp.5-41
- 양삼승,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 정간물법 개정에 따른 반론권의 해설을 중심으로 / 1996 언론중재59(96. 6) : pp.7-25
- 권형준, 반론권에 관한 고찰 / 1997 한양대법학논총14(97. 10) : pp.245-261
- 방석호, 뉴미디어 시대의 반론권과 액세스권 / 1997 언론중재62(97. 3) : pp.27-42
- 조준원, 반론보도 현황과 개선방향 / 신문과방송(1997. 12) : pp.135-139
- 성낙인, 선거보도와 반론권 / 1997 언론중재65(97. 12) : pp.23-33
- 권형준, 반론권 / 1998 고시연구292(98. 7) : pp.67-89
- 김준길 외, 새로운 과제 - 반론권 / 1998 신문과방송(99. 9) : pp.12-15
- 오영권 · 김명섭, 반론권의 예외사유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 1998 언론중재 68(98. 9) : pp.27-47

4) 프라이버시(35)

- 김창국,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좌담> / 1990 인권과정의171(90. 11) : pp.8-23
- 이인용,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1990 입법조사월보193(90. 10) : pp.61-81
- 지경용, 미국의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 1991 전자공학회지82(91. 3) : pp.216-225
- 이관기, 정보화사회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 1992 한양대언론학보 12(92. 12) : pp.79-103
- 김권일,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고찰 / 1993 연세대언론사학문보 3(93. 12) : pp.189-208
- 김동철, 언론과 프라이버시 / 1993 신문연구56(93. 12) : pp.310-322
- 김순경 · 김종인, 사례분석으로 본 프라이버시의 상황논리 / 1993 한국주거학회지 4,2(93. 12) : pp.11-22
- 유일상, 언론의 자유, 개인의 명예 그리고 프라이버시(상, 중, 하) / 1993 신문과방송272-274.
- 윤희중,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상충성에 관한 인식성향 연구 : 고위공직자 부패와 재산공개를 중심으로 / 1993 원광대학원논문집12(93. 11) : pp.299-332
- 이기호, 수사상 프라이버시의 보호시설 / 1993 경찰대논문집13(93. 12) : pp.171-190
- 변재옥, 컴퓨터와 프라이버시 / 1994 영남법학2(94. 9) : pp.80-94
- 염규호,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침해와 언론의 자유 : 판례를 중심으로 / 1994 언론중재 53(94. 12) : pp.52-70
- 천병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1994 언론중재53(94. 12) : pp.71-73
- 천병태, '표현의 자유'와 Privacy :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본 / 1994 부산대법학연구 43(94. 12) : pp.175-197
- 강경근, 주민등록과 전자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 1997 아태공법연구4(97. 12) : pp.27-51
- 김현성, 신용정보와 프라이버시 / 1995 신용카드6(95. 3) : pp.33-38
- 박용상, 언론의 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 침해 / 1995 인권과정의228(95. 8) : pp.31-44
- 양조옥, 정보공개 프라이버시 - 보호논의의 현재 / 1995 법무사340(95. 10) : pp.17-25
- 윤은상, 언론과 프라이버시 / 1995 방송정보12(95. 6) : pp.81-87
- 임영형,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 1995 호서대사회과학연구14(95. 12) : pp.17-41
- 김종범,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 / 1996 국민대사회과

학연구9(96. 12) : pp.117-141

- 박성원, 행정정보의 권리전략 : 프라이버시보호를 중심으로 /1996 강원대지역개발연구 4(96. 8) : pp.273-292
- 성낙인, 자동화사회와 프라이버시보호 /1996 법제연구 11(96. 9) : pp.8-36
- 조동기,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 전자공동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1996 서울대사회과학과정책연구18,3(96. 12) : pp.29-55
- 방석호,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1998 정보법학2(98. 12) : pp.345-365

5) 국가이익(안보-군사기밀)(6)

- 이홍식, 국가안보와 언론의 역할에 관한 소고 (상) : 그 상충관계의 해결을 위한 모색 /국방 205(91. 1) : pp. 112-121
- 강경근,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관련 보도 /1993 월간고시236(93. 9) : pp.67-79
- 김필제, 비상계획 및 지역 공동사회의 알 권리 /1994 유독물18(94. 9) : pp.16-25
- 권해수 · 서순복, 환경 위기상황 하에서 주민의 알 권리 확보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긴급대처계획 및 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1996 한성대북방연구6(96. 12) : pp.69-87
- 여영무,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보 : 최근의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1996 새물결 184(96. 8) : pp.132-147
- 정재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알 권리' : 한국의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1997 세계헌법연구2(97. 11) : pp. 373-490

6) 언론법(방송법)(65)

- 이원탁, 미국의 '아동TV 방송법(1990)' /1991 입법자료 분석7(91. 6) : pp.98-108
- 김택환, 언론법 사상 서설 2 ; 유럽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1992 신문과방송260(92. 8) : pp.84-89
- 박용상, 한국의 언론법사 /1993 법조439(93. 4) : pp. 3-43
- 이효성, 한국 방송법과 방송제도의 문제점 /1993 방송연구36(93. 9) : pp.124-151
- 차형근, 방송법에 관한 일고찰 /1993 변호사23(93. 1) : pp.111-127
- 김재범, 방송사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994 방송학연구5(94. 12) : pp.143-157

- 류일상, 언론법제 연구의 성격과 방법 /1994 언론중재 50(94. 3) : pp.34-46
- 박형상,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 /1994 방송학연구5(94. 12) : pp.97-118
- 방석호, 위성방송 근거법 제정시의 방송관련법 구도와 문제점 검토 /1994 방송정보 4(94. 10) : pp.19-21
- 성낙인, 한국 언론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1994 언론중재 50(94. 3) : pp.6-20
- 정진석, 국내 언론법과 언론법제 연구의 변천 /1994 언론중재50(94. 3) : pp.21-33
- 강경근, 한국 언론법제 50년 : 시론적 고찰 /1995 신문연구59(95. 7) : pp.87-101
- 김동철, 우리 나라 방송법의 변천과정 /1995 방송연구 41(95. 12) : pp.2-25
- 이연, 일본의 방송법 개정논의와 정책방향 /1995 저널리즘비평15(95. 5) : pp.88-93
- 조정식, 방송법에 의해 공영방송광고 엄격 제한 /1995 광고정보168(95. 3) : pp.83-87
- 강경근, 한국 언론법제에 관한 사적 소고 /1996 숭실대 법학논총9(96. 2) : pp.119-135
- 김승수,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른 언론정책과 법의 개혁을 위한 이론적 고찰 /1996 언론연구 제7집
- 김승수, 한국방송제도에 대한 경제분석과 전망 /1996 언론학보 제14집
- 김택환, 멀티미디어 시대 언론정책 · 법제 패러다임 연구 : 민주적 공론구조를 위한 법 담론을 중심으로 /1996 한양대언론학보16(96. 12) : pp.229-261
- 김혜진, 방송의 공익성 포함되어야 : 방송법 제정(안) /1996 한세정책30(96. 12) : pp.85-89
- 송해룡, 언론법 개정 무산 유감, 새로운 방향 /1996 나라의길39(96. 1) : pp.103-105
- 최영묵, 방송정책, '시장'의 미로에서 실종된 '국민의 방송' : '95 방송법 개정 논란을 중심으로 /1996 한국사회와 언론7(96. 3) : pp.135-166
- 한병구, 정기간행물의 개정법률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널리즘비평 1996. 5호
- 김대호, 방송법과 뉴미디어 /1997 경희법학32,1(97. 8) : pp.305-327
- 김지영, 통합방송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1997 의정자료24(97. 4) : pp.1-21
- 권영성, 헌법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1998 고시연구290(98. 5) : pp.74-82

- 김대호, 방송법 개정과 위성방송 발전 방안 : 위성방송 발전 방안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워크샵/1998 뉴미디어저널58(98. 7) : pp.68-71
- 김대호, 방송법 페러다임의 변화와 개선방향/1998 정보법학2(98. 12) : pp.27-52
- 김승수,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1998 방송과기술 61(98. 8) : pp.129-139
- 김영욱, 통합방송법 개정 논의에 부쳐 /방송비평 1998. 제12호
- 김학천, 새 방송법의 의미와 전망/1998 방송문화200(98. 2) : pp.18-21
- 류한호, 정기간행물법의 공론화가 시급하다 /저널리즘비평 1998. 12(제26)
- 박성수, 방송법 조속처리 없이는 YTN도 없다 : YTN 경영난과 전망/1998 신문과방송 332(98. 8) : pp.32-35
- 박용상, 정보법제의 체계와 내용/1998 법조501(98. 6) : pp.5-35, 법조503(98. 8) : pp.31-57
- 방석호, 방송법 제정의 주요 쟁점과 그 입법방향 : 방송법안에 대한 몇가지 검토 /1998 방송정보44(98. 5) : pp. 50-65
- 방송위원회, 새방송법(안) 공론 : 정부여당 방송법안 주요내용 /1998 방송과시청자 113(98. 10) : pp.22-23
- 신동진, 방송법의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1998 방송문화203(98. 5) : pp.54-57
- 엄동섭, 법으로 점검해본 취재방식/1998 방송문화(98. 11)
- 여현철, 얼치락 뒤치락 방송법안, 결국 또 연기 : 통합방송법 또 다시 표류/1998 뉴미디어저널63(98. 12) : pp. 25-26
- 원우현, 방송법 개정과 방송위원회 위상/1998 신문연구 68(98. 9) : pp.142-156
- 유일상, 허가제 요소 없애 언론자유 보장해야 : 정기간행물법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1998 신문과방송331(98. 7) : pp.42-47
- 이구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토커라치' 법안 통과 확실히/1998 신문과방송(98. 12)
- 이면, 언론법을 통해 본 일제하의 언론통제/1998 순국 93(98. 10) : pp.38-45
- 이택수, 또 다시 상정되는 새 방송법 : 정부안에 MSO·MPP 허용 규정 등 포함/1998 뉴미디어142(98. 10) : 70-74
- 장호순 외, 언론법 교육의 실태(특집)/1998 언론중재

68(98. 9)

- 정병준, 방송법 개정을 위한 시민 단체 초청 워크샵 /1998 뉴미디어저널(98. 9)
- 정용준, 국민의회의 방송법 개정안과 새정부의 위성방송 정책 : 한국방송학회 제2차 쟁점과 토론/1998 뉴미디어저널61(98. 10) : pp.44-47
- 신상근, 새방송법(안) 공론 : '국민의 정부'개혁의지 담기길/1998 방송과시청자113(98. 10) : pp.20-21
- 황근, 정치와 통치논리에 유린된 우리의 방송법 : 역대 방송법 변천사/1998 뉴미디어저널63(98. 12) : pp.45-49
- 김병국, 언론 관련 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1999 신문과방송(99. 3)
- 방석호, 방송법을 위한 접근 부족 : 법체계상 논의보다 방송위 구성,공영성 논쟁만 핵심주제로 부각/1999 방송문화213(99. 3) : pp.2-5
- 임상원 외, 방송법안을 점검한다(특집)/1999 방송문화(99. 5)
- 천호선, 새 방송법 제정 왜 그렇게 힘든가/1999 국회보389(99. 3) : pp.134-137
- 최창섭, 방송개혁과 통합방송법/1999 관훈저널(99. 봄)
- 한국방송협회, 처벌 무조건 강화보다 실효성 필요 : 방송법안 벌칙조항/1999 방송문화214(99. 4) : pp.2-5

7) 영상-통신-정보법(7)

- 강경근, 영상진흥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 : 전시행정예 백지 위임된 예술과 언론의 자유/1995 저널리즘비평15(95. 5) : pp.28-35
- 김영석 외, 뉴미디어시대의 '미디어법학'(특집)/연세커뮤니케이션즈 1996. 4호
- 박현순, 미국 통신법 개정안 분석-매체간 장벽 허물어 무한경쟁 신호탄 터져/뉴미디어저널 1996. 4
- 방석호, 우리 나라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의 개편방향 연구/방송연구 1996. 여름
- 방석호, 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1997 정보법학1(97. 12) : pp.5-51
- 황상재 외, 뉴미디어시대의 언론법제 전망(특집)/언론중재 1997. 봄
- 김병록 외, 영상관련법/뉴미디어저널 1998. 9

8) 수용자(11)

- 박형상, 시청자 주권 가로막는 현행법의 문제점/1993 방송연구37(93. 12) : pp.24-40

- 김창남, 정보화시대 수용자 개념의 변화와 공영방송의 대응 / 1995 방송문화연구7(95. 12) : pp.161-182
- 석성희, 지방신문의 액세스권에 관한 연구 : 독자투고란을 중심으로 / 1995 중앙대언론연구논집19(95. 3) : pp.47-86
- 양삼승, 현행법과 언론수용자 권익 / 1995 언론중재56(95. 9) : pp.7-18
- 최현철, 수용자 주권시대에 있어서 방송의 역할과 과제 / 1996 방송문화연구8(96. 12) : pp.53-69
- 최영목, 방송 심의와 수용자 주권 / 1997 한양대크로노스40(97. 7) : pp.130-140
- 김병록, 수용자 주권을 다시 생각한다 / 1998 뉴미디어저널56(98. 5) : pp.8-26
- 김승수, 새방송법(안) 공론 : 수용자 주체의 방송장전이 왜야 / 1998 방송과시청자113(98. 10) : pp.27-29
- 황상재, 멀티미디어 시대의 수용자 / 1998 방송비평12(98. 7) : pp.15-19
- 황용석, PC통신을 통한 수용자의 방송 참여 행태 분석 / 1998 방송개발6, 2(98. 12) : pp.193-216
- 박용수, 수용자주권의 법제론적 고찰 / 1999 언론중재71(99. 6) : pp.90-93

9) 언론자유(알 권리-표현의 자유)(71)

- 송길웅,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론의 변천 / 1990 부산공업대논문집32(90. 12) : pp.23-38
- 양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숨길 권리' / 1990 한국논단11(90. 7) : pp.118-123
- 이승우,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 1990 사법행정352(90. 4) : pp.60-67
- 이혜복, 언론자유와 시민의 권리 / 1990 국회보287(90. 9) : pp.169-177
- 정성태, 알 권리 · 출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북한 사회 개방촉구 캠페인 / 1990 자유공론280(90. 7) : pp.188-207
- 권영호, 독일기본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 : 우리 헌법의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비교법적 고찰 / 1991 단국법학2(91. 12) : pp.185-199
- 임삼원, 자유와 언론 : 한국에서의 언론자유와 그 패러독스의 의미 / 1991 고려대커뮤니케이션과학13(91. 12) : pp.1-46
- 임홍빈, '알 권리'의 현실적 의미 : 야누스의 얼굴을 한 언론 2 / 1991 문학사상223(91. 5) : pp.110-134
- 김동철, 법원의 영장 열람금지 파문과 알 권리 / 1992 언

- 론중재45(92. 12) : pp.13-21
- 김문현, 알 권리와 그 한계 / 1992 인권과정의193(92. 9) : pp.8-21
- 김배원, 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 / 1992 차치연구5(92. 3) : pp.1-24
- 김택수, 알 권리와 언론보도의 한계 / 1992 신문과방송259(92. 7) : pp.102-103
- 김희근,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정보공개 / 1992 전주우석대논문집 인문사회14(92. 12) : pp.273-312
- 문광삼,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판례이론 / 1992 월간고시216(92. 1) : pp.49-61
- 박지원, 정권이 바뀌어야 국민의 '알 권리' 충족되고 언론도 발전 / 1992 의정평론48(92. 10) : pp.38-41
- 배석보, 현대행정에서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1992 동아대사회과학논집9(92. 12) : pp.181-197
- 서정우,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 1992 연세대사회과학논집23(92. 12) : pp.121-141
- 이택수, 알 권리와 언론보도의 한계 / 1992 언론중재44(92. 9) : pp.34-39
-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 미국 연방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1992 호서대사회과학연구11(92. 12) : pp.41-71
- 고종만,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정보공개법의 상관관계 / 1993 의정평론52(93. 2) : pp.100-116
- 권영호, 국민의 알 권리와 1993 고시제442(93. 12) : pp.70-78
- 김정탁, 정보통제의 언론자유론 : 6공화국의 언론정책과 관련하여 / 1993 성균관대사회과학36(93. 4) : pp.197-221
- 박광배, 외설물의 심리적 효과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993 충북대학생활연구18(93. 12) : pp.37-59
- 성낙인, 알 권리와 프랑스 정보공개법 / 1993 월간고시236(93. 9) : pp.55-66
- 윤명선, 알 권리 / 1993 월간고시229(93. 2) : pp.86-99
- 이영철,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규제 : 헌법론적 고찰 / 1993 연세대방송대학18(93. 11) : pp.34-51
- 계희열, 헌법의 기본문제 연구 : 자유권적 기본권 / 1994 고시연구248(94. 11) : pp.14-84
- 김배원, 정보화 사회와 소비자의 알 권리 / 1994 소비자문제연구13(94. 6) : pp.1-15
- 윤명선, 표현의 자유의 제약원리 :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판례경향을 중심으로 / 1994 월간고시248(94. 9) : pp.14-24
- 권형준, 알 권리 / 1995 한양대법학논총12(95. 10) : pp.291-309

- 김배원, 미국에 있어서 상업적 언론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 1995 미국헌법연구6(95. 7) : pp.245-277
- 김정탁, '알 권리'보다는 '살 권리'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 / 1995 21저널리즘비평16(95. 10) : pp.46-53
- 양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과 현실의 변화 / 1995 한양대법학논총12(95. 10) : pp.211-230
- 이구현, 신규제정책 표방, 부활은 시간문제 / 1995 신문과 방송291(95. 3) : pp.106-110
- 정진석, 광복언론 50년사 2: 자유당 말기의 언론탄압 / 1995 신문과방송290(95. 2) : pp.64-71
- 정진석, 광복언론 50년사; 동아·조선 투위 사건 / 1995 신문과방송292(95. 4) : pp.34-45
- 정진석, 광복언론50년사-언론통제합: 거의 10년단위 강제 언론구조 개편 군사정부 권력유지 위한 언론탄압 / 1995 신문과방송294(95. 6) : pp.54-63
- 최인화, 중·고교생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 1995 법과사회12(95. 11) : pp.180-202
- 황상재, 전자신문의 수용에 따른 언론자유 의 문제들 / 1995 한양대언론학보15(95. 12) : pp.195-215
- 권형준, 알 권리 / 1996 고시계468(96. 2) : pp.94-105
- 김진홍, 중국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제기된 신권위주의와 언론자유 의 문제 / 1996 한국외대동서언로8(96. 12) : pp.1-19
- 김호섭, '알 권리' 빙자한 '최악의 오보': 빛나간 방송사 여론조사 / 1996 주간한국1618(96. 4. 25) : pp.28-29
- 백승권, '알 권리' 충족이 최고의 고객만족: 신문업계 새 바람-고객중심 경영 / 1996 신문과방송307(96. 7) : pp.74-77
- 이인호, 정보환경의 변화와 언론자유 의 법리 / 1996 토지공법연구3(96. 9) : pp.287-319
- 정성자, 언론 자유와 안보의 상관관계 / 1996 새물결188(96. 12) : pp.62-67
- 강경근, 표현의 자유와 명백·현존위험 원칙 / 1997 미국헌법연구8(97. 6) : pp.427-460
- 권해수·서순복, 환경 위기상황 하에서 주민의 알권리 확보 1 / 1997 지방자치100(97. 1) : pp.98-103
- 김경제, 방송의 자유의 법적 성격 / 1997 부산법학3,1(97. 8) : pp.215-242
- 김문환, 표현의 자유와 문화정책 / 1997 철학과현실32(97. 3) : pp.44-56
- 문종대, 고티에의 합의를 언론자유 / 1997 동의논집 인문사회과학26(97. 8) : pp.217-234
- 박종렬, 표현의 자유와 의견광고에 관한 연구 / 1997 동신대인문논총4(97. 12) : pp.333-362
- 성동규·김왕석,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 / 1997 한국언론학보42,2(97. 11) : pp.227-260
- 손원선, 사실의 주장과 의견의 표현 / 1997 법과사회15(97. 12) : pp.200-229
- 송길웅,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찰 / 1997 부경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21(97. 12) : pp.99-121
- 염규호, 미국의 언론자유와 국가안보: 국방성 기밀문서 보도사건의 25주년의 의미 / 1997 치안문제182(97. 4) : pp.14-22
- 윤영철, 전자통신상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 1997 언론중재65(97. 12) : pp.6-22
- 이경식, 건강이 대통령 자질의 제1조건: 국민은 철저히 알 권리가 있다 / 1997 민족정론53(97. 12) : pp.26-32
- 이구현, 광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1997 광고연구35(97. 6) : pp.95-124
- 이동훈, 알 권리에 관한 연구 / 1997 세명대인문사회과학연구5(97. 9) : pp.97-113
- 이명구, 낙태반대운동과 표현의 자유 / 1997 미국헌법연구8(97. 6) : pp.99-122
- 장호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역할 / 1997 신문과방송313(97. 1) : pp.28-33
- 장호순,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공법 판결을 통해 본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 1997 충남대북미주학연구6(97. 2) : pp.27-69
- 정윤식, 뉴미디어 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 1997 언론중재62(97. 3) : pp.16-26
- 차재영, 미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의 위기 / 1997 충남대북미주학연구6(97. 2) : pp.5-26
- 한국방송광고공사, 표현의 자유 확대 경향에 공공이익 저해 심의는 강화: '96년 광고심의 결산 / 1997 광고정보191(97. 2) : pp.13-17
- 강태영, 텔레비전 뉴스: 45분간의 알 권리 / 1998 신문과방송333(98. 9) : pp.120-121
- 성낙인, 정보화사회의 방송의 자유와 책임: 새로운 방송법질서의 정립을 위하여 / 1998 영남법학7·8(98. 2) : pp.65-92
- 황성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 1998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3(98. 12) : pp.85-138
- 조맹기, 흡스의 여론관: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의 재평가

/1999 한국언론학보43,3(99. 4) : pp.301-333
 · 홍승철,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법리/1999 중앙대법정논총48(99. 3) : pp.31-50

10) 언론윤리-자율규제(42)

· 김명걸, 한겨레신문의 윤리강령과 심의실 :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 /1990 언론중재37(90. 12) : pp.26-29
 · 박홍수, 언론인의 직업윤리 : 윤리상실은 언론자유 포기 의미, 스스로 법칙 정해 자유로워지자/1990 신문과방송 231(90. 3) : pp.4-9
 · 엄기형, 언론윤리문제의 고찰과 과제 : 신문윤리위기능의 활성화 시급하다/1990 신문연구49(90. 7) : pp.165-181
 · 유재천,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에 대한 고찰 /1990 언론중재37(90. 12) : pp.6-14
 · 육창웅, 방송강령제정과 MBC 심의실패 :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 /1990 언론중재37(90. 12) : pp.30-33
 ·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신문심의위원회의 현황 :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1990 언론중재37(90. 12) : pp.34-37
 · 한병구,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의 비교와 제언 :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1990 언론중재37(90. 12) : pp.15-25
 · 김홍규, 유가공업체 광고전과 언론/1991 신문과방송 243(91. 3) : pp.60-62
 · 서정우 현경보, 인도전통과 간디의 언론사상 : <간디자서전>에 나타난 진리파지의 언론윤리를 중심으로/1991 연세대언론사회문화1(91. 5) : pp.173-193
 · 양건수, 자율규제로 광고윤리 확립을/1991 광고정보 120(91. 3) : pp.4-6
 · 한병구 · 문한규, 언론자유와 윤리성 제고/1991 언론중재41(91. 12) : pp.50-54
 · 조규진, 언론자유확대...신의 성실 지켜야 : 언론윤리/1992 신문과방송264(92. 12) : pp.16-19
 · 팽원순, 한국의 언론윤리와 자율규제의 반성 /1992 서강대언론문화연구10(92. 12) : pp.45-54
 · 박중수, 한국 언론의 윤리성과 자율규제 /1993 언론중재 47(93. 6) : pp.6-17
 · 안재훈, 미국의 언론윤리 /1993 신문연구55(93. 7) : pp. 28-37
 · 김지운, 언론윤리의 문제 : 영국과 미국(언론) 윤리평의회 실적 중심을 본 자율규제장치 위기 /1994 성균관대사회과학38(94. 6) : pp.81-103
 · 백선기, 감정적으로 포장된 윤리 평가수준/저널리즘비평 1994. 12

· 김창룡, 취재관행과 법윤리상의 일고찰 /1995 언론중재 54(95. 3)
 · 노진남, 경쟁으로 유실된 언론윤리/1995 저널리즘비평 15(95. 5) : pp.69-71
 · 이효성,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비판한다 : 사적 권력 횡포, 공익차원의 규제 마땅/1995 윤망101(95. 5) : pp.112-115
 · 정진석,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광복언론50년사 제3회) /신문과방송 1995. 3
 · 조용중 외, 한국언론의 정확성 · 윤리성의 문제 (특집) /신문연구 1995. 겨울
 · 김지운, 윤리의식 · 정치의식 성숙이 전제조건 : 정치입장 자유표명-현실적 가능성 진단/1996 신문과방송306(96. 6) : pp.72-76
 · 성낙인, 음반의 사전심의 남본제도와 표현의 자유/1996 고시계467(96. 1) : pp.170-184
 · 신상근 외, 프로그램 사회학-드라마속에서의 사랑과 불륜 (특집) /방송과시청자 1996. 11
 · 윤병일, 방송규제완화-하드는 풀고 소프트는 강화하라 /방송비평 1996. 봄
 · 김정길, 여론환경의 조건 : 언론의 윤리/1997 경기행정논집11(97. 12) : pp.13-34
 · 박성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유해창작물의 통제/1997 철학과현실33(97. 6) : pp.223-233
 · 변동현 · 정설경, 방송윤리에 대한 실무자와 시청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1997 서강대언론문화연구14(97. 12) : pp.123-143
 · 황상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바람직한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1997 한양대언론학보17(97. 12) : pp.187-208
 · 김정기,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 연합통신 윤리헌장을 보고 /신문과방송 1998. 11
 · 박정렬, 정보시대의 정보통신윤리/1998 정보화로가는 길12(98. 4) : pp.29-55
 · 윤재식, 진실전달 위한 진실조작은 한국적 관행(?) : 다큐멘터리 제작과 방송윤리/1998 신문과방송333(98. 9) : pp.81-87
 · 이진아, '좋은 광고' 위한 다양한 자율규제 활발/1998 광고정보202(98. 1) : pp.96-100
 · 장호순, 지역언론의 취재보도와 언론윤리/1998 언론중재66(98. 3) : pp.15-24
 · 정연구, 새로운 시대의 언론 윤리와 법제/1998 KON-KUK MEDIA & COMMUNICATIONS 건국대1(98. 1) : pp.37-55

- 최진봉, 다큐멘터리 조작과 언론의 윤리 /1998 2000년 184(98. 8) : pp.97-101
- 한병구, 방송인의 윤리와 책임 /1998 방송과시청자111(98. 8) : pp.19-35
- 박순화, 방송사의 사전 심의제도 /방송과시청자 1999. 4
- 방석호, 자율규제와 타율규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1999 방송문화214(99. 4) : pp.6-9
- 이경숙, 흔들리는 기자윤리 /신문과방송 1999. 2

11) 저작권(100)

- 김문환, 데이터베이스의 법률문제 :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 1 /1990 저작권11(90. 9) : pp.4-13
- 김석완, 녹음기기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 현황 /1990 저작권12(90. 12) : pp.19-22
- 대한출판문화협회, PW International이 추천하는 최신 도서와 저작권 거래 현황 : 해외 출판물 /1990 출판문화 295(90. 5) : pp.42-44
- 박성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1990 국제법률경영3(90. 3) : pp.117-126
- 유은영, IPA의 저작권 활동 : 국제기구 순례 1 /1990 저작권10(90. 6) : pp.102-106
- 윤희창, 저작권 국제 모델법의 제정 방향 : 국제 저작권 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 /1990 저작권11(90. 9) : pp.44-51
- 이두영, 복사기기의 발달과 저작권 보호 : 출판자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1990 저작권12(90. 12) : pp.10-18
- 이두영, 출판자의 창의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제2회 IPA저작권 심포지엄 참가보고 /1990 출판문화295(90. 5) : pp.32-34
- 이정훈, 저작권의 새로운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 국제 저작권 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1990 저작권11(90. 9) : pp.52-57
- 이호홍, 유럽공동체위원회 저작권 관련 보고서 (하) : 배포권과 대여권 /1990 저작권9(90. 3) : pp.41-45
- 장경환, EC에서의 저작권보호의 조화 /1990 충북대법학연구2,1(90. 11) : pp.489-518
- 최태창, GATT·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경과와 전망 :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 분야 /1990 저작권11(90. 9) : pp.37-43
- 한승헌, Typefaces의 보호와 저작권 /1990 출판연구1, 1(90. 3) : pp.533-553
- 한승헌,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국제적 동향 :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 2 /1990 저작권11(90. 9) : pp.14-21
- 한승헌, 한국 저작권의 장래 : 세계의 출판,출판의 미래 /1990 출판문화300(90. 10) : pp.52-57
- 허희성, 한복의 배색 기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4. 19 선고. 89 가합 32239호 및 39285호 /1990 저작권10(90. 6) : pp.68-73
- 박성호, 북한 저작물의 한국 저작권법상 보호문제 /1991 국제법률경영6(91. 1) : pp.140-154
- 박성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1991 변호사21(91. 1) : pp.311-328
- 박영근,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되나 /1991 새국어생활1, 4(91. 12) : pp.167-171
- 한승헌, 저작권의 법제와 적용상의 제문제 : 사회변화와 법 /1991 감사28(91. 12) : pp.34-39
- 허희성, 저작권 심의 조정과 관련하여 : 문화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과 전망 /1991 문화예술140(91. 3) : pp.22-27
- 박성호, 저작권의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 /1992 국제법률경영12(92. 6) : pp.142-157
- 이병길,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협상(TRIPs)의 주요쟁점에 관한 소고 :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1992 입법조사월보207(92. 3) : pp.72-84
- 김상호, 저작권상담을 통해 살펴 본 출판저작권 문제 /1993 출판문화329(93. 4) : pp.16-20
- 박삼봉 편역, 고용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례 소개 : 이른바 CCNV 사건 <판례> /1993 저스티스 26,2(93. 12) : pp.45-62
- 전영표,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의 관리 문제 /1993 전문대학교육11(93. 12) : pp.34-39
- 허희성,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내용이 아닌 표현형식이다 <판례> /1993 저작권24(93. 12) : pp.50-54
- 황혜선,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연원 : 저작권과 특허를 중심으로 /1993 도서관학논집20(93. 12) : pp.455-470
- 김문환, 음반·영상산업의 발전과 법적 대응 /1994 저작권26(94. 6) : pp.80-89
- 박형상, 종합유선방송과 저작권 /1994 저작권28(94. 12) : pp.13-19
- 안현덕,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럽의 방송 현황 /1994 저작권28(94. 12) : pp.92-98
- 이재환,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문제가 문헌정보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 : OCLC와 LC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4 도서관학논집21(94. 12) : pp.325-361
- 이중환, 음악저작물의 새 형태와 저작권 문제 /1994 저

- 작권27(94. 10) : pp.56-61
- 정상조, 1994년 저작권 판례 회고 <판례>/1994 서울대 법학96(94. 12) : pp.238-251
 - 조용남, 국제저작권협약 가입이 국내 출판계에 미친 영향/1994 출판잡지연구3(94. 12) : pp.103-124
 - 허희성,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 <판례>/1994 방송문화162(94. 12) : pp.58-61
 - 허희성, 시험문제의 무단이용은 저작권침해/1994 저작권26(94. 6) : pp.55-58
 - 허희성, 종합유선방송의 시행과 저작권문제/1994 저작권27(94. 10) : pp.62-69
 - 구재희, 피고용자의 저작권 지위에 관한 연구 (상)/1995 변시연구54(95. 10) : pp.40-59
 - 김기태, 도서의 대여권에 관한 고찰/1995 출판연구7(95. 12) : pp.235-248
 - 김대영, 저작권에 관한 규칙과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EC 지침/1995 저작권31(95. 9) : pp.94-103
 - 김문환, 종합유선방송과 저작권 :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1995 국민대법학논총7(95. 2) : pp.103-122
 - 김상중, 영상저작물의 감독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이중적 보호의 인정 여부/1995 저작권32(95. 12) : pp.90-97
 - 방석호, 뉴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적용범위 비판/1995 저작권32(95. 12) : pp.4-18
 - 손일영, 서체도 저작권 보호받게 된다/1995 뉴스메이커155(95. 12. 28) : pp.68-69
 - 안재승, 저작권 태풍! 베른협약이 온다/1995 한겨레2178(95. 10. 5) : pp.50-60
 - 이상정, 저작권제도의 효율화 방안/1995 저작권31(95. 9) : pp.61-68
 - 이순자, 공공대출권과 저작권/1995 저작권32(95. 12) : pp.19-34
 - 이진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효율적 관리/1995 저작권30(95. 6) : pp.73-79
 - 이호훈, 복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상의 대응방안/1995 출판연구7(95. 12) : pp.27-39
 - 임원선, '작가의 권리'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 현행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의 보호제도에 관하여/1995 미술세계130(95. 9) : pp.64-71
 - 전영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1995 저작권30(95. 6) : pp.65-72
 - 정상조,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망과 저작권/1995 저작권32(95. 12) : pp.35-42
 - 정상조, 영국에서의 저작권 남용 규제/1995 저작권31(95. 9) : pp.33-40
 - 정상조, 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1995 저작권31(95. 9) : pp.46-51
 - 정진섭,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저작권 환경의 변화 : 인터넷 통신의 확산 추세에 즈음하여/1995 저작권31(95. 9) : pp.52-60
 - 조을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정과 저작권보호강화 시책/1995 정보와통신438(95. 7) : pp.30-32
 - 허희성, 외화방송과 권리관계/1995 방송문화168(95. 6) : pp.58-61
 - 홍지웅, 외국 번역도서 저작권 문제점/1995 동서문화217(95. 6) : pp.316-319
 - 김문환, 종합유선방송과 저작권 : '95 저작권 워크숍/1996 저작권33(96. 3) : pp.68-78
 - 박성호,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실연자의 보상 청구권/1996 저작권34(96. 6) : pp.29-40
 - 방석호, 방송작가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방송사 등의 책임성립 여부/1996 저작권35(96. 9) : pp.48-56
 - 양영준,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 '95 저작권 워크숍/1996 저작권33(96. 3) : pp.60-67
 - 이상정,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새로운 쟁점과 해석/1996 저작권35(96. 9) : pp.75-83
 - 이종구, 세계화 시대의 저작권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의 논의를 중심으로/1996 성공회대학논총9(96. 12) : pp.150-188
 - 이종한, 정보산업시대의 기술의 변화와 문화예술 저작권의 입장/1996 저작권35(96. 9) : pp.58-64
 - 이진우, 멀티미디어 시대의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1996 저작권36(96. 12) : pp.37-49
 - 이현조, WTO출범과 한국의 지적재산권정책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과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1996 전남대법률행정논총16(96. 6) : pp.187-211
 - 정상기,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공과와 개선방향/1996 저작권35(96. 9) : pp.15-27
 - 정상조, 영국에서의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주체/1996 저작권33(96. 3) : pp.47-54
 - 주명혁·이성국,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유럽연합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보호 현황 및 방향 : 유럽연합의 Green Paper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

mation Society를 중심으로 /1996 특허정보 특허청36(96. 1) : pp.29-43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1996 정보산업166(96. 2) : pp.31-35
- 홍재현, 디지털 시대의 전자부제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 문헌배달서비스를 중심으로 /1996 도서관41(96. 12) : pp.56-80
- 김경재, TV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1997 부산대법학연구46(97. 12) : pp.345-366
- 김상호, 직무 관련 저작권과 단체협약 (상, 하) /1997 저작권40(97. 12) : pp.15-24 ; 1998 저작권42(98. 7) : pp.25-37
- 박영길, 저작권과 병행수입 (상, 하) /1997 저작권40(97. 12) : pp.4-14 ; 1998 저작권81(98. 3) : pp.2-13
- 박영길, 권리와 이용자의 저작권 의식 제고 방안 /1997 저작권39(97. 9) : pp.53-59
- 오기석, 컴퓨터 환경에서의 일시적 저장 문제에 대한 일고찰 /1997 저작권39(97. 9) : pp.32-43
- 윤선영, 전자매체와 저작권 /1997 도서관문화30(97. 2) : pp.35-48
- 윤정모, 멀티미디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업무의 통합 중앙집중식 라이선싱 저작권 사용자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1997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지5(97. 4) : pp.132-138
- 윤춘섭, 한국과 영국의 건축 저작인격권 비교연구 /1997 대한건축학회논문집110(97. 12) : pp.127-134
- 이상정, 시나리오와 저작권 : '96한국 시나리오작가협회 저작권 강연회 /1997 저작권37(97. 3) : pp.55-61
- 이은용, 저작권 환경 변화를 부추기는 인터넷 /1997 저작권38(97. 6) : pp.37-47
- 이중환, 저작권의 현단계, 개방이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다 : OECD 가입과 문화예술 시장 개방 /1997 문화예술212(97. 3) : pp.16-21
- 함승헌, 번역과 저작권 : '96 한국번역가협회 저작권 강연회 /1997 저작권37(97. 3) : pp.76-81
- 황희철, 인터넷과 저작권 /1997 정보화저널4,1(97. 3) : pp.82-101
- 김중률, 저작권의 추가적 소급보호 필요인가? /1998 통상법률22(98. 8) : pp.68-88
- 박성호,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의 요건 /1998 저작권42(98. 7) : pp.11-24
- 박영길, 21세기 국가의 지식소유권에 관한 행정 서비스

의 효율화 방안 /1998 저작권42(98. 7) : pp.62-83

- 안창현, 정보사회에서 저작권(copyright)과 저작권반대(copyleft) 운동 /1998 연세커뮤니케이션즈8(98. 2) : pp.39-45
- 윤선희, 디지털 송신과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 /1998 저작권42(98. 7) : pp.2-10
- 이나리, 독립 프로덕션 위기 실태와 회생방안 /1998 신문과방송327(98. 3) : pp.45-49
- 이호열, 방송과 광고에 있어서 저작권의 제한 /1998 안법법학8(98. 12) : pp.283-310
- 이호흥, 정보환경의 급변화와 저작권 /1998 데이터베이스월드66(98. 11) : pp.110-112
- 조소연,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정보를 무단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1998 데이터베이스월드66(98. 11) : pp.67-71
- 최병규,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저작권환경변화 /1998 경영법률8(98. 2) : pp.555-592
- 허희성, 저작권의 신탁관리계약에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소권(訴權)까지 포함된다 <판례> /1998 저작권42(98. 7) : pp.38-49
- 허희성, 패러디와 저작권 /1998 저작권41(98. 3) : pp.47-55

12) 정보공개(37)

- 김원주, '행정과정'과 정보공개 ; 행정법 /1990 고시제403(90. 9) : pp.118-126
- 이승중, 정보공개의 행정책임성에 관한 효과 및 공개방향 /1990 지방행정연구15(90. 2) : pp.27-43
- 김만기, 한국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행정문화 /1991 한국외대논문집24(91. 6) : pp.453-465
- 노영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 사법부 업무 전산화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고찰 /1991 저스티스24,2(91. 12) : pp.28-45
- 우영호,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공개와 유용성 /1992 증권71(92. 3) : pp.39-54
- 김광암,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1993 검찰104(93. 11) : pp.249-305
- 박신, 정보공개에 관한 고찰 /1993 국민대북악논총11(93. 5) : pp.155-165
- 오길환 · 현창희, NTT사례로 본 한국통신의 정보공개 추진방향 (상) /1993 한국통신경영과기술48(93. 7) : pp.2-13
- 임재홍, 언론과 정보공개법 /1993 저널리즘30(93. 9) :

pp.9-80

- 정병식,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1993 청주대우암논총10(93. 12) : pp.346-359
- 한규인,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의 제도화와 한국에서의 제도도입 전략/1993 한국행정학보27, 4(93. 12) : pp. 1415-1436
- 김두호, 2천년대를 향한 정보공개제의 방향/1994 지방행정487(94. 5) : pp.86-95
- 김지은, 정보공개법/1994 신문과방송281(94. 5) : pp. 2-17
- 심진영,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공개/1994 통신정책 ISSUE61(94. 11) : pp.1-41
- 안광복, 정보공개제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스웨덴의 정보공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1994 경제와사회21(94. 3) : pp.216-244
- 유영중·양성국, 정보공개가 유상증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994 상명여대산업과학연구2(94. 8) : pp.73-87
- 김중식,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1995 오산전문대논문집 자연과학15(95. 1) : pp.405-426
- 김학수, 미국 정치선거와 정보공개과정 연구/1995 의정연구71(95. 6) : pp.1-30
- 민경일, 지방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1995 지방행정연구36(95. 9) : pp.207-230
- 박문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정보 공개/1995 지방재정76(95. 11) : pp.4-16
- 심낙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법제의 정립과 언론/1995 언론중재54(95. 3) : pp.36-46
- 심낙인, 정보공개와 알 권리: 정부 정보공개법(시안)을 중심으로/1995 고시연구251(95. 2) : pp.65-78
- 이재성,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정보 공개/1995 지방재정76(95. 11) : pp.17-68
- 강성남, '열린정부'-정보공개와 행정절차의 제도화/1996 의정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3(96. 12) : pp.6-40
- 이기표, 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1996 법제연구11(96. 9) : pp.256-272
- 이종상,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사생활 비밀보호제도/1996 경남법학11(96. 2) : pp.237-261
- 홍춘희, 정보공개법 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1996 데이터베이스월드32(96. 1) : pp.40-42
- 김태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과제/1997 고시연구276(97. 3) : pp.90-109
- 서순복, 독일 환경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1997 광주

대사회과학연구7(97. 12) : pp.101-120

- 양성국, 정보공개가 유상증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997 경영학연구 제주경영학회2(97. 9) : pp.229-242
- 이종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1997 법제479(97. 11) : pp.42-57
- 이홍우, 행정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1997 시정연찬9(97. 12) : pp.67-82
- 최승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특징/1997 고시제480(97. 2) : pp.26-39
- 표시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1997 고시연구279(97. 6) : pp.25-39
- 고영수, 데이터베이스는 21세기 힘의 원천: 정보 공개, 금융지원 통한 개발업체 적극 육성/1998 데이터베이스월드57(98. 2) : pp.4-10
- 채우석, 일본의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일고/1998 아태공법연구5(98. 12) : pp.219-241
- 김철관, 정보공개법 제정과 알 권리/연세커뮤니케이션즈 1999. 제10호

5. 석사학위논문

1) 명예훼손(인격권·초상권)(17)

- 방진옥,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경남대 대학원 1991
- 양정숙,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이화여대 대학원 1991
- 이재진, 언론자유와 인격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 1991
- 김병호, 언어·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경기대 대학원 1992
- 강경구, 명예훼손에 관한 사법적 고찰/서울대 대학원 1993
- 고민수, 언론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관한 연구/연세대 대학원 1994
- 송의호, 한국잡지의 명예훼손에 대한 일 고찰: 언론중재 사례를 중심으로/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1994
- 이원희,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법 제 310조를 중심으로/건국대 대학원 1994
- 안원모,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과 민사상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연세대 행정대학원 1995
- 진재중,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강

릉대 대학원 1995

- 박상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고찰/연세대 대학원 1996
- 안춘훈,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1996
- 박한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의 법률적 대응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 판례에 나타난 실태를 중심으로/서울대 대학원 1997
- 박기의, 알 권리와 인격권의 조화에 관한 법제윤리사례 연구: TV뉴스의 제작시스템을 중심으로/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1998
- 박남규, 언론자유와 개인법익간 충돌에 관한 연구: 한국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에 관련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강원대 대학원 1998
- 이형기, 초상권과 알 권리의 갈등에 관한 연구: 영상취재의 방향모색을 중심으로/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1998
- 임유진,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판례 분석: '공인(公人)'에 대한 보도의 한계는 어디인가?/이화여대 대학원 1998

2) 언론중재(5)

- 채수일, 방송 시청자의 권익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3
- 정창교, 언론매체의 법의 침해 중 정정보도청구권에 의한 구제제도 연구/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1992
- 이진숙,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고찰/연세대 행정대학원 1993
- 권중화,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연구: 최근 6년(1988~1993)간의 언론중재 신청내용 분석/한국외국어대 대학원 1995
- 조남대, 방송보도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사례(1991~1996)를 중심으로/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1998

3) 반론권(접근권)(5)

- 송영신, 방송에 있어서 반론권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한양대 대학원 1998
- 양한열,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이용권/경북대 대학원 1992
- 임창현, 언론매체 접근권의 법리 연구/동국대 대학원 1993
- 유영재, 헌법상 반론권에 관한 연구/한양대 대학원

1993

- 이상기, 반론권의 특성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1995

4) 프라이버시(32)

- 정영주, 정보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정보공개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서울대 대학원 1990
- 강수희,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조선대 대학원 1994
- 김정훈,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한국외국어대 대학원 1993
- 권순엽, 프라이버시권리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경희대 대학원 1995
- 권혁룡, 정보화사회에서의 알 권리와 사생활 비밀의 보호/한국외국어대 대학원 1991
- 기노풍, 행정전산망의 구축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조사연구/성균관대 행정대학원 1992
- 김관섭,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심으로/부산대 행정대학원 1998
- 김종진,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한양대 행정대학원 1998
- 김준웅,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익명통신로와 이동통신 위치관리기법/연세대 대학원 1998
- 노경희,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연구/고려대 대학원 1997
- 박상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민사상의 구제/중앙대 대학원 1995
- 박정기, 국가기간전산망의 확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호에 관한 연구/건국대 대학원 1994
- 박춘화, 정보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연세대 행정대학원 1995
- 방형숙,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숙명여대 대학원 1997
- 서지원, 프라이버시와 국가신분증제도/서울대 대학원 1998
- 송원섭,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인식/고려대 대학원 1992
- 신남선, 우리 나라 정신근로자의 프라이버시 권리의식에 관한 연구/동국대 정보대학원 1994
- 양경숙, 교무실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인지와 교무행위 만족도에 관한 연구/연세대 교육대학원 1991

- 양영희,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공개 / 이화여대 대학원 1990
- 이영진,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정보 사회를 대비한 법 · 제도 측면 /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2
- 이용재,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전북대 교육대학원 1993
- 이윤준,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2
- 이종재,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 영남대 행정대학원 1994
- 이한복, 한국적 정보공개제도의 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 단국대 대학원 1993
- 장재희, I.B사무소에서의 대화프라이버시를 위한 암호 음마스킹 시스템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 연세대 대학원 1992
- 전영도,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1994
- 정종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 호남대 대학원 1995
- 최대준, 정보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7
- 최복래,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의국어대 경영정보대학원 1991
- 최은희,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 숙명여대 대학원 1998
- 정환,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전산처리 시스템의 구축과 프라이버시 보호 / 서울대 대학원 1990
- 한인숙, 언론에 의한 정치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 / 동국대 산업대학원 1999
- 황지원, 프라이버시권리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이화여대 대학원 1995

5) 국가이익(안보·군사기밀)(8)

- 정석중, 국가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 건국대 대학원 1991
- 고부삼, 군사사항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분석 / 서울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1993
- 조해진, 국가안보와 언론자유 / 서울대 대학원 1993
- 김정태, 군 관련보도에 대한 언론자유와 통제 : Gulf전 시 미군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1994
- 윤홍식, 언론자유와 제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 국가기밀

- 을 중심으로 / 광운대 대학 1994
- 이남구, 언론의 자유와 국가비밀보호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4
- 진재열, 언론 자유와 국가기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군 관계 보도를 중심으로 / 연세대 관리과학대학원 1995
- 서효석,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국가기밀보호와 정보공개의 갈등을 중심으로 / 연세대 관리과학대학원 1997

6) 언론법(방송법)(5)

- 윤성일, 언론자유와 언론법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숭실대 대학원 1992
- 엄상익, 미국과 프랑스 언론법에 관한 비교 연구 : 언론 자유의 법철학적 입장에서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1994
- 박형상,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6
- 김지영, 통합방송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제 15대 국회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7
- 나항주,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방송법 변천에 따른 방송 규제에 대한 연구 :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서강대 언론대학원 1998

7) 언론자유(알 권리·표현의 자유)(13)

- 임 표,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중앙대 대학원 1990
- 남영순, 국가의 역할과 언론자유와 상충성에 관한 소고 / 한국의국어대 대학원 1991
- 박용수,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 전남대 교육대학원 1991
- 최용남,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 순천대 대학원 1991
- 최종일,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 조선대 대학원 1991
- 박진완, 알 권리 / 경북대 대학원 1992
- 윤은삼,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새로운 언론자유 정립에 대한 연구 : 종합유선방송의 언론자유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 대학원 1992
- 이우환, 언론자유 개념의 새로운 설정을 위한 일고찰 : I. Berlin 소극적/적극적 자유 개념들을 중심으로 / 고려대 대학원 1992
- 이철우,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 동아대 대학원 1992
- 박양석, 언론자유에 관한 연구 : 책임과 한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3

- 최두훈,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보호 / 중앙대 대학원 1993
- 차현민, 언론자유에 대한 Q방법론적 고찰 / 고려대 대학원 1995
- 안창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언론자유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검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연세대 대학원 1998

8) 언론윤리 · 통제 (36)

- 남기수, 한국신문의 윤리위반사태에 관한 연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서울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0
- 송주식,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광고규제를 중심으로 / 연세대 대학원 1990
- 안정임, 한국의 비교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 특히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 이화여대 대학원 1990
- 이수용, 공정광고를 위한 허위 · 과장광고규제에 관한 연구 / 인하대 경영대학원 1990
- 이재구, 광고의 윤리성에 관한 의식구조 : 소비자와 생산자를 중심으로 / 한양대 대학원 1990
- 황선숙, 한국의 코포라티즘(Corporatism)적 언론통제에 관한 연구 : 3·4공화국의 언론통제를 중심으로 / 중앙대 대학원 1990
- 박성태, 언론통제가 신문의 논조에 미치는 영향 : '6.29선언' 전후의 한국언론의 보도성향을 중심으로 / 동국대 정보대학원 1991
- 정경훈, 정부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 : 5공화국을 중심으로 / 서울대 대학원 1991
- 정옥희, 한국동란의 보도실태에 관한 연구 : 통제와 선전분석을 중심으로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1
- 김인중, 한국의 출판자유와 윤리성에 관한 출판인의 의식 조사 /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1992
- 남윤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규제에 관한 연구 : 광고규제 수단을 중심으로 / 연세대 대학원 1992
- 송민호, 전쟁보도의 언론통제에 관한 이원적 연구 : Gulf전 보도를 중심으로 / 중앙대 대학원 1992
- 안경아, 한국의 언론윤리에 관한 이론적 소고 : 언론윤리강령 분석과 언론인의 직업윤리 / 이화여대 대학원 1992
- 이승대, 우리 나라 광고윤리에 관한 연구 /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1992
- 정의영, 우리 나라 광고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2
- 조경진, 정부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언론

통제의 요인을 중심으로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2

- 김운래, 한국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의 통제유형에 관한 연구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3
- 정시돈,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외설물 규제에 관한 연구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3
- 김재철, 방송심의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 심의위원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1994
- 홍승철, 언론검열제도에 관한 연구 / 중앙대 대학원 1994
- 김상태,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언론통제와 나찌정권 언론통제와의 비교 고찰 : 정권 획득과정과 언론통제의 방법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1995
- 이영재, 한국 언론인의 언론사 내적통제 인식에 관한 연구 / 고려대 언론대학원 1995
- 이용일, 한국언론에 대한 정부통제에 관한 연구 : 제5,6공화국을 중심으로 /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5
- 이현구, 정부의 언론통제와 신문산업의 변화 : 1970~1980년대(제4~5공화국)를 중심으로 / 서강대 언론대학원 1995
- 정연갑, 국민의 대정부 이미지와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연구 : 평시와 위기상황시 언론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중심으로 / 연세대 대학원 1996
- 조윤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본 광고규제 연구 /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6
- 이승훈, 공익성 제고를 위한 방송심의의 발전 방안 연구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7
- 임병환, 전시 언론통제와 여론형성에 관한 연구 : Gulf 전시 미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전남대 행정대학원 1997
- 민진기, 표현의 자유와 규제 : 외설물 규제를 중심으로 / 고려대 대학원 1998
- 이강렬, 김영삼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연구 /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8
- 이석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 미합중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건국대 대학원 1998
- 장용진, 표현의 자유와 사전심의제도 : 청소년 보호법제를 중심으로 / 중앙대 대학원 1998
- 조성은, 통신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고찰 : 한국의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대 대학원 1998
- 김상수, 탐사보도 제작과정과 외적 통제에 관한 연구 : MBC <시사메거진 2580>의 분석을 중심으로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1999
- 박형규, 우리 나라 광고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 : 광고의

역기능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1999

· 이인희,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등급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9

9) 저작권(39)

· 김태수, TV-CM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중앙대 대학원 1990

· 이정상, 국제 저작권 조약 가입과 국내 출판의 현황 연구 / 한양대 행정대학원 1990

· 윤유정, 미국에서의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연세대 대학원 1991

· 이은주, 영상저작물에 있어서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1991

· 심윤정, 방송관련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이화여대 대학원 1992

· 남미령, 출판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사례 연구 / 동국대 정보대학원 1993

· 이민구,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서강대 대학원 1993

· 최석, 저작권 침해와 민사상구제에 관한 고찰 / 원광대 대학원 1993

· 최영일, 방송저작권의 유선방송 적용에 관한 연구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3

· 김기태, 저작권 보호와 국내 출판물 유통에 관한 연구 /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1994

· 박재영,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 한국의 광고사진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중앙대 대학원 1994

· 이경직, UR 지적재산권 협정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 베른협약가입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대책을 중심으로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1994

· 이소영, 광고에 관한 저작권 문제 / 이화여대 대학원 1994

· 현종근, 저작권의 침해와 그 민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 강원대 대학원 1994

· 김귀남, 무용저작권에 관한 연구 / 청주대 대학원 1995

· 원광재,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모방사례를 중심으로 / 중앙대 대학원 1995

· 이병훈,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 고려대 언론대학원 1995

· 정진현, 복합매체 발달과 저작권의 기능 : 음반산업을 중

심으로 / 단국대 경영대학원 1995

· 김봉철, 광고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연구 : 저작권 · 상표권 · 초상권을 중심으로 / 한양대 행정대학원 1996

· 김정욱,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수용에 관한 연구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6

· 김현진, 광고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제한에 관한 연구 / 연세대 대학원 1996

· 오기석,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범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국내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고려대 대학원 1996

· 이세영, 멀티미디어 시대 저작물 이용형태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 일본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 서강대 언론대학원 1996

· 김현경, 멀티미디어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저작권집권에 관한 관례를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1997

· 김호, 저작권의 제 문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중국의 저작권법과 국제상 저작권법의 비교를 통한 연구 / 고려대 대학원 1997

· 이상혁,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에 관한 고찰 / 인하대 대학원 1997

· 최석만, 통신망에 있어서 저작권의 문제와 대응방안 /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1997

· 한해경,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 국내 어문저작물 저작자를 중심으로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7

· 황진, 직접위성방송관련 저작권 보호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 : 'TV방영'을 중심으로 / 고려대 대학원 1997

· 김성욱, 한국의 저작권 위탁관리에 대한 연구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8

· 박성준, 저작권 및 저작권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 고려대 대학원 1998

· 안상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대 대학원 1998

· 이원범, Parody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아주대 대학원 1998

· 이은숙, 디지털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전주대 대학원 1998

· 전승철,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의 법적 문제 / 한국해양대 대학원 1998

· 허선,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 서강대 언론대학원 1998

· 김주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 / 충

남대 대학원 1999

- 이정세, 피고용자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신문사진저작물을 중심으로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1999
- 조정석, 디지털 칼라이미지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은닉(워터마크) 알고리즘 연구 / 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대학원 1999

10) 정보공개(22)

- 강영균, 알 권리에 관한 연구 : 정보공개청구권과 자기정보 통제권을 중심으로 / 서울대 대학원 1990
- 이정환, 한국행정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그 제도의 도입방향을 중심으로 / 원광대 대학원 1990
- 주덕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숭실대 대학원 1990
- 주복원,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0
- 김국현,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대학원 1991
- 양진철, 행정정보 공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건국대 대학원 1993
- 황창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연구 :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3
- 구인호, 알 권리와 행정정보공개제도 / 경북대 대학원 1994
- 도석구,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경원대 대학원 1994
- 박용진,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지방언론의 역할 / 강원

대 경영행정대학원 1994

- 심차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입법예고된 <정보공개법(안)>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연세대 관리과학대학원 1996
- 장세룡, 국방행정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4
- 최창석, 한국적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한양대 행정대학원 1994
- 곽언영,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청주시를 중심으로 / 청주대 행정대학원 1995
- 박수현,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국민대 교육대학원 1995
- 황규홍,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부산대 행정대학원 1995
- 이주현,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재정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경원대 행정대학원 1996
- 강부미,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고찰 / 충남대 대학원 1997
- 김동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연구 / 울산대 교육대학원 1997
- 허인정, 정보공개와 기업비밀의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한국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서울대 대학원 1997
- 권현영,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연구 : 정보사회의 전자적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 연세대 대학원 1998
- 김현희,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전자적인 정보공개방안을 중심으로 / 전남대 행정대학원 1998 □

한국언론과 보도유보(엠바고)

김 해 도

중재위원

I. 서론

모든 뉴스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뉴스 보도의 속성인 신속성, 정확성, 진실성, 공정성, 공익성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기자들에게 항상 말썽의 소지를 안겨 준다. 엠바고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제도가 뉴스 보도의 이 같은 속성과 배치되는 장애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엠바고는 취재원(정보 제공자)이 보도 자료를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이나 기일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말로 '시한부 보도 유보'라고 쓰는 엠바고

는 해양국이었던 스페인의 embargar에서 나온 말로 자기 영토 내에 정박 중인 상선의 출항 금지나 화물 적체 금지를 뜻한다. 즉 전쟁 상태에 있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하나를 뜻하는 통상 용어였다.

엠바고가 언제부터 언론에 원용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체포(arrest), 제지(restrain), 억류(detain) 등의 뜻을 가진 원어가 시사하듯 강제성과 한계성을 지닌 부정적 용어다. 태생부터 억제적인 뜻을 지닌 제도를 완강한 언론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제도가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 보도의 속성인 정확성, 진실성,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는 종종 현실을 앞설 때가 있다. 전쟁 중에는 특히 심하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경우 D데이, H아워까지 기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 대작전은 작전 개시 후 6분이 지나 보도됐다. 그전에 보도했으면 특종이었다. 그런데도 앞서 보도하지 않은 것은 만에 하나 작전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세계적인 오보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기



- 서울대 문리대 졸
- 한국일보 사회부장, 외신부장, 논설위원
- 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역임
- 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밀 누설로 인한 작전 실패가 가져올 피해가 인류에 끼칠 악영향을 염두에 둔 언론의 공익성 때문이다. 외교 협정의 체결, 대통령의 연두 교서, 의회에서의 의회 질문 등 엠바고가 불가피한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이처럼 엠바고는 부정적이면서 한편으로 불가피한 제도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II. 엠바고의 도입과 적용

한국에서 엠바고란 용어가 쓰인 것은 60년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자유당 시절에는 엠바고란 용어는 쓰지 않고 “확정될 때까지”, “행사가 시작될 때” 등의 조건을 붙여 취재 기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거나 뉴스 소스를 주었다고 한다. 제도라기보다 취재원과 취재기자 사이의 신사협정이었다. 당시 기자들은 취재원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대부분이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 어기면 출입기자뿐 아니라 취재원에게도 따돌림을 받아 취재에 어려움을 겪는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이다.

50년대 미국의 잉여 물자 공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농림부에 출입하던 A기자는 경쟁사의 B기자와 함께 농림부 고위 인사로부터 잉여 물자 공여가 곧 확정 성사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확정되기 전 보도되면 문제가 생기니 확정된 후 해설 기사와 함께 자세히 써달라는 부탁이었다. 편집국에 돌아온 A기자는, 그날 편집국장이 톱기사거리가 없어 찢찢대는 것을 보고 망설이다가 이 사실을 기사화했다. 특종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농림부 당국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편집국장은 A기자를 불러 칭찬 대신 꾸중을 했다. 취재원과의 약속, 동료끼리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60년대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은 ‘검열’과 ‘보도협조’ 요청이 되풀이되는 황폐한 언론 환경 속에 허덕여야 했다. 군사당국자들은 이제까지의 주먹구구식 언론대책에서 탈피하여 미국식 보도 원칙을 도입했다.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비보

도), 백그라운드 브리핑(background briefing, 배경 설명), 엠바고 등 미국 저널리즘이 내세운 취재원과 언론 매체간의 3대 원칙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언론 탄압의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교묘히 언론을 조정했다. 통제가 심해지자 언론 매체들은 통제의 틀을 부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그 중에서도 백그라운드 브리핑과 엠바고는 자주 허물어졌고 그 결과 취재원과 의 대결이 아닌 언론사끼리의 대결이 잦아지게 됐다.

엠바고의 해제 시간은 보도 매체의 제작 시간, 뉴스 시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최근의 문화일보 사태가 보여주듯 취재원과의 관계없이 언론사끼리 엠바고가 문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중앙종합일간지들이 조건과 석간으로 나뉘어 취재 경쟁을 벌였던 70~80년대에는 조건대 석간이 엠바고 해제 시점(lifted time)을 놓고 마찰이 잦았다. 원래 조건과 석간으로 나뉘어 조건은 조건끼리, 석간은 석간끼리 취재 경쟁을 벌이던 기자들이 엠바고 기사가 나오면 합종연횡을 한다. 해제 시점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힘을 합하고 엠바고 내용이 큰 것일 때는 기사 키워주기, 지면 확대 등의 미끼를 던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취재원은 엠바고 기사 자료를 배포할 때 해제 시점을 원래의 취지에 맞추기보다 어느 쪽이 더 홍보 효과가 있는지를 저울질해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통상 보도 자료의 해제 시점이 그날 정오까지면 석간용이고, 석간 마감 이 지난 오후 5시 이후면 다음날 조건용이다. 그러나 방송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제 시점이 또 다른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오후 5시에 엠바고가 풀리면 조건의 경우 뉴스가 구문이 돼버린다. 오전 6시에 풀리면 석간의 경우 역시 뉴스가 구문이 돼버린다. 신문 등의 불만이 커지자 대부분 취재원이 석간을 위해서는 주로 오전 11시~정오까지로 엠바고를 거는 것이 관례가 됐다. 그러나 시간을 다투는 보도 경쟁은 어떻게든 엠바고의 벽을 뚫으려는 기자들의 두뇌 싸움을 유발하기도 했다.

70년대 어느 조건 신문은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엠바고가 걸린 뉴스를 전달 오후에 마감한 지방판(영남, 호남판) 조건에 게재하는 모험을 했다. 어차피 지방까지 발송, 배달되는 시간이 다음날 6시이니 엠바고를 깨는 것이 아니라는 편집자의 해석이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가관되는 신문에는 물론 엠바고 기사를 실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조건 신문사가 지방으로 발송되는 신문을 입수, 취재원인 정부 모 부처에 항의했다. 엠바고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정부 부처는 해당 신문에 발송 중지를 요구했고 신문사는 내일 6시까지 외부에 반출되지 않으면 엠바고를 깨는 것이 아니라고 완강히 버텼다. 이 사건은 결국 당시 막강했던 중앙정보부가 나서서 지방 발송 분을 모두 회수하도록 하여 수습되었으나 해당 편집자, 기자 등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등 후유증을 낳았다.

휴전선 땅굴 발견 사건, 신상옥 부부의 극적인 비엔나 탈출 사건 등 큰 사건에 엠바고가 결정됐을 때마다 이런 류의 엠바고 벽 뚫기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언론은 막강한 정부 당국의 손길에 상처를 입어야만 했다. 언론이 엠바고를 두고 자기 분열을 일으키면 취재원과의 대결에서 질 수밖에 없고 엠바고는 계속 취재원이 갈자루를 쥐는 불공평한 형태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최근 문화일보 사태 이후 많은 언론학자와 현업 언론인, 언론기관, 언론단체 등이 엠바고의 문제점을 제기 했다. 취재 현업에서 떠난 지 오래인 필자로서는 먼저 이들이 제시한 최근의 엠바고 사례와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나름대로 종합 정리해 보았다. 일일이 집필자나 게재 매체를 밝히지 않은 점 양해를 구한다.

Ⅲ. 엠바고의 유형과 기능

1. 엠바고의 유형

이민용 교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는 엠바고의 유형을 다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가. 보충 취재용 엠바고

뉴스 가치가 매우 높은 발표 기사이면서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취재기자들과 취재원의 합의 아래 이루어지는 엠바고다. 객관적인 보충 취재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 충실한 보도를 위해 취재기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취재원의 입장에서도 발표 내용의 왜곡과 엉뚱한 해석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진다. 정부 예산안 발표, 학술기관 등의 정책 연구보고서 발표 등이 대표적인 보충 취재용 엠바고의 범주에 속한다. 리드 타임(lead time, 엠바고가 풀리기까지의 시간)은 대체로 2~3일이며 길어야 1주일을 넘지 않는다.

나. 조건부 엠바고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거는 엠바고다. 그 사건 발생 이후에 기사화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보도 자료를 미리 제공한다. 의원들이 자신의 대정부 질문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든지,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이 확정될 때에 대비해 대통령의 축하 전문을 사전에 배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국가 안위나 공익과 관련된 사건, 또는 인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인질범과의 교섭 등)이 진행 중일 때,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형태이다.

라. 관례적 엠바고

주로 외교 관례를 존중하여 재외 공관장의 인사 이동에 관한 기사는 미리 취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agreement)'을 부여할 때까지 보도를 보류하거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협정 또는 회담 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도 유보하는 경우 등이다.

2. 엠바고와 알 권리

엠바고는 ‘공익을 위한 신사협정’으로 불릴 만큼 원칙적으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요구된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기자실과 언론사들은 “출입처의 엠바고 요구를 꼭 필요한 경우만 받아들여 알 권리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가끔은 출입처와 기자단의 공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 없이 수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엠바고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

엠바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측면이 많다. 언론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국내외의 중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독자에게 전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사안이 일정 기간 보도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기자들과 취재원 외의 국민은 잠정적으로 ‘알 권리’를 유보 당하는 꼴이 된다. 이 때문에 기자실의 엠바고 회의에서는 “곧바로 보도하는 것이 공익이냐, 나중에 보도하는 것이 공익이냐”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3. 엠바고의 순기능

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의미 있게 전달

정부 보고서나 백서 등을 발표할 때는 2~3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리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엠바고는 일정한 정보 처리 기간을 줌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고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며 수준 높은 보도를 돕는 기능을 한다.

나. 공공이익 도모

국가 안보나 외교를 위한 기밀 사항의 보도 자체, 어느 기업이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몰려 있을 때 당분간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의 엠바고 등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다. 언론사간의 과열 경쟁 방지

엠바고는 언론사간의 변칙적이고 과도한 취재 경쟁을 막는 역할도 담당한다.

◇ 엠바고의 순기능의 예—대학입시보도강령, 어린이 유괴 사건

97년 11월 10일, 교육부 출입기자들은 “과열 입시 경쟁으로 훼손된 고교 교육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 기자들간의 ‘대학입시 보도강령’을 제정했다. 97년에는 이 강령이 잘 지켜짐으로써 일류대 중심의 입시 보도, 이에 따른 대학 서열화 관행이 사라졌다(그러나 다음 해인 98년에는 안타깝게도 한 석간신문에 의해 이 강령이 깨어져 버렸으며 뒤를 이어 각 언론사가 앞다투어 강령을 깨뜨리고 입시 관련 보도를 함으로써 과열 입시 보도경쟁은 단 1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90년 6월 20일 대구 용산 국민학교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구 시경 출입 기자단은 54시간 동안 경찰의 비밀 수사에 협조해 엠바고를 지켰고 결국 범인은 54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4. 엠바고의 역기능

가. 정보의 불평등 초래

언론이 그 원래의 기능인 정보 전달 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의 굴절 현상이 나타나며, 그 대표적인 예가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기자실에서 쉽게 행해지는 엠바고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 굴절 현상은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정보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불평등 이상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가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나. 관급 기사의 확대 재생산

우리 나라 각 신문이나 방송 보도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관급 기사의 배급 처가 되는 기자실에서 일제히 자료를 받아 기사를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자단 운영은 기자들이 관료 조직의 홍보 자료를 능률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당국이 의도한 대로 이용되어 언론 조작의 시스템으로 작용할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발표 저널리즘’은 바로 이러한 관급 기사가 가지고 있는 객관보도의 함정이라 하겠다.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의 의도대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결국 각 출입처 기자실은 관료 조직의 홍보 기구의 한 형태가 되는 것과 다름없으며 언론은 규격화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다. 국민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

정부뿐 아니라 각 기업들도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발표, 혹은 지연시킴으로써 자신들이 노리고자 하는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 한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조금 지연되거나 조작된 정보로 인해 막대한 자본을 한 순간에 날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증금사의 영업 정지나 특정 기업의 외자 유치, 기술 개발 등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보의 진위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그 결과를 조속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라. 보도 내용의 획일화

관급 기사의 남발은 취재 경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관료 조직의 기자실에서 얻는 정보는 대부분 당국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므로 보도 내용의 획일화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언론사끼리의 경쟁을 억제하고 비판 의지를 약화시키며, 문제 의식을 갖고 독자에 접근하려는 언론의 의지를 꺾어 버리기도 한다.

◇ 엠바고의 역기능의 예 - 세종증권 사건

세종증권 김형진 회장은 대형 투신사의 채권부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채권을 매입토록 한 사실

이 적발되어 지난 8월 5일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회장 사건을 본격 수사하면서 수사상 필요하다며 그보다 20일 전인 7월 15일에 이미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요청했다.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된 후 구속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20일간 증권가에는 김 회장 구속설이 공공연히 떠돌아다녔으나 엠바고가 지켜졌기 때문에 이 기간 중 김 회장에 대한 수사 뉴스는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엠바고가 설정된 7월 15일, 1만원 선이던 세종증권 주가는 실제 구속이 집행된 8월 5일에는 7,000원으로 30%나 하락했다. 엠바고 설정 직후부터 김 회장 구속설을 접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세종증권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여, 20일간 전체 세종증권 주식의 3분의 2를 팔아치운 것이다. 세종증권은 주식 사이버 거래에서 경쟁력을 높여 소형 증권사이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업체이다. 따라서 김 회장 구속이라는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일반 투자자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내다 파는 세종증권 주식을 열심히 사주며 손실을 떠안은 셈이 되었다. 기자들 관행에 따라 무심히 받아들인 엠바고가 정보의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례라 할 수 있다.

5. 엠바고에 담길 수 있는 정보제공자의 숨은 의도

행정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엠바고로 정보를 통제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엠바고에는 다음과 같은 숨은 의도들이 담길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 보도 효과의 극대화 및 언론 플레이

취재원들은 어떤 내용을 어느 시점에 발표했을 때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문제의 내용을 언제 발표하는 게 가장 작게 보도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엠바고를 걸 수 있다. 이 경우 홍보 효과의 극대화가 정보 제공자들의 또 다른 목표가 된다.

나. 언론 및 정보 통제

취재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기에 자료를 배포한다. 자료를 배포하는 시점에서 그들은 과열 경쟁 방지 및 정확한 보도를 기한다는 이유로 일괄 배포하기도 하지만, 특정 언론사에만 배포해 여론의 반응을 살피기도 하고 다른 언론사의 정보 통제 효과를 동시에 노리기도 한다. 엠바고가 '정보 통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다.

다. 여론 조종의 가능성

중요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위해 어느 특정 시점에 언론이나 공중에 터뜨리는 경우도 자주 있다. 과거의 간첩단 사건 발표와 같은 기사가 항상 선거 전후에 발표된 사례는 안보 논리를 집권층의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 한 심정적 근거가 된다.

라. 취재원들간의 담합

1차적인 취재원이 정부의 각 기관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수집·관리·보도하는 언론사도 정보주권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차적 취재원에 해당된다. 엠바고는 이들간의 담합에 의해서도 자주 발생하며 특히 우리 언론의 출입기자실 중심 취재 형태는 각 기자단의 집단 이기주의를 낳기도 한다.

마. 업무의 편의성 추구

정부 기관이나 행정 관청에서는 기사거리도 못되는 평범한 홍보 자료조차 엠바고를 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엠바고는 상당수가 도중에 어기고 보도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사안들로 전형적인 행정 관청의 편의주의를 보여준다.

IV. 현행 엠바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엠바고의 문제점

가. 엠바고 남발 및 일방적 적용

취재원의 엠바고 남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 예로 97년 9월 1일 보건복지부는 무려 40개 사안에 엠바고를 달아 출입 기자단에 공개했다. 이처럼 취재원의 편의에 따라 불필요하게 걸리는 엠바고가 수없이 많으며 기자들도 이러한 엠바고를 아무런 비판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무슨 무슨 관련 사항은 모두 엠바고'라는 싹쓸이식 엠바고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취재원이 기자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엠바고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잦다.

나. 정확한 기준 및 원칙의 결여

엠바고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취재원이나 취재기자들의 편의에 따라 엠바고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 엠바고의 결정 주체가 기자 개인인지 또는 해당 부서의 데스크인지 불분명한 것이 취재 현실이다. 형식상으로는 데스크가 최종 결정 주체라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일선 기자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 언론사 윤리 강령을 살펴봐도 이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는 편이다. 있다 하더라도 겨우 '엠바고는 신중 결정한다(동아일보 기자윤리강령)'는 차원에 머무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올 8월에 있었던 '문화일보'의 엠바고에 대한 '원칙' 선언은 앞으로의 엠바고 논쟁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별함 참조).

한편 엠바고의 내용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기자들간의 해석 차이를 유발, 어느 선까지 보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기자실 출입 기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모든 기자들의 협의에 의한 엠바고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 기자실 당번이나 간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 엠바고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뒤늦게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달리, 일본의 경우 이미 47년에 신문협회 주도로 기자실 운영 내규가 마련되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유괴 사건 보도

의 구체적 지침 등이 세밀히 제시되어 있어 기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취재, 보도에 임할 수 있다.

다. 조·석간 기준 적용

정보 사이클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의 오랜 관행으로 조·석간 기준의 엠바고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나 기관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일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자료를 제공하는 비합리적인 관습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당국은 해외 상주 한국 특파원들에게까지 국내의 조·석간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외신에게는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결국 국내 기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라. 너무 긴 리드 타임

우리 언론에는 리드 타임이 지나치게 긴 엠바고가 많다. 리드 타임이 길어질 경우의 문제점은 첫째, 정보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 보도되기 전이라도 자료를 받은 기자나 자료를 작성한 당국자에 의해 정보가 흘러지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증권가 루머의 진원이 될 수 있다. 지나치게 긴 리드 타임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정보 공급자의 정보 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리드 타임을 길게 해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면 설령 다른 기자가 그 사이 또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취재하더라도 개별적인 보도를 못해 말썽이 된다.

마. 엠바고 위반에 대한 제재의 자의성

엠바고를 깬 경우 기자실 출입 정지나 자료 제공 봉쇄 등의 징계가 대부분 시한부로 가해진다. 이러한 처벌은 감정적이고 ‘집단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 제재의 강도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명문화된 원칙이 없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엠바고를 깬 때의 징계는 피해를 당한 정보 제공자와 엠바고를 깬 기자간의 쌍무처리적 성격이 강하다.

2. 엠바고 개선 방향

가. ‘모든 정보의 완전 공개’ 원칙 준수

지나친 엠바고 의존 경향을 개선하려는 취재원 측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가급적 불필요한 엠바고 요청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와 언론의 유착 관계 해소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해도 오픈 디레코드, 엠바고 등을 통한 정부의 간접 통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줄기찬 투쟁이 필요하다.

다. 타성에 젖은 기자들의 자각

취재기자들은 과연 이 정보가 엠바고를 결만한 것인가에서부터 엠바고를 깨고 보도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면 안 될 것이다.

라. 출입 기자 제도의 재고

출입 기자단체는 관료 조직을 홍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담합, 보도 내용의 획일화와 같은 관행 때문에 새로운 언론 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어 한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자실 운영을 최소화시키고 기자들이 문제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마. 엠바고 적용 기준의 투명성 필요

취재원이 요청하는 엠바고를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요구해야 하며 출입처별 특성을 감안해 투명한 엠바고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바. 일반 기사와 경제·금융 관련 기사 구분 적용

기존 엠바고를 한꺼번에 무시할 수 없으므로 대외적 파급 효과가 큰 일부 민감한 경제·금융 관련 기사부터 먼저 엠바고를 개선해야 한다.

사. 조·석간 기준 엠바고 철폐

신문 위주로 이루어지는 엠바고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전파 매체의 영향이 커지고 인터넷 뉴스 등이 보급됨에 따라 시간 개념으로 엠바고 기준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일부 대기업은 이미 시간 개념 엠바고를 실행하고 있다.

아. 리드 타임 단축

작업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되 리드 타임은 되도록 짧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한 외신들은 특히 파급 효과가 빠르고 지대한 경제·금융 기사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전자신문이 갈수록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리얼 타임 보도를 위해서는 엠바고의 리드 타임 최소화가 필요한 것이다.

V. 엠바고는 왜 깨지는가

엠바고는 언론 입장에서 보면 필요악이다. 태생에서부터 제한적이기 때문에 엠바고가 비합리적인 경우 깰 수밖에 없다. 엠바고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엠바고의 목적·시기·내용과 취재원 대 취재기자의 관계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 문화일보 사태-불공평에 반기를 든 사례

‘엠바고 관행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던 문화일보 사태는 엠바고가 깨지는 이유 중 가장 자주 거론되는 ‘불공평성’에서 기인했다. 문화일보 측에 의하면 서울의 종합일간신문으로서는 유일한 석간인 문화일보는 조간신문 위주의 보도 관행 때문에 평소 일선기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12건 모두를 조간용 시간에 맞춰 엠바고를 걸자 사내에서 석간신문이 생존할 최소한의 기반을 위협하는 사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부패방지법의 경우 정부 여당이 8월 17일 상오에 당정협의를 갖고 확정할 예정인데도 18일

자 조간용으로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 총리실 출입기자를 통해 ‘부패방지법은 17일자 석간보도용이 되어야 한다’는 회사 입장을 전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17일자 석간에 보도해 버렸다. 이 사태로 총리실 기자실에서는 회의를 갖고 문화일보 출입기자의 기자실 출입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얼마 뒤 징계결정이 해제됨). 사흘 뒤(8월 20일)에는 ‘한미일 정상 첫 정상 회담’ 기사를 보도했다가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은 관행상 엠바고 사항인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 출입기자도 춘추관 3개월 출입 중지 결정을 받았다.

8월 25일 문화일보 기자들은 기자 총회를 열고 “국익이나 공익과 관계없이 남발·오용되고 있는 언론계의 엠바고 관행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자”고 결의하고 “정부 부처의 홍보 논리와 행정편의, 출입기자단의 편의를 위해 엠바고가 남용되고 있다”며 기자의 취재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가장 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낮 12시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취재 보도할 것 ▲행정 편의에 따른 엠바고 거부 ▲기자단 전체의 동의나 사전고지 없이 이루어지는 엠바고 거부 등을 선언했다.

엠바고는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공평해야 하고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화일보 사태는 하나라도 반대하면 엠바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된다.

◇ 부부간첩단 사건 - 출입기자단이 피해를 당한 사례

지난 97년 7월 서울지검 출입기자들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미라지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의 부유층 인사들이 거액의 도박을 한 사실을 알아냈다. 호텔 카지노의 한국인 고객 담당 로라 최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 외상 장부를 갖고 입국했다가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검 외사부 관계자가 “관련

인사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 언론에 보도될 경우 이들이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상의 협조를 요청, 엠바고를 걸었다. 당시 기자들은 엠바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보도를 유보했다. 그러나 ‘시사저널’ 기자가 다른 기사를 취재하다 이 사건 수사를 알게 돼 8월 20일 ‘시사저널’에 특종 보도했다. ‘시사저널’ 기자는 출입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엠바고와 무관했고 따라서 검찰 출입 기자들만 멍하니 당한 꼴이 되었다.

‘시사저널’지는 같은 해 11월에도 부부간첩단 사건을 특종 보도했다. 이 사건 역시 처음 신고한 사람이 기자 회견까지 한 사건인데 안기부의 엠바고 요청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 간첩 사건은 공작 차원에서 비밀이 요청되는 사례가 많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언론에서도 변함없이 엠바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주일 후 신고에 의해 부부간첩단이 체포된 사실을 안 ‘시사저널’ 기자가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시사저널’ 기자는 한달 뒤에는 부부간첩 중 여자 간첩이 사망했다는 첩보와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 등이들과 접신한 고정간첩단이 안기부에 체포되었다는 사실까지 특종 보도, 끝까지 엠바고를 지킨 검찰 출입 기자단의 체면을 여지없이 깎아 버렸다.

‘시사저널’의 연이은 특종 보도는 출입기자단을 중심으로 한 엠바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다. 해당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자가 엠바고 사항을 취재 보도했을 때 기자단은 속수무책으로 낙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경부 출입기자단이 엠바고한 기사를 검찰 출입기자가 쓸 경우도 있고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엠바고한 기사를 외무부 출입기자가 쓰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같은 회사 기자가 엠바고 정보를 관련 출입처 기자에게 주어 특종 보도하는 양체 사례도 있다.

국내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에 묶여 있을 때 외국 기자들이 특종 보도하는 경우도 출입기자단이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함정이다. 해외 특파원이 해외에서 취재, 기사를

송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 ‘국군 전력 개선 사업’ 보도 - 기자들의 무관심이 문제된 사례

얼마 전 육군 병력 수를 줄이는 대신 무기 등 장비를 현대화하는 쪽으로 군 전력 구성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국군 전력 개선 사업’을 보도한 기자 5명이 엠바고를 어겼다는 이유로 국방부 기자단에서 징계를 당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엠바고에 부쳐져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보도한 기자는 물론 보도를 하지 않은 기자들도 모두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가 5년 전에 ‘군 전력 개선 사업 내용은 모두 엠바고’라고 포괄적이고 무기한적으로 엠바고를 걸었던 것인데 오프 더 레코드나 마찬가지로 이런 엠바고를 애초에 받아들였던 기자들이 잘못이었다.

이처럼 그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엠바고를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출입처가 많다. 모 경제 부처의 홍보 업무에 관련했던 전직 관료는 “게으르고 실력이 모자라는 기자일수록 엠바고를 선호한다”면서 출입처 실정을 꿰뚫고 있고 부지런한 기자일수록 애매한 엠바고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취재원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훨씬 상대하기 편하지만 홍보 요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무시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는 두려우면서도 존경스럽다고 했다.

기자들이 엠바고에 대범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저널’의 특종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부부간첩 사건은 애초에 신고자가 기자 회견까지 했던 사건이었다. 엠바고가 무기한으로 걸렸다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추적했어야 했다. 1주일만 추적했더라도 부부간첩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엠바고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엠바고는 오프 더 레코드와 다르다. 기한이 있는 것도 해제 사유가 있는지 꾸준히 살펴야 할 터인데 무기한적 엠바고를 받아들이고 그마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취재기자의 직무유기가 된

다.

뉴스란 취재 소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엠바고가 엉뚱하게 깨지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흔히 있다. 91년 걸프 전쟁 때 뉴욕타임즈의 말콤 브라운 기자는 전장에 1개월 여 머물면서 B-2 스텔스 전폭기의 성공적인 폭격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으나 스텔스 전폭대 지휘관이 이를 알았고 기사 송고를 막았다. “핵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보도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시 검열 규칙을 들어 일방적 엠바고를 건 것이다. 그러나 브라운 기자는 얼마 후 당시 AFP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상원의원의 한 보좌관으로부터 이 공습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 자기를 따돌리고 특종 보도한 사실을 알아냈다. 물론 전시였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풀리처상까지 받은 브라운 기자가 사지에서 얻은 특종을 빼앗겼다는 사실은 엠바고의 함정이 취재자에게 있어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VI. 결론

결론은 하나다. 깨질 수밖에 없는 엠바고는 엠바고가 아니다. 따라서 엠바고가 깨졌다면 깨진 사실에 연연해하기보다 왜 엠바고가 깨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엠바고는 어차피 발동하는 쪽이 득을 보게 된다. ‘공익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 ‘정확을 기한다’는 명분을 세우지만 대부분의 취재원은 그 속(보도자료 내용이나 기사화 시기, 보도의 크기 등)에 그들의 의도를 교묘히 담아낼 수 있다. 이 때 취재 기자는 엠바고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1대 1의 관계에서 1대 0.9의 관계로 뒤쳐지게 된다. 뉴스는 생성 즉시, 보도될 때 뉴스의 가치를 지닌다. 엠바고는 이 뉴스의 싱싱한 숨을 죽여 놓는다. 이 때 기자는 1대 0.8의 관계로 또 한발 뒤쳐지게 된다. 결국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모르는 사이 왜곡 현상이 초래돼 정보의 최종 수

혜자인 독자나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이나 취재기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해답은 간단하다. 뉴스는 본질적으로 제한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엠바고가 불가피하다 해도 취재원이나 취재기자가 “뉴스는 어느 누구도(의도적이든 불가피한 경우이든)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심, 엠바고를 내리거나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엠바고는 깨지지 않을 것이며, 최종 수혜자(독자·시청자)는 그나마 뉴스다운 뉴스를 접하게 될 것이다.

현행 엠바고 개선을 위한 준칙

문화일보 기자 일동은 왜곡된 엠바고 문화 개선을 위한 8월 25일 결의를 존중하고 아래와 같이 엠바고 준칙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한다.

- ①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엠바고는 수용하지 않는다.
- ② 시한이 불명확한 엠바고는 수용치 않는다.
- ③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엠바고는 수용치 않는다.
- ④ 대통령 경호 문제에 따른 대통령 일정의 엠바고는 그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고, 기자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전제될 때 한해 수용한다.
- ⑤ 아그레망이 필요한 외교부 인사, 양국 동시 발표 등 외교적 관행과 관련된 내용의 엠바고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고 기자단의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질 때 한해 수용한다.
- ⑥ 국가안보나 수사상 필요에 의한 엠바고도 사전 충분한 설명, 기자단의 전원합의, 상식적으로 길지 않게 특정된 기간 등이 전제될 때에 한해 수용한다.
- ⑦ 월별 실업률, 소비자 물가 등 경제부처의 통계자료나 사회부처의 주간계획 등의 보도시점은 각 언론사의 판단을 존중한다.
- ⑧ 신문과 방송,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엠바고를 파기하고 보도할 경우 그 엠바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⑨ 엠바고 파기는 보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⑩ 엠바고 룰은 기자단의 전원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집단이기주의에 입각한 자의적 엠바고 설정에는 분명한 어조로 ‘거부의사’를 천명한다.

1999년 9월 2일

한국기자협회 문화일보 지회
문화일보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

언론의 진실보도와 오보

한국 언론사(言論史)를 이야기 할 때 필화사건과 오보로 많은 피해를 본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언론사에 얼룩진 필화사건은 언론인의 오보로 빚어진 사건도 없지 않으나 절대적 권력층의 비위를 거슬러 일어났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위 독재 정권은 언론을 눈에 가시처럼 느꼈기 때문에 언론을 압박하여 권력의 시녀로 만들곤 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초의 필화사건은 신라 51대 진성여왕때 왕의 악정을 비방하는 다라니은어서(陀羅尼隱語書)가 길가에 널려져 있었던 사건으로 이 은어서는 온 나라 민심을 사로 잡았다. 이 은어서는 당시 신문구실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본다.

진성여왕은 그의 권력을 정사(政事)보다 본능적 욕구 충족에 우선 시켰었다. 여왕은 각간(角干)벼슬의 위홍의 집에 자주 잠행하여 사통(私通)을 자행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위홍은 왕의 유모인 부호부인의 남편이었다. 부호부인은 이를 미끼로 전권을 휘둘렀으므로 나라안은 도적이 일고 난세로 접어들었다. 여왕 2년에 정부(情夫) 위홍이 죽자 여왕은 건장한 미소년 세 명을 번갈아 끌어 들이며 음행을 자행하였고 여왕의 소년 정부들을 국정의 요직에 기용했기 때문에 나라꼴은 말이 아니었다. 이 와중에 은어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 은어서에는 다라니경의 문구투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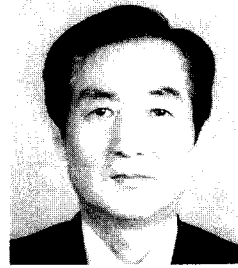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干干三阿干臈 伊娑婆訶 (나라를 망치는 자는 여왕과 두명의 소관과 세명의 아간 그리고 부호부인이다.)

이 악정규탄의 언론행위를 두고 여왕은 화가 났다. 당시 소문난 은자(隱者)로서 저항적이었던 대야주(大耶州)의 거인이 한 소행으로 숙단하고 그를 잡아 가두게 했다. 한국사상 최초의 필화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언론은 ‘언론장악’의혹 문건관련 기사로 온통 얼룩져 있다.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치 못한 채 상대방에 대한 공방만이 신문지상과 방송보도에 난무하고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고 싶다. 또한 ‘맹물 전투기 사건’도 신문지상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 무엇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정말로 맹물 전투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다. 그뿐인가. 얼마 전에는 ‘옷 로비 의혹사건’으로 나라안이 온통 벌집을 쑤서놓은 듯 법석을 떨었다. 검찰 수사도 했고 국회 청문회도 열었으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급기야는 특별검사제를 도입, 다시 원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 채 쌍방의 주장만을 장황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물론 언론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끄집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이 무엇을 알고싶어 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여 핵심을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언론문건’사건은 쌍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보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기자의 사명을 다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사실을 명확히 밝혀 보도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물론 한국의 언론환경이 미국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를 계기로 한국언

“진실보도만이 언론의 정도이며 언론인의 사명이기에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 병 진

강원중재부 중재위원 · 전 강원일보 논설위원

론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조선시대 한학 사대가(四大家) 가운데 한사람인 상촌(象村) 신희의 시조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넷가에 서 있는 백로야 무슨 일로 서 있느냐 / 사심 없이 노니는 저 고기를 엿보아서 무얼 하려느냐 /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다같이 물에 살고 있는 처지이니 / 아예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땠겠는가.

이 시조는 당시 고질적인 당쟁의 폐해로 어지러워진 사회상을 꾸짖는 노래다. 한국의 정치현실을 볼 때 재삼 음미해 볼 시귀다.

한편 국민의 대변자로 자부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치신조는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아예 팽개쳐 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철새처럼 이리저리 날고 있다. 당적을 옮긴 국회의원 숫자를 헤아려 볼 수도 없다. 또 국회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가? 나라 살림은 뒷전이고 오직 당리당략만을 내세워 극한 대립을 하고 있으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겠는가. 필자는 비교적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택시기사들은 많은 손님들을 태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많은 말을 듣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종의 대변자라 해도 그르지 않다. 정말 놀라운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국회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느냐”

“국회를 아예 없애면 어땠겠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할 말을 잊고 묵묵부답일 수 밖에 없는 자신이 서글퍼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언론문건’ 사건을 놓고 여야는 사활을 건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이에 언론도 동조하듯 진실을 외면한 채 양당에서 붓물처럼 쏟아 붓는 말만을 신문지상(방송)에 담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기에 붓물만 넘쳐 흐르게 하는지 국민들은 식상할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신뢰감마저 감소시키고 있다.

언론의 속성상 오보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기자들의 특종 의식과 시간에 쫓기는 신문제작의 여건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오보는 파생되기 마련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을 당연시 받아 들여서도 안될 것이다. 기자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확인절차를 필히 거쳐 기사를 완벽하게 작고해 오보를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사실보도, 더 나아가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진실보도만이 언론의 정도(正道)이며 또한 언론인의 사명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공직자와 명예훼손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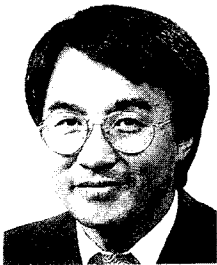
염규호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언론법 교수

미국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대의민주 정치의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만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그것은 1964년에 있었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¹⁾ 사건이다. 3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정표적인 미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은 시민이 주권자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철학을 미국민의 생활에 현실화시켰다. 즉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절대적인 시민권의 일부이며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미국민의 명예훼손적인 비판 역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ullivan 판결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헌법의 철저한 공약을 대변하는 것이다. 뉴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Ronald Dworkin은 1996년에 *Sullivan* 사건을 평하면서 이렇게 피력했다. “세계의 민주국가들 가운데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도를 본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그리고 이 같은 언론·표현의 자유 보호에 있어서 헌법적인 기틀로서 중추적인 것이 바로 1964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Sullivan* 판결이다.”²⁾ Dworkin 교수의 *Sullivan* 사건에 대한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최근 수년동안에 걸쳐 이 판결은 유럽인권재판소, 영국, 호주 그리고 인도 등지의 재판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반드시 *Sullivan* 사건의 판결원칙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판결의 근본정책과 이념을 진지하게 따르고 있다. 즉 정치적인 표현, 특히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민주사회에 절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표현의 자



-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교(Ph.D), 예일법과대학(M.S.L)
- 미국 신문학회(AEJMC) 및 국제언론학회(ICA) 언론법 회장 역임
- 「Media Countersuits in Libel Law」 외 논문 다수
- 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월터크롱카이트 언론대학 언론법 주임 교수

1) 376 U.S. 254(1964).

2) Ronald Dworkin, *Freedom's Law : The Moral Reason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195(1996)

유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자유 언론의 기본 정책을 구현하는 최선의 길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 헌법은 공직자의 명예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결코 그렇지 않다. 사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신앙시 하는 미국도 법과 사회관습, 전통을 통해서 오랫동안 명예권은 주요한 개인의 이익으로 인정하고 보호해 왔다.³⁾ 그리고 미국에서 공직자를 별도로 구별하여 명예훼손법을 해석, 운용하는 것은 수백년에 걸친 명예훼손법의 역사에서 본다면 최근의 일이라고 하겠다.

비록 1964년 이전에 몇몇 주에서 공직자 명예훼손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했다.⁴⁾ 그리고 공직자의 명예권은 여전히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어느 정도 공직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상충되는 이익의 형평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Sullivan* 판결에서 수립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이론이 정의적인(definitional)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자의 공적 행동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비난은 허위임을 알면서 혹은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공표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 이론은⁵⁾ 현재 미국 명예훼손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다.

미국 연방 고등법원판사이자 미 명예훼손법에 관한 최고 권위서인 *Sack on Defamation*의 저자인 Robert D. Sack은 '현실적 악의' 이론에 입각

한 1964년 이후의 미국 명예훼손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대법원의 기복이란 사상의 흐름과 주요한 헌법판결을 숙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최근에 주장했다.⁶⁾ 그리고 미 명예훼손법의 주요 저서인 *Law of Defamation*의 저자인 Richmond대학교 법학 교수 Rodney A. Smolla는 이렇게 썼다 : “*Sullivan* 판결은 최근의 미국 명예훼손법에 관한 모든 토론의 출발점이다. 1964년에 명예훼손법이 ‘헌법화’된 이후 명예훼손문제에 관한 실제적인 법률자문이나 전략을 수립하려면 반드시 *Sullivan* 판결의 토대가 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⁷⁾

‘현실적 악의’ 원칙의 중요성과 관련, 미국 언론변호사들이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누가 잠재적인 명예훼손소송의 원고인가?”하는 점이다. 이 질문의 목적은 미국 명예훼손법의 2분법적 접근을 사전에 파악,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 공직인사(공적인물을 포함)가 개입되었는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사적인물에 관한 것인가를 미리 진단해야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⁸⁾

누가 잠재적인 명예훼손의 원고인지, 그리고 나아가 공직자 여부를 규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직자가 관련된 기사라고 해도 기사의 내용이 공직자의 “공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냐는 것은 별개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공직자라는 칭호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등등의 문제들이 *Sullivan* 판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잡다기한 ‘현실적 악의’ 원칙은 한편으로는

3) See generally Norman L. Rosenberg, *Protecting the Best Men : Interpretive History of the Law of Libel* (1986).

4) *Sullivan*, 376 U.S. at 280n. 20.

5) *Id.* at 279-280. 현실적 악의는 일반적 의미의 악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미국 언론법의 관례에 따라 필자는 이 논문에서 헌법적 명예훼손법의 뜻으로 ‘현실적 악의’의 표현에 인용표를 붙임을 특해 두고 싶다. see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472 U.S. 749, 753-761 (1985).

6) Robert D. Sack, 1 *Sack on Defamation : Libel, Slander, and Related Problems* § 1.1, at 1-1 (3d ed. 1999).

7)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 2:1, at 2-4 to 2-5 (2d ed. 1999) (citations omitted).

8) Bruce W. Sanford, *Libel and Privacy* § 7.1, at 241(2d ed. 2000).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기 보다는 위축한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현실적 악의’ 기준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소송을 억제하도록 하는 장치로 고안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실패’라고 단정지은 언론법학자 Donald M. Gillmor 교수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 크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의 상당수가 공직자에 의한 것이다.”고 Gillmor 교수는 덧붙였다.⁹⁾

일부 미 연방대법원 판사들과¹⁰⁾ 변호사,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현실적 악의’ 원칙의 개혁을 제안했다.¹¹⁾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만일 지금 연방대법원에 1964년처럼 *Sullivan* 사건이 다시 판결에 붙여진다면 언론의 자유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현실적 악의’ 판결이 나오겠느냐 하는 회의가 미 언론계와 언론법변호사들간에 상당히 퍼져 있다는 것이다. 판사는 그가 속한 사회의 흐름과 분위기를 대체로 반영한다는 일반론에 비춰볼때 미국 언론의 사회성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저명한 미 언론법 변호사 Bruce W. Sanford는 최근에 낸 미국언론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평서에서 “언론기관의 뉴스취재관행에 경악한 판사들이 언론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를 줄이고 있다. William Brennan 연방대법원 판사가 (*Sullivan* 사건에서) 언급한 언론이 공적인 문제들에 대해 보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숨쉬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돌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라고 썼다.¹²⁾ 최근 수년동안에 나타난 미국 법원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미 언론사들은 전처럼 끝까지 소송투쟁을 해보겠다는 자세에서 탈피해 가능하면 법적인

문제를 합의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승소보다는 패소할 가능성이 전보다 크고 비록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는 언론소송의 현실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증거라 할 수 있다.¹³⁾

본 논문에서 필자는 *Sullivan* 판결과 관련해 미국 언론법상 공직자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의 명예훼손법에서 공직자와 언론사간의 소송사건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앞서 이미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누가 ‘현실적 악의’ 상의 공직자인가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지어서 어떠한 요소가 ‘공직자’ 정의에 필요한 것인지를 규명해 볼까한다. 여기에는 공직자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구분이 미국법상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미국언론법(여기서는 주로 미국 명예훼손법)의 국제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고 점차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 공직인사에 대한 미국법상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적용에 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기본 명제는 비록 ‘현실적 악의’에 바탕을 둔 미국 명예훼손법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Sullivan* 판결의 중요성에 심대한 의구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연한다면 여전히 ‘현실적 악의’론은 미국언론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리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그럴 것이다.

9) Donald M. Gillmor, *Power, Publicity, and the Abuse of Libel Law* 15(1992) (citations omitted).

10) See, e.g.,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472 U.S. 749, 767-69 (1985) (White, J., concurring) (*Sullivan*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Coughlin v. Westinghouse Broad. & Cable, Inc.*, 476 U.S. 1187, 1187 (1986) (Burger, C.J. & Rehnquist, J., dissenting from denial of certiorari) *Sullivan*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함).

11) See generally *Reforming Libel Law* (John Solosk ; et al. eds., 1992).

12) Bruce W. Sanford, *Don't Shoot The Messenger : How Our Growing Hatred of the Media Threatens Free Speech for all of U.S.* 8 (1999).

13) See Sanford, *supra* note 8, § 1.9, at 22.9 (citation omitted).

본 논문의 주제가 공직자와 관련한 명예훼손사건임에 비추어 공직자가 아닌 즉 넓은 의미의 공적 인물이나 사적 인사가 관계된 명예훼손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힌다.

물론 '현실적 악의' 이론이란 면에서 볼 때 미국언론법상 공직자와 공적 인물의 구분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적용절차와 그 타당성에 대한 논쟁에 있어 공적 인사사건에서 보다 빈번히 '현실적 악의'론이 비판의 소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다음호에 공적 인사와 명예훼손의 문제를 따로 다룰 계획이다.

그런 '현실적 악의' 이론에 관련한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Sullivan판결 전의 미국 명예훼손법을 간략히 개관할 필요가 있다.

I. Sullivan판결 전의 미국 명예훼손법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예훼손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미국법은 영국의 보통법에 근거한 것으로 영국법과 다를 바 없었다. 즉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누구든지 자기가 공표한 것에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¹⁴⁾

1938년에 나온 미국의 불법행위(torts)에 대한 미국법연구원(American Law Institute)의 요약설명서(Restatement of Torts)는 명예훼손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 "명예훼손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타인에 대한 허위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이 공표는 구체적 피해(special harm)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사유가 될 수 있다."¹⁵⁾

따라서 보통법상 명예훼손소송의 원고는 피고의 법적인 결백과는 무관하게 허위의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표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원고는 또한 피고가 명예훼손적인 언사를 제3자에게 공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¹⁶⁾

그러나 명예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를 증명하거나 그 문체된 표현이 허위라는 것을 소송의 사유의 일부로 입증할 의무는 없었다.

명예훼손법이 언론 표현의 자유에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알고 보다 큰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보통법상(주법) 3가지의 주요 면책사유를 인정했다. 우선 진실(truth)은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사건에서는 완전한 면책이 되었다.¹⁷⁾ 둘째 공평한 논평(fair comment and criticism)이 또한 중요한 면책이었다.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보호하려는 이 면책사유는 일단 사실에 입각한 의견으로 공평한 것이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안되었다.¹⁸⁾ '공정한 보도(fair report privilege)'가 세번째 면책사유였다. 정의를 내린다면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이나 절차 혹은 공공의 관심사를 다루는 모임으로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것에 대한 보도에 언급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그 보도의 대상이 상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혹은 공평하게 요약한 것이면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 것이다."¹⁹⁾

이 공정한 보도의 면책사유가 외국의 정부에 관한 보도에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미법원의 판결은 아직 상반된 입장이다.²⁰⁾

14) Peck v. Tribune Co., 214 U.S. 185, 189 (1909).

15) Restatement of Torts § 559 (1938).

16) Id. § 558.

17) See generally Kyu Ho Youm, "The Impact of People v. Crosswell on Libel Law," *Journalism Monographs* No. 113 (June 1989).

18) See generally Restatement(Second) of Torts § 566 comt. a (1977).

19) Id. § 611.

20) See Kyu Ho Youm, "American Libel Law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Is It Privileged to Report on Foreign Governments?" (Nov. 30, 1999) (unpublished manuscript).

II. Sullivan판결 : 공직자와 ‘현실적 악의’²¹⁾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미 명예훼손법은 “언론이 덜 보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을 지나치게 보호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원칙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다.²²⁾ 하버드법대교수 Alan Dershowity의 주장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적인 인사로 하여금 명예훼손소송에서 이기려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할 것을 요하는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²³⁾

Sullivan판결은 공적관심사에 대한 미국민의 자유로운 헌법적인 표현권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은 제한을 받지 않고 활발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국가적인 깊은 공약에 비춰서,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는 틀린 표현이 불가피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숨쉬기 공간’을 가져야 한다면 표현상의 실수를 보호해야만 한다.”²⁴⁾

연방대법원은 한 사람에게서는 진실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오류일 수도 있음에 주의하면서 정직한 실수를 처벌함으로써 생기는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경고했다 : “공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자로 하여금 그의 모든 사실적인 주장의 진실성—그것도 거의 무제한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각오하면서까지—을 보장하라는 법률상의 원칙은 상응하는 ‘자체검열’을 야기시킨다.”²⁵⁾

연방대법원은 이미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진실’의 면책사유가 헌법상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충분치 못함을 간파하면서 특히 진실의 거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법률상의 진실증명요건이 지극히 어려운 절차를 논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법원칙에서라면 공적인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비판적인 의사-비판을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를 억제시킬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법정에서 그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나 그렇게 해야 하는 소송상의 경비에 대한 걱정때문에 더욱 그러하다.”²⁶⁾

결국 보통법상의 명예훼손원칙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소심하게 행동하게 하며 “공공 토론의 활발성을 약화시키고 그 토론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주장했다.²⁷⁾

미국 명예훼손법의 새로운 장을 여는 ‘현실적 악의’ 원칙을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선언했다 : “미 헌법상 보장된(언론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연방법원칙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만일 공직자가 문제된 명예훼손적 언사가 현실적 악의—즉, 그것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허위 여부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무시를 함—를 갖고서 공표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공직자는 자신의 공직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²⁸⁾

‘현실적 악의’ 원칙은 영미 보통법상의 명예훼손법을 정면으로 개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왜냐하면 타인의 명예(특히 공직자인 경우에)에 대한 영향에 관계없이 미국 시민의 공직자에 관한 의견이나 표현을 우선 보호한다는 것이

21) 본 장은 미국언론법 교과서 *Communication and the Law* (in press)에 있는 필자의 “Libel : The Plaintiff’s Case”에 상당히 근거한 것이다.

22) Harry Kalven, “The New York Times Case : A Note on ‘The Central Meaning of the First Amendment,’” 1964 *Supreme Court Review* 191, 213.

23) Alan M. Dershowing, *Taking Liberties* 62 (1998).

24) *Sullivan*, 376 U.S. at 270, 271-72 (citation omitted).

25) *Id.* at 279.

26) *Id.*

27) *Id.*

28) *Id.* at 279-80.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민주정치의 정책실현의 핵심임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 악의' 원칙은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대전제를 기본으로 해서 나온 것임을 연방대법원은 강조하고 있다. 즉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특권은 공직자들이 공직상의 의견진술 등에 대해서 누리는 특권과 “적절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²⁹⁾ 공직자에 의한 주장이 비록 명예훼손적이라 해도 법으로부터 보호의 대상이 된다면 이에 대응해서 그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표현이 어느 정도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연방대법원은 판결했다.³⁰⁾

정치적 명예훼손이 공직자 명예훼손과 빈번히 직결됨을 이해한다면 (이는 반드시 미국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비민주적이고 독재국가의 경우에 더욱 사례가 많다.³¹⁾), 미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론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전통적인 보수주의 이론, 예컨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등의 기준을 초과해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자유론자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할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의 절대론자인 Hugo Black과 William Douglas 미 연방대법원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정치적 명예훼손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정치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권한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점에서 *Sullivan* 판결은 국가(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절대적으

로 인정함으로써 1798년에 있었던 선동죄(Sedition Act)의 위헌성을 “역사의 심판”으로써 분명히 했다.³²⁾

Sullivan 판결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이 바로 기관의 담당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비판의 대상이 된 정부관청을 대신해서 공무원이 그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결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여기서 *Sullivan* 판결문을 인용해 보자 : “원고(공직자)가 정부에 대한 성의어린 비판자를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발상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핵심을 없애는 것이다. 본 법원은 정부행위에 대한 사적이 아닌 공격을 정부행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제안을 헌법상 결코 용납할 수 없다.”³³⁾

'현실적 악의'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연방대법원은 공직자원고의 증거 책임기준을 일반 불법행위소송에 비해 보다 높게 했다. 즉 민사사건에 요구되는 “증거의 현저성”(preponderance of evidence)대신에 공직자가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려면 “신빙성있는 확실성”(convincing clarity)을 갖고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Sullivan 판결의 아쉬운 문제점이 있다면 '현실적 악의'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제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의 행위

29) *Id.* at 282 (citation omitted).

30) *Id.* at 282-83.

31) See David Riesman, “Democracy and Defamation : Fair Game and Fair Comment I”, 42 *Columbia Law Review* 1085, 1092-1011 (1942).

32) 1798년 John Adams 행정부가 비판세력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한 이 선동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는 정부나 고위공직자를 공개적으로 조롱, 모독 혹은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손상함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었다. 이 연방법으로 해서 유명한 국가정부모독(seditious libel)에 관한 재판들이 여러 개 나왔다. 후에 이들 사건들은 미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의 신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See generally Kyu Ho Youm, “Press Freedom and the Sedition Act : United States v. Cooper Reexamined” (paper presented at the AEJMC Southeast Conference in Lexington, Ky., on March 3-9, 1999).

33) *Sullivan*, 376 U.S., at 292 (citation omitted).

34) *Id.* at 285-86. “신빙성 있는 확실성”은 “증거의 현저성”과 형사사건에서 증거기준으로 삼는 유죄경정에 “타당성 있는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 중간에 속한다. Roy L. Moore, *Mass Communication Law and Ethics* 68(Id ed. 1999).

가 ‘현실적 악의’의 기준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겼다. 물론 그 판결에 나타난 직접적인 사실에 관련해서 원고 Sullivan은 선거로 인해 당선된 시공무원이고 경찰국을 감독하는 책임과 관계된 뉴욕타임즈신문의 의견광고가 공적인 행위에 대한 표현이므로 ‘현실적 악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의 적용은 대답을 주기보다는 의문을 더욱 많이 야기시키는 것으로 Sullivan사건 이후의 판결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Ⅲ. 공직자의 법적인 정의

Sullivan판결 후 15년이 지난 1979년 미 연방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토론했다. “지금까지 본 법원은 ‘공직자’(public official)에 대한 범주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자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는 없다.”³⁵⁾ 이 연방대법원의 “조심스러운” 언명이 분명 공직자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지만 미국법원들은 지난 35년에 걸친 ‘현실적 악의’ 사건에 관련된 공적 업무로 인한 공직자의 명예훼손은 거의 대부분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Smolla 교수의 언급은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에 관련된 명예훼손 원고로서 Sullivan기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을 받은 예는 비교적 거의 없다... 더욱이 공직자신분을 결정하는 정확한 경계선같은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법원들은 공직자 개념을 적용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거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적 인물과 공적인물이라는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판시했다. 사실 공직자의 정의는 현대의 미국 명예훼손법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확실함을 보여주는 영역의 하나이다.”³⁶⁾

비록 연방대법원이 공직자에 대한 ‘정확한(precise)’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몇개의 판결을 통해서 공직자의 칭호가 어떠한 경우에 타당한지를 밝혔다. 1966년의 *Rosenblatt v. Baer*³⁷⁾사건이 그 주요한 예이다. 뉴햄프셔의 한 지방신문을 상대로 한 전직 공영레크리에이션 구역감독자의 명예훼손소송인이 판결에서 “최소한 공직자라는 직함이 적용되려면 정부공무원으로서 정부업무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이나 통제권을 갖고 있거나 일반대중에게 갖고 있는것 같은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판시했다.³⁸⁾ *Rosenblatt*판결과 관련해서 공직자의 신분 규명에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의 기준은 주법에 의거해서가 아니고 연방헌법에 따라야 한다. 물론 특정 공무원의 의무나 책임에 대한 주나 지방정부의 일반법규가 공직자의 신분을 설정하는데 유익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은 사실이다.³⁹⁾ 중요한 것은 공적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고의 공무원 신분이 관심의 초점이 된다. 즉 반드시 공직자의 직급이 관건은 아니다. 하지만 원고의 직책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이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자의 자격이나 업무수행에 대해 독립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면” 그 원고의 직책이 고려의 요건이 될 수 있다.⁴⁰⁾

공직자의 정의에 있어서 전직인가 현직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Rosenblatt*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공직을 떠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의

35) *Hutchinson v. Proxmire*, 443 U.S. 111, 120 (1979).

36) Smolla, *supra* note 7, § 2:100, at 2-121 to 2-122 (citations omitted). See also Sanford, *supra* note 8, § 7.2.2.1, at 252.

37) 383 U.S. 75 (1966).

38) *Id.* at 85.

39) Danny R. Veilleux, “Who Is ‘Public Official’ for Purposes of Defamation Action” 44 A.L.R. 5th 193, 229-30 (1996) (citations omitted).

40) *Rosenblatt*, 383 U.S. at 86. §

명예훼손기사가 원고의 재직시에 관련된 행위라면 원고는 여전히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⁴¹⁾ 연방대법원은 일반대중의 공직자의 행위에 더이상 관심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난 상황이면 '현실적 악의' 원칙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⁴²⁾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공직자에 대한 '현실적 악의' 증거 의무가 면제된 예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공직자가 현직이나 전직이나 하는 문제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특별한 중요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³⁾

현직에서 물러난 공직자도 '현실적 악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미국 명예훼손법과 연관해서 외국의 정부관리나 공직자의 경우는 미국법상 어떠할까? 국제화와 다국적 미국언론경영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국제 명예훼손사건에서 이 문제가 중요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현재까지 미국법원의 판례는 외국의 공직자에 대한 '현실적 악의' 적용에 미국의 공직자와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⁴⁴⁾ 미국법원들은 '현실적 악의'의 국외적용에 대해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일면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럴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외국의 공직인사들은 대부분 각료급이상의 국가지도자들이었으므로 미국법에서 보면 당연시되는 공직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법 중심의 편향적 언론법적용이라는 미법원의 안일한 접근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IV. 공직자의 실제와 판례

지난 10년간 공직자와 선거후보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한 1999년의 연구에 의하면 60개의 판결 가운데서 단지 3개의 사건, 즉 5%에서만 '현실적 악의'가 인정됐다. 동 연구는 결론을 짓기를 "현실적 악의 기준은 매우 높고 공직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증명을 판단하는데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가지 상황이나 요인을 통해서 요구되는 수준의 증거를 입증할 수는 없다. 법원의 증거방식의 하나는 허위 혹은 사실에 대한 왜곡의 정도가 심각해야 한다는 점이다."⁴⁵⁾ 일반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현실적 악의'의 적용은 우선 *Rosenblatt*판결에서 처럼 공직자가 갖고 있는 직책에 덧붙여서 공직자의 지위에 관련된 자격 업무 등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중심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 공무원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기사가 단순히 "일반의 흥미"를 끈다고 해서 '현실적 악의'가 적용될 수는 없다.⁴⁶⁾ 요컨대 비록 공직자가 관련되었다고 해서 기사의 뉴스성이 자동적으로 '현실적 악의' 이론의 적용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1. 선거직 공직자

아마 '현실적 악의'가 예외없이 적용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것은 선거직 공무원이라고 하겠

41) *Id.* at 87n.14.

42) *Id.*

43) See Smolla, *supra* note 7, §2:102, at 2-126(citation omitted). For a case law discus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ual malice" rule in "former public official" libel cases, see Veilleux, *supra* note 40, at 383-89.

44) See *Sharon v. Time, Inc.*, 599 F. Supp. 538 (S.D.N.Y. 1984); *Desai v. Hersh*, 719 F. Supp. 670 (N.D. Ill. 1989), *aff'd*, 954 F.2d 1408(7th Cir.), *cert. denied*, 506 U.S. 865(1992); *DeRoburt v. Gannett Co. Inc.*, 83 F.R.D. 574(D. Haw. 1979). For a discussion of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under the "Actual malice" doctrine, See Youm, *supra* note 20, at 4-5.

45) Ginny Carroll, "Actual Malice: How Badly Does a Journalist Have to Behave for a Politician to Win a Libel Suit?" (Paper presented at the AEJMC national convention in New Orleans, La., on August 4-8, 1999).

46) *Rosenblatt*, 383 U.S. at 86 n.13.

다. 자기의 명예와 행위 등을 일반 대중앞에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또한 직접적인 정책입안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의 평가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현실적 악의’의 적용이 부적합한 상황의 선거직 공무원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이 선거직 공직자의 범주는 연방정부든 주나 시, 군 등의 하위 행정단위든 차이가 없다. 행정직이나 의회 혹은 사법부에 관련한 직책이거나 선거를 통한 공직이면 일단 ‘현실적 악의’가 요구됨은 일반 원칙이다. 선거직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 ‘현실적 악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미국민의 표현은 최대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제와 일치하며, 구체적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부모독(seditious libel)이란 개념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연방대법원의 1971년 판결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이 가장 완벽하고 시급하게 최대한 적용할 곳이 있다면 바로 정치적 공직선거에 관련된 것이다.”고 했다.⁴⁷⁾

한편 선거후보자도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악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선거당시에 공직에 있지 않다고 해도 “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야말로 Sullivan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경우임을”⁴⁸⁾ 이해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선거공직자 그리고 선거후보자의 명예훼손과 연관해서 미국언론법의 중요한 점은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상 절대적인 헌법상의 보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정당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나온 판례는 단 한건도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 부질없는 시간낭비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요컨대 국민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정당에게 명예훼손소송을 허용하게 된다면 바로 민주정치의 근본에 대한 도전일 것이다.⁴⁹⁾

2. 임명직 공직자

선거직 공무원과 비교해서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현실적 악의’ 원칙의 적용은 보다 확실치 않고 대체로 그 범위가 좁다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도 그 직위의 중요성, 맡고 있는 책임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또한 공직에 임명된 공무원이 책임자이나 하는 일반의 심사가 선거 공직자보다 중요한 경우도 많다. 미연방대법원장 Earl Warren의 말처럼 선거라는 제약을 받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을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토론 비판하는 것만이 그 공무원의 공적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⁵⁰⁾ 그러므로 몇몇 부류의 임명직 공직자들은 일관되게 ‘현실적 악의’상 공직자로 분류되고 있다.

가. 법집행 공무원

경찰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거의 항상 미국 명예훼손법에 있어서 공직자이다. 미국 판례에서 전형적으로 인용되는 이유를 요약한다면 “법집행요원들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만일 그 권한을 오용하면 국민의 헌법 권리를 박탈하고 신체적인 해 혹은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다. 그러므로 이들 요원들은 정부의 업무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 내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다.”⁵¹⁾ 이 때문에 말단 순찰

47) Monitor Patriot Co. v. Roy, 401 U.S. 265, 272 (1971)

48) Ocala Star-Banner Co. v. Damron, 401 U.S. 295, 300-301 (1971).

49) 영국의 명예훼손법에 있어서 정당에 관련된 소송문제점에 대해서는 Jennifer McDermott, “Ca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Sue for Libel?” 2 *Communications Law* 86 (1997)의 글이 Sullivan사건의 영향에 대해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See also Ian Loveland, “Defamation of ‘government’: Taking Lessons from America?” 14 *Legal Studies* 206 (1994).

50) See Curtis Publ’g Co. v. Butts, 388 U.S. 130, 164 (1967).

51) Sanford, *supra* note 8, § 7.2, at 269.

경찰관까지도 거의 대부분 공직자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현실적 악의'상 공직자의 신분 규명을 하려면 정책결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지 혹은 단순한 정책 집행에 관여할 뿐인지가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경찰관들의 경우는 하등의 큰 문제가 안된다. 이유는 경찰의 특수한 권한과 책임에 기인한다. "경찰의 기능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이행에 관계된다. 비록 하급경찰관은 정책자체를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의 무한정하게 다양한 임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권한 행사로 인해 일반대중은 일상생활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경찰관은 매우 광범위한 '일반 정책의... 집행에 직접 참가하는 중요한 비선거직 공무원'에 속한다."고 연방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다.⁵²⁾

나. 행정, 법원의 공무원

대개 행정부나 법원에 관계된 공무원의 '현실적 악의' 기준은 어느 정도 정책입안 결정 등에 책임을 갖고 있느냐가 관심의 주요대상이 된다. 여기에 선거직이나 임명직이나가 한 요건일 수도 있겠으나(즉 임명직이면 '현실적 악의' 기준이 덜 할 수도 있음) 정책결정에 관한 책임을 생각한다면 "공직자의 직책이 임명에 의한 것이냐 혹은 선거직이나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 악의'성에) 관련성이 없다."는 한 미국판결은 옳다고 보아야겠다.⁵³⁾

종종 공직자의 행위가 그 공직자의 직책에 적합한 것이냐가 법원의 결정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공직자 행위요건은 대체로 넓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일견 직접 공직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공직자의 공무원 자격 사유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 악의'의 범위를 판단한다. 결국 공직자의 사적인 명예에 관한 것이라도 공적명예와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함으로써 Sullivan원칙을 고수했다.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평가하는 사적인 면중에서 공무원의 비정직성, 부정, 혹은 온당치 못한 동기보다 더 관련성이 있는 것은 없다. 비록 이것들이 공직자의 개인적인 인격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⁵⁴⁾

행정부나 법원 등의 공무원은 직책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명예훼손법상의 공직 인사가 된다. 법원이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책과 그의 분제된 책임, 행위 등을 신중히 연관지어서 '공직자'의 신분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위각료급 공무원, 연방기관의 국장이나 위원장, 판사, 시예산국장 등은 누가 뭐라 해도 쉽게 공직자로 취급함이 당연하다. 또한 연방, 주나 시의 검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다. 교육공무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들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 공직자인가? 다수의 판례는 Sullivan원칙하에서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유는 공공의 기금에서 나오는 봉급을 받는 고용인이고 일반 국민은 교육공무원의 능력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매우 책임있는 직책에 있다는 것이다.⁵⁵⁾ 그러나 Sullivan결정을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원칙에 입각한 견지에서⁵⁶⁾ 보면 교육자를 공직자로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52) *Foley v. Connelie*, 435 U.S. 291, 297-300 (1978) (citations omitted).

53) *Walker v. Southeastern Newspapers*, 9 Media L. Rep. (BNA) 1516, 1518 (Go. Richmond County Ct. 1982).

54) *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 77 (1964).

55) *Slade R. Metcalf*, 1 *Rights and Liabilities of Publishers, Broadcasters and Reporters* § 1.53, at 1-117 to 1-118 (1994) (citations omitted).

56) *Ellerbe v. Mills*, 262 Ga. 516, 516-17 (1992) (emphasis in original).

있다. 그 좋은 예가 1998년의 일리노이 고등법원의 판결인 *Snitowsky v. NBC Subsidiary(WMA6-TV), Inc.*⁵⁷⁾이다. 교사들의 ‘공직자’ 지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법원은 판시했다 : “공직자에 대한 논평의 보도는 통치자에게 의문을 제기할 자유 즉 정부의 운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자가 정부의 행위를 통제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의 개념에서 유래한다.

우리의 견해로는 공립학교교사로 하여금 그의 명예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면책적인 훼손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본법원은 교사가 현실적 악의가 아닌 명예훼손의 위험을 감당할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교사가 효과적으로 강의하는 데 필요한 지성과 표현의 자유에 실제적이고 견딜 수 없는 위험을 맞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압도적인 다수의 판결에서 교육공무원을 공직자로 인정하고 ‘현실적 악의’를 부과하고 있으나 몇몇 주 특히 텍사스,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그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언론변호사 *Sanford*는 이들 주법원들의 법해석은 그릇된 것이고 ‘공직자’ 등의 정의를 조작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⁵⁹⁾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교직에 있는 경우에 ‘현실적 악의’가 요구되는 예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교육자들이 특히 행정직 등을 맡지 않는 평교사면 언론의 접근기회가 많지 않다는 면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추론은 대개 법원이 ‘공직자’의 지위 설정이 불분명하거나 어려울때 응답기회와 관련하여 미디어접근권을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⁶⁰⁾

V. 요약 및 결론

Sullivan 판결에서 나온 공직자에 대한 ‘현실적 악의’ 증거기준은 최근 수년동안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개혁의 요구가 법조계 내외로부터 제기되었다. 심지어는 보다 나은 균형적인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조화를 위해서 1964년 이전의 엄격책임주의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법학자와 판사들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악의’ 이론의 지속적인 가치는 여전히 있다.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것은 *Sullivan* 판결의 기본 원칙들(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인)이 국제적으로 점점 더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Sullivan* 이론을 정치적 명예훼손사건에 도입한 인도, 호주,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영국의 판사들 사이에서의 열띤 ‘현실적 악의’에 대한 찬반논쟁은 이 독특한 미국의 명예훼손법 법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⁶¹⁾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치표현의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미국의 언론법에서 볼 때 국가모독 즉 정부당국에 대한 명예훼손을 영원히 인정치 않으려는 바탕에서, 공직자에 대해 국민이 최대한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 악의’라고 하겠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아니 정치인들로부터의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덜 느끼는 원인 중의 하나가 ‘현실적 악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의 존재가치를 반영하는 ‘현실적 악의’ 법리는 전통적인 정부의 권력과 막강한 언론사의 힘의 균형이 바뀜으로 해서 재조명을 받을지 모른다. 일

57) 26 Media L. Rep. (BNA) 2265 (111. App. ct. 1998).

58) *Id.* at 2270(quoting *Franklin v. Lodge No. 1108, Benevolent & Protective Order of Elks*, 97 Cal. App. 3d 915, 924 (1979)) (internal quotations omitted) (original emphasis deleted).

59) *Sanford*, *supra* note 8, § 7.2, at 277-80.

60) *Smolla*, *supra* note 7, § 2:108, at 2-132.

61) See *Kyu Ho Youm*, “The Interaction Between American and Foreign Libel Law : U.S. Courts Refuse to Enforce English Libel Judgmen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forthcoming).

반 국가의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정부 보다는 바로 이익추구를 생존의 제1원칙으로 하는 기업으로서의 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적 악의'라는 헌법적 특권이 계속 정당화할까? 사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현실적 악의'에 대한 회의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세력이 미약하고 제약적인 명예훼손법(손해배상을 통한 형사처벌을 통한)을 탄압 무기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한다면 '현실적 악의' 원칙의 필요성은 지극히 높아져야 된다. Harry Kalven 교수의 정치적인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정의적인 주장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 "(정부모독을 죄로 취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불매 깨쇄된 사회의 표시이다... 정부가 그의 권력과 법원을 이용해서 그의 비판자를 침묵시킬 수 있으면 정치적 자유는 끝난거나 다름 없다."⁶²⁾

'현실적 악의' 원칙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이 법리상의 '공직자'이냐이다. 연방대법원이 근본요건으로 하는 공직자의 지위와 공직자의 공적행위를 파악하는 것은 다른 명예훼손의 법리처럼 용이한 것은 아니다. 몇가지 확실한 일반원칙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해서 분명해졌다. 선거직 공직자는 예외없이 공직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은 직책 그 자체로 해서 공직자가 되는 것이다. 임명직이든 선거직이든 문제시 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행위가 직접 국민의 생활, 생명, 복지 그리고 자유에 영향을 미치면 지위에 관계없이 Sullivan 원칙상의 공직자이다. 예컨대 경찰관은 거의 언제나 공직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요건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지위가 낮으면 그 공무원이 관계된 행위가 어느 정

도 일반 국민의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으로 사소한 정책집행(임의성이 전혀 없음)의 경우라면 '현실적 악의' 적용의 이유가 희박하다.

미국의 언론법에서 미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은 사실상 없다. 특히 '현실적 악의' 증거기준이 외국의 공직자로서 미국의 언론사를 상대로 미국의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적용된다

사실 외국인 공직자를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미국인 공직자와 똑같이 다뤄야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로 Sullivan 판결에 입각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세계화하는 국제커뮤니케이션 현상과 한 국가에만 제한된 공직 인사가 아니고 전세계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인사라면 '현실적 악의'의 확대적용은 우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범주의 공직 인사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미국법원은 외국 공직자들에 대한 사려깊은 이해없이 그냥 '현실적 악의' 적용에 급급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 악의' 기준의 핵심은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이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탈바꿈되는 정치적 제약을 가능한한 방지하는데 있다. 정부를 주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면 미국 법원은 가능하면 고위공직자가 원고라면 우선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할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 정부에 대한 표현은 절대적인 미국민의 자유이며 권리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혹은 정부기관을 명예훼손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현실적 악의'의 정책에 준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소송을 처리해야 한다.⁶³⁾ 결국 이같은 법원의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있는 자세야말로 210년전의 수정헌법제정의 의미를 계속 미국민의 생활속에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62) Harry Kalven, Jr., *A Worthy Tradition* 63 (1988).

63) Smolla, *supra* note 7, § 2:115, at 2-140.

언론자유와 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광주와 창원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1월 5일에는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서정우 부위원장(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원장)의 주제발표와 구양술 위원(전 KBS광주방송총국 보도국 부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있었고, 12월 2일에는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김현태 위원(창원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조현중 위원(변호사)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註

서 정 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사회가 창안한 비교적 특수한 규제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의 언론중재제도와 같은 규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언론문제에 있어서 중재의 개념은 대단히 생소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잘못 운영될 경우 언론자유에 침해가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제도는 순수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율 규제기구가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 자율규제기구 또한 아니다. 우선 언론중재는 언론자유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기본목적의 두고 있는 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언론중재는 규제기구가 아니라 중재기구 혹은 심의기구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재제도는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자신의 도덕기준이나 윤리강령에 의해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차원에서 자율적 기구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타율성은 중재위원의 구성이나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아 정치적 타율성이거나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토대로 하는 공적 타율성 내지는 사회적 타율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제도는 정치적 차원이나 행정적 차원에서의 타율적 규제기구가 아니고 공적인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타율적 중재기구로 인식해야 한다.

그 동안 언론중재제도가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탄생했기 때문에 중재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평가는 중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재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확한 인식의 정립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윤리기구의 기능에다 법원의 기능을 겸할 철충식 중재기구에 해당된다. 언론과 시민간의 분쟁을 처음부터 법에 의존하는 방식은 언론을 위해서나 시민을 위해서나 바

토 론

사회·구 양 술

(전 KBS광주방송총국 보도국 부장)

언론사 구조조정에 따른 기자인원 감축이 오보증가의 한 원인

사회자 : 『언론자유와 중재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정우 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니고 계셨던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윤병대 (광주CBS 보도제작국장) : 서교수의 주제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내용 중 현재 언론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론자유가 과다해서인지, 아니면 취재관행 등 언론인의 자세나 언론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예훼손이나 오보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 직접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방법과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 바랍니다.

위정철 (광주타임스 제작국장) : 기자선발제도와 관련하여 언론사에서 인턴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턴사원을 채용한 경우 자질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대학에서 인턴사원을 선발하여 파견할 때에는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을 파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일 (KBS광주방송총국 보도제작부장) : 최근 오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구조조정에 따른 언론사의 인력 감축, 즉 기자인원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못하고 외부 정보에 의존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상황은 오보 증가

의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취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오보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언론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서둘러 법에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발표자 : 과거에 비해 현재 언론의 자유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유가 과다해서라기보다는 현 취재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에 호소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정당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서둘러 법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법에 호소하는 방법은 엄청난 시간, 노력,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언론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민주사회의 특수한 기구이므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언론중재제도라고 봅니다. 언론중재제도는 법과 윤리의 중간지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나면 재판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에 이르더라도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법원 판정에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철 광주타임스 제작국장께서 인턴제도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해주셨는데 인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언론과 학계의 긴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사관리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람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법과 윤리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면서 시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동시에 언론의 장기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의 탄생을 사회적으로 요청된 것이다.

따라서 중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합의율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합의율과 관련된 중재제도의 운영은 해를 거듭할수록 착실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순수 합의율이 최소한 50%를 상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된다.

중재합의율을 높이는 노력을 시민, 언론사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공동적으로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중재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언론중재위원들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중재합의율을 높이기 위한 중재위원들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지혜와 용기가 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재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언론의 중재상황은 근원적으로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부터 연유한다. 바꾸어 말하면, 언론이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한 중재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언론의 위상과 책무는 막중하다 하겠다. 언론이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언론을 전문화하는 데 있다.

이 경우, 언론의 전문성이란 대중정보를 관리하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윤리적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문화는 언론이 의사소통능력을 제고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신장하는 길이다. 또한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 및 언론의 대국민 공신력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한다. 전문화를 구현하는 길은 예비기자의 교육과정, 기자의 충원과정,

그리고 기자의 관리과정 등 세가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자의 전문화는 교육과정, 충원과정, 관리과정의 전문화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윤리화의 제도적 작업도 중요한 과정이 된다. 신문사는 집단적이든 개별적이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것을 심의·평가·제재하는 윤리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신문사는 심의제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옴부즈맨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운영해야 하겠다.

한편 언론중재제도는 언론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며, 언론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적 기구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재제도와 언론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고양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재제도와 언론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는 국민이 그들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주인 의식”의 확립이라 판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이 항상 피해의식에 빠져 깊은 동면 속에 살 있는 한 중재제도와 언론제도의 발전은 기대기 어렵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관점은 국민이 주인으로서 직접 행동하는 노력이라 판단된다. 국민이 중재제도와 언론제도의 발위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길은 모니터링 비평의 활성화 등을 통해 언론중재 환경이론환경을 감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간 방법으로 행동하는 차원이 있으며, 조직적 체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와 공공기관의 재력을 통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매체운한 영향력 행사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차원이 있다.

결국 국민의 수준이 중재제도의 수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 수준은 중재제도나 언론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그만큼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고 보겠다.

오보사례와 관련한 김종일 KBS광주방송총국 보도제작부장의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기자인력이 매우 감소되어 노동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보의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 수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편집국 체제를 세분화시키고 보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능력과 윤리적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에 비해 지방의 중재신청건수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에서 기인

김원태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주재발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최근 언론중재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차가 커 지방의 경우 중재건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는 홍보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를 위해 중재위원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재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중재대상 표현물 사본이 있는데, 방송의 경우 녹음·녹화물을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방송에 관한 중재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에 보도태이프의 강제제출명령 등과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또한 피해자만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라든지 언론모니터단체에서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사례를 적발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면 언론피해구제도 많이 되고, 시민단체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변동현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랫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은 중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경찰이나 대학 등 각종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홍보활동이나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통한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전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조직으로서의 언론사, 직원으로서의 언론인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면 외압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재벌화 현상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조직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언론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문발행 부수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발행부수는 한 기업의 정보가 아니라 공공자산이며 공공정보이므로 발행부수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각계 시민단체 대표가 중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위원장 : 김원태 교수의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하겠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정기세미나와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어 간접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외에 신문이나 라디오, TV 광고를 통해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이 방송녹화테이프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신청서에 날짜, 언론사명, 프로그램명만 확실하게 명기하면 녹화테이프를 첨부하지 못하더라도 중재위원회에서 증거조사의 일환으로서 해당 방송사에 녹화물 제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등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법률상 피해 당사자만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으므로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



토 론

사회·구 양 술

(전 KBS광주방송총국 보도국 부장)

언론사 구조조정에 따른 기자인원 감축이 오보증가의 한 원인

사회자 : 『언론자유와 중재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정우 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니고 계셨던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윤병대 (광주CBS 보도제작국장) : 서교수의 주제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내용 중 현재 언론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론자유가 과다해서인지, 아니면 취재관행 등 언론인의 자세나 언론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예훼손이나 오보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 직접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방법과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위정철 (광주타임스 제작국장) : 기자선발제도와 관련하여 언론사에서 인턴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턴사원을 채용한 경우 자질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대학에서 인턴사원을 선발하여 파견할 때에는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을 파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일 (KBS광주방송총국 보도제작부장) : 최근 오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구조조정에 따른 언론사의 인력 감축, 즉 기자인원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못하고 외부 정보에 의존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상황은 오보 증가

의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취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오보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언론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서둘러 법에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발표자 : 과거에 비해 현재 언론의 자유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유가 과다해서라기보다는 현 취재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에 호소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정당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서둘러 법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법에 호소하는 방법은 엄청난 시간, 노력,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언론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민주사회의 특수한 기구이므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언론중재제도라고 봅니다. 언론중재제도는 법과 윤리의 중간지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나면 재판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에 이르더라도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법원 판정에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철 광주타임스 제작국장께서 인턴제도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해주셨는데 인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언론과 학계의 긴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사관리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보사례와 관련한 김종일 KBS광주방송총국 보도제작부장의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기자인력이 매우 감소되어 노동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보의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 수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편집국 체제를 세분화시키고 보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능력과 윤리적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에 비해 지방의 중재신청건수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에서 기인

김원태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주재발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최근 언론중재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차가 커 지방의 경우 중재건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는 홍보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를 위해 중재위원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재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중재대상 표현물 사본이 있는데, 방송의 경우 녹음·녹화물을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방송에 관한 중재건수가 상당히 적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에 보도태이프의 강제제출명령 등과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또한 피해자만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라든지 언론모니터단체에서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사례를 적발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면 언론피해구제도 많이 되고, 시민단체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변동현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랫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은 중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경찰이나 대학 등 각종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홍보활동이나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통한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전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조직으로서의 언론사, 조직원으로서의 언론인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면 외압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재벌화 현상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조직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언론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문발행 부수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발행부수는 한 기업의 정보가 아니라 공공자산이며 공공정보이므로 발행부수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각계 시민단체 대표가 중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위원장 : 김원태 교수의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하겠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정기세미나와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어 간접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외에 신문이나 라디오, TV 광고를 통해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이 방송녹화테이프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신청서에 날짜, 언론사명, 프로그램명만 확실히 명기하면 녹화테이프를 첨부하지 못하더라도 중재위원회에서 증거조사의 일환으로서 해당 방송사에 녹화물 제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등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법률상 피해 당사자만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으므로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

는 시민단체나 여타 단체 등은 현재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민단체의 의견이 개선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급적 중재위원 중 한 분을 각계 시민단체 대표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위촉권자인 문화관광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현 정간 법상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분,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5개 중재부 중 중재부장은 현역 부장판사께서 겸무를 하고 계시며, 변호사, 전직 언론계 인사, 그리고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 한 분은 여성지도자, 한 분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 문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정이나 반론뿐만 아니라 진정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 필요

나종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 오보감소와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론의 전문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광주지역의 경우 신문사가 많은데, 비슷한 기사가 많고 읽을 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언론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의 전문화를 위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성준 (광주YMCA 이사장) :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번의 정정이나 반론보도만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자의 자

질 문제와 관련,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에서부터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명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최근 중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매체환경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즉 신문·잡지 등 매체 증가와 지면 경쟁, IMF로 인한 언론사의 인력감축 등에 따라 오보발생의 개연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의 향상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재위원회의 많은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재위원회의 홍보를 위해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 시민단체나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참석하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대토론회를 가져 한해 동안의 언론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알아보고, 토론을 통해 언론의 윤리의식이 제고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발표자 : 기자의 자질문제와 관련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의견은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한 건의와 지적, 적절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한편, 기사는 머릿기사로 1면에 보도되었는데, 정정이나 반론기사가 다른 면에 작게 나왔을 경우 피해보상이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도된 면에 같은 크기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자 :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를 미처 드리지 못한 분도 있으나 시간관계상 아쉽지만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김 현 태

창원대 법학과 교수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오늘 현재 18년 8개월여가 흘렀다. 이러한 언론의 축적은 동시에 언론중재제도를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그 동안 연도별 중재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1998년에는 급기야 602건의 중재신청 사건이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와 아울러 최근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특징은 방송사 및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신청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전체 중재신청사건에서 반론보도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종종 중재현장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반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일반시민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서로 혼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반론보도 게재 자체가 앞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인 양 자신을 변호하고 사실관계를 오도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론보도에 대하여 강한 저항 내지는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는 명예훼손의 정도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반대의 주장을 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반시민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은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할 것인가를 판단

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하겠다.

구 언론기본법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 내용이 잘못된 보도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인지 아니면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보도내용에 대한 기사관계자의 반박문 게재를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반박문 게재를 요구하는 반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설상의 통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판례의 태도도 이에 따라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원에서는 과거의 용어상의 혼동으로 인한 개념구별의 곤란성으로 인해 제목은 '정정보도문'으로 하면서도 진술주체를 청구인으로 하거나, 또는 반대로 제목은 '반론보도문'으로 하면서도 진술주체를 언론사로 하는 경우 등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제도의 개념상의 구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사실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양자 모두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념적 기초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의 자유에 내포되어 있는 액세스권과 언론자유에 내재적 한계이론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그러나 양자는 그 개념상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언론의 보도에서 나온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그 보도에 관

련된 피해자의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반론’의 경우에는 보도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언론보도가 사실인 경우에도 그 명확한 입증 없는 한, 반론이 가능하다),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즉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만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므로 보도가 명백히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중재나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게 될 것이다. 또 반론의 경우에는 반론을 제기하는 자의 주장내용을 게재하여 주는 것이므로 반론문의 작성주체는 반론권자 자신이고 언론사가 아니다. 그러나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다(정간법 제16조 제5항).

한편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언론보도를 언론사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정의 경우에는 언론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정정을 주장하는 언론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증이 수월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입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승소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성질상의 차이 때문에 ‘반론’의 제도는 특별법인 정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서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한 반면에, ‘정정’의 제도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중재위원회를 거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간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론권 이외에 정정보도의 청구에 대한 중재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다만 반론보도의 청구를 법원에 제소하기 위하여는 그 사전절차로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정보도의 청구를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이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임의적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발전은 더 이상 언론이 사회계몽적 기능에만 머물 수 없게 만들었으며, 언론사와 시민간에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기능하게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언론사는 진실보도 못지 않게 자신이 보도하는 기사의 상품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언론의 판매부수나 시청률을 높이고 아울러 광고수입도 증대시키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진실과 달리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보도내용이 등장하게 될 우려가 점증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언론현실 아래에서 반론보도청구제도가 갖는 시민의 권익보호역할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결과 진실과 어느 정도 다른 사실이 보도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자신의 권리 못지 않게 타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행 정간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따라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을지라도 확정판결을 통하여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반론보도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어디까지나 기사관계인에게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만큼 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그러한 보도에 대해 신청인(기사관계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있을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권이 남용되어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제한당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토 론

사회·조 현 중

(변호사·중재위원)

김주형 (KBS 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익명 보도와 실명보도에 있어서 A언론사가 익명보도 했으나 B언론사가 실명보도하여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면 익명보도한 언론사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인격권 보호에 나름대로 노력한 언론사마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했음에도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보도후 반론을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 언론보도는 정확성 못지 않게 속보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일반 시민이 정정과 반론의 개념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반론을 쉽게 수용하면 언론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표자 : 먼저, 기사의 속보성 때문에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무한정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점과 언론사가 반론을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당사자가 응하지 않다가 보도 후 반론을 청구하는 경우의 애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반론을 얻고자 했다는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접촉방법과 접촉횟수, 방문시각 등 구체적으로 기사수첩 등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철석 (마산 MBC 방송제작국장) : 주제발표 내용 가운데 당사자에게 반론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하며, 프로그램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판결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윤상기 (김해시 공보감사과장) : 최근 모 방송에서 김해시 신도시 지반이 가라앉는다는 보도

가 있을 후 집값이 하락하여 재산적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보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반론을 충분히 보도한 사실만 입증하면 추후에 다시 이를 수용할 필요 없어

발표자 : 1998년도 서울민사지법 판결에 의하면 사전에 반론을 충분히 보도한 사실만 입증하면, 추후에 다시 이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재산적 손해 문제를 지적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로 든 지역의 경우는 침하현상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는 또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보도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구 (변호사) : 일반 시민들은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의 의미를 혼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재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의 의미로서 반론보도를 청구한다든지 했을 때 중재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허진 (창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반론보도의 주체는 피해자 당사자인데, 최근 방송의 반론보도를 보면 방송사가 주체가 된 느낌을 주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반론보도는 신문의 경우 지면을, 방송은 시간을 할애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면과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반론보도를 제기한 자의 책임이라고 판단됩니다. 방송의 경우 방송사 종사자가 반론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반론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하는 모습이 방영되는 것이 반론

보도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갑영 (고성군수) : 언론사는 한편으로는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행정기관의 이 같은 노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의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시킨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 보도하는 경우 반론보도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김성갑 (경남도민일보 지역여론부장) : 경남도민일보는 신문사의 권익 못지 않게 독자나 언론피해당사자의 명예나 권익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정과 반론’이라는 코너를 1면에 두고, 1주일에 한 두건의 정정 또는 반론을 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론 내지 정정보도의 게재로 신문사의 명예가 실추되기보다는 독자들로부터 “솔직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니다.

좀더 나은 중재를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 제3자도 중재위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국가기관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는 언론기능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언론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있어

허승도 (기자협회 경남사무국장) : 최근 검사들의 집단 소송이나 청와대 수석의 소송사건 등 고위 공직자의 소송제기로 언론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경우 언론기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언론통제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호 (경남신문 사회부장 대우) : 취재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실명보도로 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피의자로 구속한 자를 실명으로 보도했는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된다면 실명보도를 거의 할 수 없게 됩니다. 실명보도와 명예훼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발표자 : 실무상 중재절차에서는 반론보도청구를 했다가 내용이 정정보도인 경우에는 형식 자체를 정정보도청구로 바꾸기도 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정정보도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고 있으나, 반론보도청구를 했을 때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 예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진술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반론보도의 진술주체는 신청인이고 정정보도의 진술주체는 언론사가 됩니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 언론사가 주체가 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종종 시청자가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방송사에서 반론보도를 방송할 경우 반론보도를 청구한 자의 주장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기기관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가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나 정정보도청구권이 아닌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언론사와 신청인뿐만 아니라 중재과정에서 제3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는 제3자를 출석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중재위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다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실명보도와 명예훼손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고위 공직자나 공인, 그리고 공공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내용에 있어 실명보도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현실적 악의’ 기준에 의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원장 :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개념에 대해 잘못 이해되었던 부분을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간법에서 바로잡았지만, 일부 언론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조차 아직까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에 대해 오용, 혼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론보도청구는 신청인의 반박을 보도해 달라는 것으로 원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론보도 수용에 대해 인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동안 활기차고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 주신 조현종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해외언론계 시찰기

박영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 까지 독일, 스웨덴, 영국의 언론피해구제기관을 시찰했다. 방문기간 동안 독일 바이에른주 고등법원 언론전담재판부 자이츠(Walter Seitz) 부장판사와 스웨덴의 지기니우스(Par-Arne Jigenius) 프레스 옴부즈맨, 영국 언론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 웨이크햄 경(Lord Wakeham)을 만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시찰에는 황정근 광주사무소장이 수행했다. 편집자註

황 정 근

광주사무소장

독 일

독일은 언론에 의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독일 언론협회가 있지만 이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관련 언론사에 게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언론에 관한 법률은 주법으로 되어 있다. 바이에른주의 경우 언론법(Bayerschs Pressegesetz), 공영방송법(Bayersches Rundfunkgesetz), 언론매체법(Bayerschs Mediengesetz) 등 세 개의 언론법이 있으며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의 경우 언론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바이에른주 언론법 제10조 제3항은 반론권에 대한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반론권의 속성상 본안소송은 거의 없다. 한편 공영방송법과 언론매체법에 의한 반론권의 경우는 민사상의 가처분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 신청이 제기되면 1심 언론전담재판부는 신청서가 완벽한 경우 접수된 당일 구두변론 없이 판결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구두변론이 필요한 경우, 가장 빠른 시일에 판결할 수 있도록 기일을 지정한다. 그러나 통상 소요기간은 1주일을 넘지 않는다.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4주의 항소기간과 4주의 항소이유 제출기간이 허용되어 최대 8주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판결에 의한 반론보도문 게재 위치에 대해서 언론법 제10조 제2항에서 ‘동일한 부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유발기사와 동일한 위치, 동일한 활자크기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유발기사보다 길게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언론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을 선발하는 특별한 조건이나 기준은 없으며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반론보도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첫째, 문제의 기사가 사실보도나 의견보도이냐의 문제로 사실보도에 대해서만 반론권이 인정된다.

둘째, 오해 유발보도, 즉 언론사들이 기사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문맥상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경우이다. 이 경우 반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문제되는 기사부분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론보도청구 전체가 기각된다. 즉 일부 인용제도가 없다.

스웨덴

스웨덴은 1969년에 신문평의회와 기능을 보강, 언론분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프레스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레스 옴부즈맨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자, 스웨덴 변호사협회 회장, National Press Club 회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이다. 프레스 옴부즈맨의 활동은 단지 기본법에 의해 구속받을 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프레스 옴부즈맨에게 제소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보도와 관련된 사람만이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기사에 대해서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불만신청이 접수되면 프레스 옴부즈맨은 해당 신문사와 접촉, 정정이나 반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문제의 기사가 보도기준을 위반했다고 추정되면 신문 편집책임자의 의견을 요구함으로써 조사를 시작한다. 이 경우는 보도가 있는지 3개월 이내에 제소된 사건에 한한다. 조사결과 신문평의회에서 검토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문평의회에 이 사건을 제기한다.

물론 프레스 옴부즈맨이 기각한 사건에 대해서 불만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신문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신문평의회에 제소된 사건은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보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신문사는 신문평의회 결정 전문을 현저한 위치에 게재해야 하며, 일정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프레스 옴부즈맨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하면 상당한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법적 편집인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프레스옴부즈맨의 결정에 승복한다.



영 국

영국은 1991년 신문평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 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사들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한다. 또한 언론의 윤리문제와 관련 언론사들에 조언을 하기도 한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의 윤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불만신청은 문제의 기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신문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한 경우 편집자로부터 응답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불만신청 사항이 극히 중요한 공익에 관련된 경우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도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사건은 화해 과정과 결정 과정에 의해 처리된다.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5인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며 그 토론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 결과에 만족하면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신청사건의 약 80%는 이 과정에서 해결된다.

이런 화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사무처는 논의된 자료 등을 모아 16인으로 구성된 위원 회의에 상정한다. 위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상정안을 검토한다. 물론 이에 앞서 각 위원들은 사무처의 논의 과정을 보고 받는다.

위원회가 불만 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신문사는 결정 전문을 지면의 현저한 위치에 게재해야 한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언론을 규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1991년 설립당시 18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홍보와 불만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신청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언론사 또한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함으로써 오늘날에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만처리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세 나라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언론불만처리위원회와 신문평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처 및 프레스 옴부즈맨의 중재에 의해 신청 사건 대부분이 해결되고 있었다.

한편 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언론피해의 구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등록된 신문·잡지사의 인터넷상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뉴미디어에 의한 보도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

자신과 타인의 작품에 대한 감상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편지는 저작물에 해당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

작가인 고 미시마 유끼오씨가 쓴 미공개된 편지를 게재한 소설을 둘러싸고 ‘미시마’씨의 유족이 소설의 공표는 복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저자인 福島次郎씨와 발행원인 문예춘추에 대해 출판 금지와 총액 4,300만엔의 손해배상,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판소 민사제29부는 99년 10월 18일 “편지는 저작물이며 유족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시, 출판 금지와 500만엔의 지불,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했다.

저자인 福島씨는 ‘미시마’씨로부터 보내온 편지 15통을 게재한 소설 “미시마 유끼오 — 剣과 寒紅”을 1998년 10월에 출판, 편지를 공표했다. 유족은 ① 편지는 ‘미시마’씨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다. ② 도쿄지방법판소가 발행금지의 가처분결정을 냈으나 문예춘추는 소설의 출판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예춘추는 “편지는 순전한 실용분으로 창작성은 없으며 문예라고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편지에는 ‘미시마’씨의 자기의 작품에 대한 느낌, ‘후쿠시마’씨의 작품에 대한 감상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모두 ‘미시마’씨의 사상 또는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 문예춘추에 대해서는 “유족의 복제권을 침해했고 ‘미시마’씨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공표권의 침해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문예춘추는 다음날인 19일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1999. 10. 29.) □

청소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도한 일본 언론에 법원 잇단 철폐 가해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일본 언론으로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소년법 제61조의 ‘추지(推知)보도금지’ 규정 때문이다.

일본 소년법 제61조는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된 소년 또는 소년시절 범한 죄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용모 등에 의해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본인이라는 것을 추지할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물 비롯 기타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99년 6월, 소년법 제61조 위반에 관

한 민사재판에서, 오사카지방법재판소와 나고야지방법재판소가 잇달아 언론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년법 제61조와 관련한 최초의 사법판단인 오사카지방법재판소의 판결은, 1998년 1월 堺市에서 발생한 19세 소년에 의한 노상 습격 사건을 기사화한 『新潮45』 98년 3월호가 소년의 실명과 얼굴사진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新潮45』의 출판사인 新潮社에게 250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한편 94년 아이치(愛知), 기후(岐阜), 오사카(大阪) 등 3부현에서 4명이 살해된 사건을 다룬 『週刊文春』 97년 7월 24일호와 8월 7일호의 기사가 문제된 나고야지방법재판소 판결에서는 공판 중인 23세의 남성(범행당시는 19세)의 가명을 기사화한 ‘週刊文春’ 출판사인 文藝春秋에 대해 30만엔 손해배상을 명했다.

堺市 사건 소년의 얼굴사진을 게재한 『新潮45』는 그 말미에 “왜 ‘19세 소년’을 ‘실명보도’ 하고 얼굴사진을 게재했는가”라고 쓰고 이 사건은 보기 드문 잔학한 범죄로 범인은 앞으로 6개월 후면 20세가 된다. 또한 1949년에 시행된 소년법은 너무나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데 대해 편집시스템 및 필자의 전면적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를 들어 “본지는 터부를 배척하고 사건의 깊은 취재와 분석을 해야만 한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소년법 실명보도에 대한 언론측 반론에도 불구하고 두 판결은 ‘추지보도’는 안 된다고 언론측 패소를 언도했다.

오사카 지방법원판결은 “추지보도가 곧바로 피의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보도가 소년이 보유한 이익의 보호나 소년의 갱생이라는 우월적인 이익을 상회할만한 특단의 공익상의 필요성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공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략적인 기준을 내놓고 있다.

재판부는 堺市사건의 경우 “되풀이 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방위상 실명 및 얼굴사진을 공표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었으며 사건의 악질성, 중대성이나 사회일반의 관심면에서도 특단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나고야 지방법원 판결은 보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지될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되지 않을 이익보다도 분명하게 사회적 이익의 옹호가 강하게 우선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문연구』 1999년 11월호) □

일본 자민당,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법정기관 설립 추진

일본에서는 최근 언론보도의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도평의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정계에서는 법정기관의 필요성까지 들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변호사협회는 1999년 10월 15일 제42회 인권옹호대회에서 신문, 잡지 등의 활자매체에 대해 ‘보도평의회’의 설립을 요구하는 결의

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자민당은 지난 8월 12일 모든 매체들에 대해 자율적인 고충처리기관을 정비하도록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자율적 규제 실효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법의 해결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 기관의 설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법정기관’의 추진을 시

사했다.

종합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인권보호법’ 등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한 자민당은 미디어 자율규제뿐 아니라 NPO(민간비영리단체) 기관의 창립,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 등에 의한 보도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국민적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 ① 재판이 느리며 ② 명예훼손 등에 대한 배상액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소액이라고 지적, 사법기관에 개선을 촉구하고 “사죄문 명령이나 반론문 게재명령의 적극적인 운용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를 구제한다는 견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보도기관에 대해 ① 기자클럽은 모든 언론인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수사기관의 정보에 치우치는 일이 없이 피의자나 변호사의 주장도 취재한 다음 보도할 것. 또 익명의 범위를 한층 더 넓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③ 사내 옴부즈맨 제도를 창설함과 함께 인쇄매체는 ‘보도평의회’ 등의 제3자 기관을 자주적으로 설치하여 보도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힘쓴다는 세 가지 점에 대한 실행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보』, 1999. 10. 19. ; 『신문연구』, 10월호) □

TV 폭력프로그램에 노출될수록 폭력행위 경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 총무청 조사 결과—

일본 총무청은 최근 어린이들의 폭력행위와 텔레비전이나 게임에서의 폭력표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텔레비전 폭력장면에 접촉이 많을수록 비행, 불량행위나 친구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는 이바라기(茨城)·사이타마(埼玉)·아이찌(愛知)·교토(京都)·효고(兵庫) 등 5부현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효 회수 수는 3,242명(93.6%)이었으며 조사대상이 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텔레비전의 폭력표현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유효 회수 수는 3,098명(89.4%)이다.

텔레비전 프로의 폭력장면에의 접촉빈도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두드려 팬다·때린다·차버린다” 등의 폭력 행위라든가 비행행위

와의 관련을 보면, 폭력장면에의 접촉율이 높을수록 폭력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비행경험에서도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텔레비전 프로의 폭력장면에의 접촉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행동·적대적 행동과 광범위하게 관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호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어린이들이 보는 프로를 ‘전부’ 또는 ‘어느 정도’ 선별하고 있는 보호자가 35%였으며 약 20%는 “전혀 선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에게 ‘매우’ 또는 ‘약간’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강간(74.7%), ‘괴롭힘 혹은 짓궂은 짓’(70.5%), ‘사람을 때리는 폭력장면’(66.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텔레비전의 폭력표현에 대한 반응은 “가정에서 대응하면 된다”가 가장 많은 44.4%였으며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국·프로그램 제

작자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24.2%),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도 20%나 되었다.

v-chip에 관해서는 ‘잘 안다’, ‘조금 안다’는 비율이 32.8%였으며 50% 이상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했다. 도입의 시비에 대해서

는 찬반이 팽팽했다.

(『신문협회보』, 1999. 11. 9.)

* v-chip : 어린이들이 시청하게 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 코드를 TV수신기에 입력시키면 v-chip이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없게 된다. □

미 법원, 취재방식을 문제삼은 Food Lion사 관련 항소심에서 배상액 대폭 감액

Food Lion vs. ABC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방송보도로 양측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1992년 11월 2일, ABC는 뉴스쇼 “Prime Time Live”를 통해 부패하고 상한 음식을 재가공·재포장하는 식품회사 내부광경을 폭로하였다. 사건 취재를 위해 몰래 취업한 두 명의 프로듀서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광경들을 촬영하였다. 오래된 고기와 생선은 다시 포장되어 판매되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바베큐 소스로 감춰지고 있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영업을 끝난 시점에 라이온사의 중역진은 매출이 11% 이상 급감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19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추산되었다.

라이온사는 ABC의 취재내용이 아닌 취재방식을 문제삼음으로써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라이온사는 보도내용의 명예훼손이 아닌 ABC 제작진의 회사 침입 방식을 문제삼아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1997년 ABC 방송사와 제작진이 사기와 무단침입을 저질렀고, 라이온사 종업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백5십만 달러(이후 315,000달러로 조정됨)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라이온사와 ABC 간의 이번 재판은 언론관련 소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뉴스보도의 내용보다는 보도과정의 하

자에 초점을 둔 소송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지난 주 미연방 항소법원 제4차 순회재판부는 사건의 추를 ABC쪽으로 되돌려 놓았다. ABC의 사기 혐의에 대한 배상금을 315,000달러로 축소하는 것을 표결 끝에 2 : 1로 확정지었다. 무단침입과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선 각각 1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던 배심원단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라이온사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음으로써 ABC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길 원했다. 2달러는 그들의 주장이 가지는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는 이 분야의 소송전문가 레빈 변호사의 평이다.

라이온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었지만 법원이 자사의 주장 중 두 가지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회사관계자는 항소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언론사 및 관련단체들은 법원이 ABC 및 언론계 전체를 옹호했다는 것에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취재방식의 문제점에 집중되고 있는 언론관련 소송의 신경향에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인들이 탐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한 ABC 뉴스부문 회장 데이비드 웨스틴의 평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보도내용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 취재방식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이 일반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ABC의 사기 혐의에 대한 배상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언론의 취재 특권을 인정하였다기 보다는 애초의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 잡은 의미가 크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

편, 이번 판결에 반대했던 한 판사는 ABC측의 사기혐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임했던 세 명의 재판관은 라이온사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취재진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인정했다. 즉, ABC가 무단침입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것은 라이온사의 공적 이미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바로 이 부분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사항이 되어왔다.

(*Editor & Publisher*, 1999, 10, 23.) □

영국 언론계, 범죄 피의자 주소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

한 지역신문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예훼손소송에 직면하였다. 이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의 주소를 얻는 절차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대로라면 법원의 재판관련 보도를 하는 모든 신문사가 같은 운명에 처해질 전망이다.

‘노팅검 이브닝 포스트’지는 법원 사무처로부터 15세 소녀에 대한 추잡한 폭행사건에 연루된 줄리 매리어트라는 피고의 주소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게재된 주소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여인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추잡한 폭행에 연루된 세 피고인들의 주소와 나이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브닝 포스트지는 자사의 보도가 특권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노드크리프’지는 지금 당장 명예훼손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현재의 피고 인적사항 공개절차가 바뀌지 않는다면, 신문사들이 대법원에 대한 적정범위의 취재를 기피하는 결과를 낳

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나이와 주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 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영국 전역의 모든 신문사들이 스스로 모든 사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피고는 법정에서 이름만을 확실히 말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브닝 포스트지의 글랜 편집장은 이 부분을 담당하는 법원 사무처에 자신이 우려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팀장인 알랜 퍼시발에게 “사실상 우리는 우리에게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 직원들의 능력에 매일 의존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될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포스트지는 그 위험이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는 판단을 내릴 지도 모른다. 결국 법원 직원들은 인간이며 실수는 있게 마련이다.” 글랜 편집장은 퍼시발에게 법원 직원과 판사, 법원·검찰당국이 항상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법정에서 확실하게 낭독하도록 결정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프레스가제트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문이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게재하는데 있어 막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매우 불필요한 일이다. 독자들은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법정에서 이름과 주소를 낭독하는 것이다. 만일 신문들

이 주소 공개로 인한 위험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관련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범죄 관련사실은 공동체에 알려져야 한다는 지극히 중대하고 당연한 명제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보의 자유는 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Press Gazette, 1999. 10. 29.) □

취재방식이 문제되더라도 언론보도의 사전제한은 수정헌법 위반

미 연방대법원은 오랫동안 언론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밝혀왔다. 판사들이 신문 보도를 제한하는 명령에 동의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며, 간혹 보도 제한이 결정됐더라도 항소과정을 거치는 동안 번복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도인 샬럿시 연방법원에서 벌어졌던 CBS와 정신병원들간의 작은 논쟁이 결국 CBS의 승리로 끝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4월 20일 Charter Behavioral Health System사는 자사의 의료설비 상태를 취재한 CBS의 '60 minutes II' 방송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많은 병원들이 나서, 장시간에 걸친 탐문취재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몰래카메라에 포착된 환자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몰래카메라로 병원 내부를 촬영한 존슨씨는 CBS의 지시에 따라 Charter사에 심리치료사로 취직했었다.

CBS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모든 환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었으며” 방송에 대한 사전제한 조치는 위헌으로 판명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21일 방송시작 8시간 전에 법정에서 벌어진 90분간의 설전에서 Charter사 변호인은 비록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은폐카메라(con-

cealed camera)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을지라도, 몰래카메라(hidden camera)를 이용해 환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방송사측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병원측을 대표한 존 웨스트 변호사는 정신병 환자들이 몰래카메라 촬영사실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느냐고 방송사 측을 공박했다.

CBS를 대표한 레빈 변호사는 자신을 포함한 방송사측 변호인들도 이름을 모를 만큼 환자들의 신원은 비밀에 부쳐졌으며, 따라서 촬영된 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위험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이번의 방송내용이 Charter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에 명백히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CBS는 이와 비슷한 논쟁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1994년 도축 및 정육 포장업체인 Federal Beef Processors사는 이 방송사의 '48시간'이란 프로그램의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사우스 다코타주 법원에 제기했다. 이 회사의 한 종업원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화면 하단부에는 도축장의 위생문제를 제기하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주법원의 데이비스 판사는 CBS측이 이 회사 종업원을 곤경에 빠트린 계산된 범죄행위를 통해 프

로그그램을 제작했으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금지 명령서를 발부하였다.

이튿날, 사우스 다코타주 대법원은 전날 발부된 방송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방송사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CBS는 순회재판 중이던 연방대법원의 해리 블랙문 대법관에게 항소를 제기했으며, 그는 명령의 효력을 24시간 동안 긴급 정지시켰다. 대법관은, CBS가 계산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예심법원의 판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사측의 비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은 마땅히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지,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선례를 감안할 때, CBS와 Charter 병원간의 소송을 담당할 그레함 물렌 판사가 병원측의 방송금지 요청을 기각시킨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레함 판사는 판결논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기존 논리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물렌 판사는

Charter 병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점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그간의 판결을 통해, 신문사가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상황일지라도 사전보도제한은 불가능한 수준까지 신문의 힘을 끌어올려놓았다.”고 물렌 판사는 고백했다.

CBS는 문제의 시사프로그램을 예정대로 4월 21일에 방송하였다. 방송사측 변호사에 따르면, 병원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5월 3일을 기하여 병원측이 제기했던 소송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CBS가 모든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는 아니다. 자의와 관계없이 방송에 출연한 환자·의사·여타 종업원들이 방송사측의 잘못된 취재방식에서 비롯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정서적 고통 등을 근거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Food Lion사가 ABC 방송과의 법정 분쟁에서 승리한 이후 방송사를 상대로 한 이런 방식의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American Journalism Review*, 1999, 10월호) □

미공개 취재자료 공개에 대한 상반된 법원판결로 미국 기자 곤혹

NBC 방송의 뉴스매거진 프로그램인 ‘Dateline’은 루이지애나주의 한 보안관 대리(deputy sheriff)가 프로그램제작진 중 한 사람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게 됐다.

이 뉴스프로그램 제작진은 지방경찰이 거리에 불법 주차된 차 가운데 벌금부과대상 차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명의 프로듀서를 현장에 내보냈다. 그 보안관 대리는 명백한 이유 없이 프로듀서의 취재를 막았다. 프로듀서의 피부색 때문이라는 것이 방송사 측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말썽을 일으킨 그 보안관 대리는 공교롭게도 히스패닉계 부부에 의해 고소당한 상태였었다. 이들 부부는 별다른 잘못없이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교통법

규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았다고 주장하며, NBC 측이 촬영한 편집되지 않은 화면을 법정 증거로 사용하길 원했다. NBC 측은 이 부부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2주 전 미국 법원은, 비편집 촬영화면처럼 중요하지 않거나 공포 이전 상태의 자료를 언론인들이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법조인이나 몇몇 언론자유 감시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8월 27일 미연방 항소법원 제2차 순회재판부는 언론사가 보관 중인 미공표 또는 미방송 상태의 자료들은 제한적인 특권을 가지며 법정소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특권이 인정되는 자료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재정의하였는데, 그 결과 기자의 취재수첩과 초벌 원고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보다 더 쉬워졌다. 이를 두고 버지니아주 알링턴시에 본부를 둔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 위원회'의 그레그 레슬리는 "뒤죽박죽 상태의 가방과 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재판의 판결 뒤에는 1998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에 순회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자들의 비공개 특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신문사 보도국의 내부관행에 비취 볼 때, 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판결이었다. 오직 미연방대법원만이 순회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 이후 순회재판부의 판결은 언론인 관련 재판의 판결기준이나 선례로 곧잘 채택되었다. 이 판결은 언제 어디서나 기자들의 비기밀·비공개 취재자료들을 일반에게 공개시킴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전망했다.

"순회재판부는 뉴욕이라는 한정된 상황에 맞춰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했다. 하지만 뉴욕시에 본부를 둔 수많은 언론매체들을 감안할 때 이 판결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

고 레슬리는 진단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NBC는 순회재판부의 판결을 재고해달라는 신청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문제의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법원으로서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판결과 함께 재판부는 비공개·비기밀 취재자료의 공개에 대한 기존 판결을 순회재판부의 결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버렸다.

곤잘레스 부부 사건 이전까지 제2차 순회재판부는, 기자가 보관 중인 비기밀 자료의 법정 공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어디까지나 그 자료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곤잘레스 부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중요하지만 핵심적이지 않은 사안"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자료도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그리고 기자의 미발표 자료 외엔 다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는 모두 "현실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로 간주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언론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취재기자들을 적잖게 괴롭힐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기자의 취재수첩이 법정에서 공개된다면 기자와 신문 모두 편향적으로 비칠 가능성도 높아지며, 이에 따라 취재원들은 법정분쟁에 휘말려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 이상 취재에 협조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순회재판부의 판결은 기밀 정보와 관련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기자가 기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곤잘레스 부부 재판에서 NBC의 자료공개 거부입장은 채택되지 못했으며 이들 부부는 원했던 녹화 테이프를 입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 & Publisher, 1999. 9. 4.) □

言論仲裁申請事例

本 事例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권관계인의 權益을 위해 公
表치 마시기 바라며, 만약 인용할 때는 假住所·假名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編輯者 註

신청인 회사가 소금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경기중재45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일이구 (대표이사 김혜숙)
피신청인 : iTV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1999. 9. 21.
처리결과 : 함 의

보도내용

iTV : 「10시뉴스」 프로그램(1999년 8월 25일 22
: 00)

내용 : > 아나운서 : 지난밤 7일, 21일 소금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꾸며 판매한 알뜰한
회사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경찰이 소금 제조 업체인 (주)일
이구 전 대표 성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습니다.

> 이청우 장로 : 아프고 피고름이 나와야지만
그게 낫는 것이다. 시키는 대로 했다.

> 윤재연 목사 : 몸이 약하고 지금도 어려운 상
태에 있습니다. 병이 악화되고 12kg이나 빠져 있
습니다.

> 기자 : 이처럼 지난달 (주)일이구 허위 과장
광고와 무면허 의료행위가 보도되고 피해자가 속
출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보도내용 중의 성모 씨는 전 대표이사
로 1996년 10월 1일부터 신청인이 취임, 실권을
일임받았다.

(주)일이구는 조미식품(소금), 건강 식품 등
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인천방송은 8월 25일
자 오후 10시 뉴스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꾸며
판매한 알뜰한 회사이며 피해자속출로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며 무허가 제품이라는 내용의 방송보도를 하였다.

이 보도로 회사의 생명인 신용이 훼손되어 반품이 속출하고 대리점 해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경찰청, 구청의 조사 및 검사 등으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어 반론보도해 줄 것을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iTV 인천방송이 지난 99년 8월 25일자 10시 뉴스에서 (주)일이구의 제품을 보이며 소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꾸며 판매한 알박한 회사를 7일과 21일에도 소개한 바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성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구의 제품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제품이 아니며 이 방송 보도에 나온 피해자들은 (주)일이구의 동업자였고, (주)일이구의 제품으로 부작용이 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식품안전청의 적합 관정으로 정식 특허인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반론을 신청합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
- 내용 : 인천방송이 지난 8월 25일자 10시 뉴스에서 (주)일이구의 제품을 보이며 소금을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꾸며 판매한 알박한 회사를 7일과 21일에도 소개한 바 있다며 그에 관련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성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방송 보도에 나온 피해자들 중 일부는 (주)일이구의 동업자였었고, 또한 (주)일이구의 제품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은 아니지만 식품으로 허가받은 것이므로 반론합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일이구 대표이사 김혜숙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천방송 99년 10월 5일자 10시 뉴스에서 진행자 멘트로 경기·인천지역 소식코너에 방송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iTV : 「10시뉴스」 프로그램(1999년 10월 5일 22:00)

내용 : 저희 인천방송은 지난 7월 7일과 21일, 8월 25일 10시뉴스에서 주식회사 일이구의 제품을 보이며 소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꾸며 판매해 그와 관련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성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방송보도에 나온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주식회사 일이구의 동업자였었고 또한 이 회사의 제품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은 아니지만 식품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대중교통과가 제복착용을 하지 않는 버스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9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윤 준 병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1999. 10. 1.
처 리 결 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운전기사 정장 강요 서울버스 ‘거꾸로 개혁’』 제하의 기사(1999년 9월 29일자 27면)

내 용 : 건설교통부가 버스 운전기사의 복장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다음달부터 운전기사에게 양복 정장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고 서울시도 위반 기사를 단속할 계획이어서 운전기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만7천여 명의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 전원에게 양복을 입도록 하기 위해 흰색 바탕의 Y 셔츠와 자주색 넥타이, 감회색 정장 1벌씩을 나눠주고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제복 착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근무복 윗도리를 벗거나 다른 옷을 입는 운전기사에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근무복 미착용자를 단속하지 않았었다.

조합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2건국운동과 연계, 승객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운전기사가 정장 근무복을 입도록 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서울시 대중교통과장으로서 중앙일보 9월 29일자 27면 『국회선 복장자율법 개정 중인데... 운전기사 정장강요, 서울버스 ‘거꾸로 개혁’』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서울시내버스운전기사의 정복착용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자노련서울시지부가 99. 5. 24.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버스업체가 버스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버스조합과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99년도 이후 운전자 동복은 버스서비스 개선차원에서 복장을 고급화하기로 하고, 본 근무복 이외의 복장은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에서 근무복의 착용을 운전기사에게 적극 촉구하고, 회사는 미착용자에게 강력한 제재

또는 징계조치하며 당사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서울시 대중교통과는 서울시내버스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정복착용이 대시민 서비스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만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다.

이 보도로 서울시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업무처리에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동 업무의 실무과장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9월 29일자 27면에 『국회선 복장자율법 개정 중인데... 운전기사 정장강요, 서울버스 ‘거꾸로 개혁’』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서비스개선을 이유로 양복정장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서울시 대중교통과도 제복착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근무복 상의를 벗거나 다른 옷을 입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서울시 대중교통과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서울시내버스운전기사의 정복착용은 서울시 대중교통과의 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자노련서울시지부가 99. 5. 24.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버스업체가 버스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서울시 대중교통과는 서울시내버스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정복착용이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만큼 과태료부과나 단속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
- 내용 : 지난 9월 29일 27면 『운전기사 정장강요...』 제하의 기사 관련해 서울시는 현 단계에서는 버스운전자 제복착용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 없음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1999. 10. 9.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정정과 반론」란에 게재

한다.

중앙일보 :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9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여중생에게 물건값을 덜 지불했다는 이유로 모욕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300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박 순 구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1999. 10. 1.
처리결과 : 합 의

시간이 지나서야 학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양은 곧바로 아파트 20층으로 올라가 계단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경찰은 도둑 누명을 받은 송양이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1999년 9월 11일 21 : 00)

내 용 : ▷ 앵커 : 아이스크림 값 100원을 냈다, 안 냈다하고 벌인 시비가 결국 한 여중생을 20층 아파트에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100원 때문에 빚어진 사건, 우리가 조금만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 기자 : 10일 낮 3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백양중학교 부근의 한 문구점, 이 학교 3학년 송모 양 등 3명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일행이 계산을 마치려고 나오려는 순간 주인 50살 박모 씨가 송양을 불러 세웠습니다.

하나에 100원씩 하는 아이스크림을 2개 들고 나가면서 왜 한 개 값만 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 기자 : 송양이 계속 돈을 냈다고 주장하자 화가 난 박씨는 송양의 멱살을 잡고 10여 미터 떨어진 학교로 끌고 갔습니다.

▷ 담임교사 : 학생 멱살 잡고 막무가내로 교장실 들어가서 교장선생님께 항의했다.

▷ 기자 : 송양은 교장선생님 앞에서도 돈을 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진술서까지 쓰고 난 뒤 1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문화방송 9월 11일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100원 때문에...’ 제목의 “아이스크림 값 100원으로 인한 시비로 도둑누명을 받은 여중생이 결국에는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20층 아파트에서 숨지게 만들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2개의 아이스크림을 산 송양이 카운터에 와서 100원만 주길래, 100원을 더 내라고 하니 계속 냈다는 반문을 하여 가게를 하다보면 학생들과의 자주 있는 일이라 신청인은 “장사해야 되니 빨리 가거라! 제집애들이 양심껏 살아야지!” 하는 대답과 동시에 느닷없이 신청인에게 욕을 하자 학생의 훈계차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두분의 선생님에게 학생을 맡긴 것이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9월 11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100원 때문에...’ 제하로 “아이스크림 값 100원 때문에 벌인 시비가 결국 한 여중생을 20층 아파트에서 숨지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

는 사실과 다르다.

주인 박순구 씨는 송양이 계속 돈을 냈다는 주장에 그냥 보내면서 훈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양은 주인 박순구 씨에게 “미친 X X”라는 말로 인해 주인 박순구 씨는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말긴 후 돌아왔다.

그후 송양은 학교에서 약 1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알고 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순구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지난 9월 11일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단돈 백원 때문에 무안을 당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여중생에게 병과를 판매한 문구점 주인 박순구 씨는 여중생이 돈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에게 욕을 하여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인도했던 것이며, 이 때문에 투신자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취지가 포함된 내용을 1999. 10. 23. 12:10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TV속의 TV」 프로그램에 방송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TV속의 TV」 프로그램(1999년 10월 23일 12:10)

내 용 : ▷김지룡 :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일어난 또 하나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뉴스테스크시간에 방송된 보도 내용입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 100원 때문에 학교까지 끌려가 모멸감을 느낀 송양이, 결국 자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씨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보도 내용 중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이스크림을 갖고 언쟁이 있었을 때, 박씨는, 송양이 아버지뻘이 되는 자신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무척 화가 났고 또 혼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데려갔다는 것이죠.

▷김현주 :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 어른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훈계차원에서 학교에 데려간 것인데, 그걸 삭제하다 보니 자신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표현했다는 주장이군요.

▷김지룡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도가 나간 후 박씨와 송양의 어머니, 또 학교에까지 그 영향은 아주 크게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니 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씨 : 계집애는 욕이 아니다. 애가 미친새끼야 하니까... 어른으로서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한다.

▷송양 어머니 : 욕했다고만 자꾸 그러는데, 어른이면 전후사정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 그애 15살이다. 철없이 행동할 수도 있다.

▷김지룡 : 현재 박씨는 송양의 어머니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송양을 학교까지 먹살을 잡고 끌고 갔기 때문이죠.

▷이주연 :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번져나가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왜 당시 기자는 이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을까요?

▷김지룡 : 네, 사실 당시 기자가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정황을 설명했다라면 지금 어떻게 문제가 진행됐을지 모를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담당기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자 : 박씨 주장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사화 하다보니 방송용어로는 부적절한 말이었던.

▷김지룡 :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이자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송양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후 언론을 비롯한 어른들간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 정말 사안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습니다. 박씨, 송양의 부모님, 학교, 기자 각각의 입장에 따라 그 책임이나 원인제공이 다른데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주연 : 어떻게 보면 이 송양의 죽음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을 만한 사안입니다. 그럴수록 기사도 좀더 신중했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

신청인 업체가 토마토 재배 후 발생하는 온실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농지 등에 무단매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광주중재3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광양유리온실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수성)

피신청인 : 全南日報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1999. 10. 4.

처리결과 : 함 의

보도내용

全南日報 : 『유리온실 폐기물 무단매립 말썽』 제
하의 기사(1999년 9월 3일자 17면)

내 용 :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4천460평 규모의
광양유리온실이 매년 토마토를 재배하고 난
뒤 발생하는 온실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농지 등에 무단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로 인해 지하수는 물론 인근 청정채소재배
수출단지의 오염이 우려된다.

2일 진월면 월길리 주민들에 따르면 광양시의
회 김모 의원이 운영하는 광양유리온실이 매년
발생하는 부직포와 암면, 폐작물 등을 자신의 동
생 소유 우량농지조성 개답공사장에 매립하고 있
다는 것.

주민들은 “개답 농토의 경우 모래를 채취한 지
역으로 황토로 되묻어야 하는 데도 비용을 절감
하고 폐기물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온실폐기물
을 개답농토에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A
씨는 “김의원이 지난 92년부터 유리온실을 하면
서 매년 3천여 개의 암면과 부직포 등을 개답농
토와 온실주변에 매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암면 찌꺼기와 폐기물에 잔류된 토
마토 성장제인 액비 등 농약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경우 인체 피해와 함께 일본

으로 수출하는 채소의 재배단지를 오염시켜 수출
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공사 유리온실 관계자는 “일부 학
계에서 발암성 및 인체에 해롭다는 시비가 일고
있으나 양액재배에는 현재 70%가 암면을 사용하
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광양유리온실을 경영하는 김
수성으로서 전남일보 99년 9월 3일자 사회면 『유
리온실 폐기물 무단매립 말썽』이라는 제목의 기
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유리온실에 사용되고 있는 암면의 성분은 규산
질비료의 성분과 유사하므로 산성화 토양의 토양
개량제로 사용하며, 토양 질을 높이는데 큰 효과
가 있다.

또한 규산질 비료 성분이므로 덴마크 등 외국
에서는 5년 1회 300평당 500kg미만으로 매립하
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유리온실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부직포
와 폐작물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바닥 폐비닐은
토마토 수확 후 행정절차를 걸쳐 한국자원재생공
사에 수거위탁 처리하였다.

국가권장사업으로 93년 유리온실을 건립, 94
년 처음으로 토마토 생산에 들어 갔는데 92년부
터 매년 3천여개의 암면과 부직포 등을 온실주변
에 매립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한 것이
다.

그리고 암면은 유해금속은 함유되어 있지 않고
사용 후에도 유해가스나, 중금속이 발생되지 않
으므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는 한국온실작물
연구소장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의 말만
듣고 지하수 오염 등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무
책임한 보도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99년 9월 3일자 사회면에 『유리온실 폐기물 무단매립 발생』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광양유리온실이 매년 토마토를 재배하고 난 뒤 발생하는 온실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농지 등에 무단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수는 물론 인근 청정채소재배수출단지의 오염이 우려된다.

광양유리온실이 매년 발생하는 부직포와 암면, 폐작물 등을 자신의 동생 소유 우량농지조성개답공사장에 매립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개답 농토의 경우 모래를 채취한 지역으로 황토로 되물어야 하는 데도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온실폐기물을 개답농토에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김의원이 지난 92년부터 유리온실을 하면서 매년 3천여 개의 암면과 부직포 등을 개답농토와 온실주변에 매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암면 찌꺼기와 폐기물에 잔류된 토마토 성장제인 액비 등 농약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경우 인체 피해와 함께 일본으로 수출하는 채소의 재배단지를 오염시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광양유리온실은 94년부터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토마토 재배에 사용된 재료는 암면(Rock Woll), 비닐이 전부이고 부직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재배하고 난 뒤 발생하는 폐비닐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여 재활용

하고 있으며, 폐암면은 폐기물이 아니고 규산질 비료의 성분과 유사하여 산성화 토양의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어 전,답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폐암면은 덴마크 등 선진외국에서 5년 1회 300평당 500kg을 사용토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면은 비료성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는 무관하고 농작물의 생육촉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폐기물이 아니고 환경오염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상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본보가 지난 99년 9월 3일자 17면 『유리온실 폐기물 무단매립 발생』이라는 제하의 기사 중 부직포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농약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남일보 1999. 10. 16.자 14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全南日報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16일자 1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학교가 식당업주를 내몰기 위해 정부 지원금으로 증축한 식당 옆에 새로운 급식시설을 짓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경기중재46

정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1. 학교법인 은혜학원(이사장 최옥선)

2.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학교장 차경환)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1999. 10.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부일보 : 『학교급식 외면 학생만 골탕』 제하의 기사(1999년 9월 9일자 1면)

내 용 :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급식시설비로 평균 1억여 원씩을 배정받은 10여 개 사립고교가 새학기 들어서도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중략)

지난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의 급식시설비를 지원받은 평택 Y고교는 식당에 가스관 시설 등을 완료하고 증축까지 했으나 학교측이 식당 업주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이 학교는 이 식당 업주를 내쫓기 위해 식당 옆에 또다른 식당건물을 짓고 급식시설을 운영하려고 있어 급식시설로 지원된 정부지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결국 정부지원금으로 설치된 가스배관, 상수도배관, 바닥 타일 공사 등은 무용지물이 돼 막대한 국고만 낭비하고 학생들의 급식은 당초 예정보다 7~8개월 늦어지는 셈이다.

학부모 김모 씨(49)는 “학생들의 건강은 외면한 채 학교급식을 빌미로 돈을 챙기려는 학교측의 의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급식 시설비를 지원한 도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에게 이른 시일내에 급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1999. 9. 9.자 중부일보 1면 『학교급식 외면 학생만 골탕』이란 제목으로 사실과 무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부일보에 대하여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경우 및 진상을 철저히 밝혀 실추된 신청인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중재신청을 한다.

보도내용 중 학교 구내식당 및 매점은 학교 급식이 의무화 되기 이전에 교직원 및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되어진 간이식당과 매

점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급식을 위한 식당과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전 학교장 및 담당 실무자가 구내 매점식당에 급식시설을 하려고 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전혀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함으로써 급식시설 경비 일부를 잘못 지출, 재단 이사회에서 중징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사회를 통하여 제반 사항 등을 재검토, 다시 신축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9. 9.(목)일자 1면에 『학교급식 외면 학생만 골탕』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급식에 대하여 평택 Y고교가 현재 운영 중인 매점식당 업주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식당업주를 내쫓기 위해 또다른 급식시설을 신축하고 운영하려 하고 있다는 요지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평택 Y고교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은 간이식당과 매점으로서 한때 급식시설 설치가 검토된 바 있었으나, 전체 급식소에 필요한 사용면적 및 식사운반 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급식 시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

● 내용 : 중부일보가 지난 9월 9일자 1면에 『학교급식 외면 학생만 골탕』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급식에 대하여 평택 Y고교가 현재 운영 중인 매점식당 업주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식당업주를 내쫓기 위해 또다른 급식시설을 신축하고 운영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평택은혜여중고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은 간이식당과 매점으로서 한때 급식시설 설치가 검토된 바 있었으나, 전체 급식소에 필요한 사용면적 및 식사운반 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급식 시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반론합니다.

반론보도신청인

1. 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 최옥선

2.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 학교장 차경환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99년 10월 14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와 같은 지면(시·교육청, 18개 학교...)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버스 회사가 새로운 노선도입 반대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302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공항교통(대표이사 권영찬)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1999. 10.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일보 : 『비싼 공항버스 운행' 주민 반발』 제하의 기사(1999년 9월 16일자 23면)

내 용 : (전략)

600번(김포공항~잠실 롯데월드 앞)·600-1번(김포공항~청계천6가)공항버스가 서울시내 3백60여 개 노선버스 중 유독 비싼 요금을 받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강서·영등포구 주민 약 1만명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이 구간에 일반 시내버스나 좌석버스를 신설하든지 공항버스의 요금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구청 및 서울시에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들 2개 노선버스만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은 한정면허를 취득했기 때문.

한정면허는 공항을 오가며 호텔이나 면세점 등의 몇개 정류장만 정차하는 관광객을 위한 특별노선 등에 지정된다.

하지만 공항버스는 지난해 7월 일반면허에서 한정면허로 변경되면서 기존 노선 그대로 20~24

개 정류장에서 정차하며 운행되고 있다. 이는 공항을 오가는 KAL 리무진·공항터미널 버스가 직행 또는 3~4군데 정차하는 것과 대조된다. 한정면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운행이란 지적이다.

또 이용객들도 관광객이 아닌 일반 시민이 대부분이다.

계속되는 민원에 서울시는 지난 6월 중순 버스 노선 조정 때 공항버스와 유사한 노선을 새로 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선조정위원회가 이를 부결시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공항 버스업체가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모의원과 조정심의위원인 시의원을 대상으로 거액의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하나 일반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정면허의 경우 요금은 신고사항인데다 구청장이 인가권을 갖고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주)공항교통의 대표이사로써 중앙일보 1999. 9. 16. 자 23면의 『비싼 공항버스 운행' 주민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신청을 한다.

중앙일보는 위 보도에서 한정면허의 취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이나 공항버스의 운행실태 등

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한정면허는 공항을 오가며 호텔이나 면세점 등의 몇개 정류장만 정차하는 관광객을 위한 특별노선 등에 지정된다.”라고 축소, 왜곡된 일방적 해석을 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KAL리무진, 공항터미널버스와는 달리 한정면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운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독자들에게 공항버스 내지 한정면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줌과 동시에 신청인 회사가 마치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더 나아가, 신청인 회사가 거액의 로비를 하여 서울시의 새로운 노선 도입을 부결시켰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추측성 보도를 하였다.

신청인 회사는 위 보도로 인하여 영업상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대표이사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커다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또 내년도 서울시의 버스노선 조정심의시 또는 운임 조정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향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9. 16.자 23면에 『‘비싼 공항버스 운행’ 주민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위 문제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600번, 600-1번 공항버스는 한정면허의 취지에 반하여 운행하거나 합리적 이유도 없이 유독 비싼 요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는 지난 6월 버스노선 조정 때 공항

버스와 유사한 노선을 새로 도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인 (주)공항버스의 700번 좌석 버스의 기존노선을 공항버스 등 이해관련업체 7군데의 기존 노선과 일부 중복된 노선으로 무리하게 변경하려다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공항버스업체가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모의원과 조정심의 위원인 시의원을 상대로 거액의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본보 9월 16일자 23면에 보도된 『‘비싼 공항버스 운행’ 주민 반발』기사와 관련 (주)공항교통은 “근거없이 비싼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노선조정과 관련, 시의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1999년 10월 20일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크기는 본문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의료보험통합과 관련해 정치적 거래설을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31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금 성 철
피신청인 : 노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1999. 10.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노동일보 : 『의보통합 연기배경 논란-참여연대 “정치거래”, 한국노총 “고발”』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1일자 15면)

내 용 : 의보통합 찬반을 둘러싼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논란이 ‘정치적 거래설’로까지 비화,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중략)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치적 거래설은 건강연대 금성철 사무처장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금 사무처장은 지난 9월 18일 오전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 이상이 전문위원, 엄영진 실장 등이 한국노총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의보통합을 강행하면 신당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 자리에 참가한 국민회의 관계자가 전해줬다고 밝히고 있다. 금 사무처장은 구체적으로 “한국노총과 한화갑 사무총장측 간에 직통라인으로 27~28일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이라며 “정치적 거래설과 관련한 구체적 증인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국민건강권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 사무처장으로서 노동일보 10. 1.자 15면 『의보통합 연기배경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치적 거래설은 건강연대 금성철 사무처장의 주장을 근거로 보고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소위 정치적 거래설을 참여연대에 제보한 적이 없고, 그러한 의미의 말조차 피신청인에게 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금 사무처장은 지난 9월 18일 오전... 밝히고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그러한 말을 구체적으로 한 후에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와, 일부 내용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마치 신청인이 인터뷰에 응해서 그러한 발언을 직접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 참여한 국민회의 관계자가 전해줬다.”는 내용은 피신청인이 질문조차 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답변도 물론 없었던 사실인데, 피신

청인이 사실처럼 기사화 하였다.

또 이어서 “금 사무처장은 구체적으로 ‘한국노총과 한화갑 사무총장측 간에 직통라인으로 27~28일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이라며”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신청인이 국민회의 실무자 수준이 아닌 국민회의 수뇌부와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만 답변하였던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99. 10. 1.자 15면에 『의보통합 연기배경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치적 거래설은 건강연대 금성철 사무처장의 주장을 근거로 보고 있다. 금 사무처장은 지난 9월 18일 오전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 이상이 전문위원, 엄영진 실장 등이 한국노총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의보통합을 강행하면 신당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 자리에 참가한 국민회의 관계자가 전해줬다고 밝히고 있다. 금 사무처장은 구체적으로 “한국노총과 한화갑 사무총장측 간에 직통라인으로 27~28일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이라며”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금성철 사무처장은 그러한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지난 1999년 10월 1일자 15면에 『의보통합 연기배경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건강연대 금성철 사무처장은 그러한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노동일보 1999년 10월 23일자 15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동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23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교원인사에 개입하려는 등 빛나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99서울중재311

청 구 명: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장 김두선)

피신청인: 週刊教育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1999. 10. 8.

처리결과: 합 의

보도내용

週刊教育: 『빛나간 서울敎委』 제하의 기사(1999년 9월 20일자 2면)

내 용: (전략)

서울시 교육위원회(의장 김두선)는 지난 14일 임시회를 열어 『교육위원회도 교원인사에 간여할 수 있도록 승진 전직에 대한 공개 추천권을 달라』는 주문과 함께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비롯 교육현장을 자주 찾는 이유가 뭐냐』는 등 엉뚱한 시정질의로 일관,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일부 교육위원들은 이날 타시도 교육감이 술자리에서 한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유교육감에게 해명을 요구한 뒤 발설자로 지목된 모 교육감을 「자질이 없는 사람」, 「교육감 부적격자」등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지난 15일에는 교원인사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조사특위를 구성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월권행위 판정을 받아 망신을 사는 등 촌극을 연출했다.

14일 열린 서울시 교위 임시회는 9월 1일자 교원인사에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으나 대부분의 재를 벗어난 채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인사권 개입, 교육감 흠집내기 등 돌출발언이 잇따랐다.

민경현 위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교원인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뒤 『교육청간부들에게는 인사추천을 받으면서 우리들에게는 이같은 기회를 주지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교육위원회도

교육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위원들에게 인사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세 위원은 서울시내 근무교원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거론하면서 11개 교육청 교육장 중 서울출신이 적은 것은 지역차별이나 다름 없다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론을 거론했다. 이위원은 교육감이 지역안배를 고려, 교육장인사를 단행했다는데 이번 인사에서 서울출신교육장이 적은 것은 무슨 이유냐며, 지역감정을 은근히 부추겼다.

또 김두선 의장과 지용근 위원 등은 서울교육과는 무관한 전국교육감 간담회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또 지역교육감의 자질 문제를 거론, 참석 위원들로부터 『우리 문제나 제대로 풀자』라는 핀잔을 받기도 했다. (중략)

한편 서울시 교위는 15일 교육감의 인사문제를 파헤치겠다며 조사특위를 구성,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기로 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규정, 사실상 위법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관계자는 교육감의 교원 인사권은 국가가 교육청에 위임한 사무인 만큼 교육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교육위원들이 교원인사에 있어 공개추천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신청인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주간교육신문 1999년 9월 20일자 『빛나간 교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지역안배 문제는 중앙부처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서울의 경우 오히려 서울·경기출신의 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고 기계적

으로 지역안배를 한다면 오히려 역 지역감정을 불러올 수 있으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배려할 것을 권유하는 질의를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허위보도했다. 지역교육청 과장급 장학관 임용의 형평성 결여에 대한 교육감의 약속 이행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들을 교육행정에서 배제하려고만 하는 교육감의 행정유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일 뿐이며, 차후 행정을 되도록이면 공개하라는 의미이지 공개추천권을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님에도 동 사항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하여 인사에 개입하였다고 왜곡보도했다.

또한, 조사소위원회 구성은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구성하였음에도 편파적인 보도를 통하여 교육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였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위원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9월 20일자 『빛나간 서울교위』 제목 및 교원인사개입하기·지역감정 조장하기·교육감흠집내기·멋대로 특위구성...교육부 제동에 망신살이라는 부제목의 기사에서 ① “교육위원도 교원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승진 전직에 대한 공개추천권을 달라는 주문과... 교육위원회도 교육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위원들에게 인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 ② 엉뚱한 시정질의로 일관, 극언, 망신을 사는 등 촌극을 연출했다, ③ 지역감정을 은근히 부추겼다, ④ ‘서울의장한테 가서 물어 보라’, ⑤ 참석위원들로부터... 핀잔을 받기도 했다, ⑥ 교육부관계자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교원인사에 있어 공개추천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99년 8월말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 1,14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였으나, 일선에서 인사불만이

계속되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의를 반영하여 집행부(교육청)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하는 본분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시정토록하여 추후에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인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도 인사·학교운영·기타 교육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측에 확인도 없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빛나간 서울교위』 등의 잘못된 보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지난 9월 20일자 『빛나간 서울교위』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임시회에서 교원인사의 공개추천권을 요구하고 멋대로 특위를 구성하는가 하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교육감을 흠집내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서울시교위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8월 인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불만이 계속되자 교육청의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추후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시회의 발언 내용은 학교운영, 기타 교육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으로서 교원인사의 공개추천권을 요구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교육감을 흠집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교육 1999년 11월 1일자 2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週刊教育 : 『정정』 제하의 기사(1999년 11월 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경찰인 신청인이 40대 남성을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몰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313
정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강 덕 원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1999. 10. 8.
처리결과 : 합 의

▷기자 : 김씨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일단 몰려났지만 과렴치범으로 몰려있는 현실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경장 강덕원으로 사건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다.

1999. 9. 17. (금) SBS-TV 8시 뉴스- '일방 조사로 누명'이란 제목의 방송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위 보도에서는 40대 남성이 술 취한 여성들에게 몰매를 맞고도 오히려 성폭력범으로 몰렸으며 진실을 밝혀줄 증인이 있지만 경찰인 신청인이 이를 무시해 버렸다는 요지로 방송되었으나 이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하여 검찰조사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지난 9월 17일 저녁 8시 뉴스 시간에 경찰의 일방적인 조사로 40대 남성 김모 씨가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몰렸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 담당 경찰관인 강덕원 씨는 김씨가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소를 받고 공정한 수사를 한 것이지 일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지난 9월 17일 저녁 8시 뉴스 시간에 경찰의 일방적인 조사로 40대 남성 김모 씨가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몰렸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 담당 경찰관인 강덕원 씨는 김

보도내용

SBS-TV : 「8뉴스」 프로그램(1999년 9월 17일 20 : 00)

내 용 : ▷앵커 : 40대 남성이 술취한 여성들에게 못매를 맞고도 오히려 성폭력범으로 몰렸습니다. 진실을 밝혀줄 증인들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기자 : 지난달 7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4살 김모 씨는 술에 만취해 비틀대는 20대 여성을 가볍게 질책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 : 핸드백으로 머리를 쳐서 제가 잠시 3~4분 정도 기절했습니다.

▷기자 : 여성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때리는 바람에 김씨는 온몸이 붓고 목까지 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체포된 사람은 김씨. 문제의 여성이 오히려 김씨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중략)

▷목격자 임모 씨 :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욕을 하며 핸드백으로 내려친 거죠. 강간이란 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죠.

▷기자 : 목격자 임씨는 필요한 경우 증언을 해주겠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락처까지 적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파출소는 딱 잡아뭉니다.

▷서부파출소 직원 :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도 없어요.

씨가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소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으며 일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1999년 10월 23일까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TV 00 : 15 「마감뉴스」 프로그램 끝부분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화면 하단

에는 동 보도문의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뉴스」 프로그램(1999년 10월 22일 00 : 1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협회가 Y2K 인증작업 심사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등 부실인증남발이 우려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318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회장 여인갑)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1999. 10.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1) 『못믿을 'Y2K' 인증』 제하의 기사
(1999년 9월 20일자 1면)

내 용 :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Y2K) 문제로 인한 재난이 거듭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분야별 업체별로 와이2케이 해결 여부를 따지는 인증작업이 돈벌이로 전락해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런 부실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에 딸린 와이2케이인증센터가 심사기관을 선정하는 과정, 지정된 심사기관의 각 업체에 대한 심사 과정 등 전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와이2케이 대재난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19일 김민석 의원(국민회의)으로부터 입수한,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고위간부와 심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정보

통신업체 관계자들의 간담회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협회 간부는 와이2케이인증 심사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까지 심사인력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 등 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부실심사를 조장했고, 그 결과 와이2케이인증심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심사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 협회는 와이2케이인증을 할 때 컨설팅과 심사를 각각 다른 업체에서 하도록 한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한 업체에 컨설팅과 심사기능을 모두 부여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컨설팅·심사기관이 인증 대상업체에서 받는 수수료 가운데 15%를 커미션으로 챙겼으며, 협회가 접수한 와이2케이인증 신청을 다른 심사기관에 넘겨준 경우에는 수수료의 2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밖에 협회의 간부가 부사장으로 있는 인증 대상업체의 부탁을 받고 대충 심사하게 하거나, 한 건설업체로부터는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아야 하니 인증서부터 달라”는 요청을 받고 ‘빨리’ 처리해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협회는 와이2케이인증 심사기관 선정 과정에서 “심사지정기관이 되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각 업체에 300만원 씩을 요구했다. (후략)

(2) 『‘Y2K’ 날림인증 안된다』 제하의 사실(1999년 9월 21일자 4면)

2000년을 100여 일 앞두고 우려했던 ‘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 (Y2K)에 대한 부실 대비가 사실로 드러났다. 문제해결 인증을 맡은 기관이 이 중대한 문제를 엉터리로 처리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부설 와이2케이인증센터가 자격없는 업체를 심사기관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컨설팅과 심사를 한 기관에서 맡게 하면서, 컨설팅·심사 수수료의 15~20%씩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협회의 고위간부라는 사람이 정보통신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앞장서 부정을 유도하는 발언이 녹취돼 꼬리가 잡혔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번에 부실이 드러난 곳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와이2케이인증센터 한 곳이지만, 현재의 제도나 담당기관의 인식,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곳들도 비슷한 부실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에서 한겨레신문 9월 20일자 1면 『못믿을 ‘Y2K’ 인증』의 기사와 동 신문 9월 21일자 사실 『‘Y2K’ 날림인증 안된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 협회의 Y2K인증업무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심사기관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13개)는 신청인 협회 법인회원으로 대표이사가 기술사 또는 기술사가 근무하는 회사로 능력없는 회사를 지정한 사실이 없다. 또 인증신청을 다른 심사기관에 넘기고 수수료를 20%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모든 면을 확인하므로 대충 심사를 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또한 지정기관이 되려면 협회정관에 따라 법인회원이 되어야 하고, 법인회원이 되면 정관 13조(회비)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돈을 받고 지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즉시 취소한 바 있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명예가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협회에게 Y2K인증심사를 의뢰하려는 업체들이 위 보도로 인하여 계약단계에서 취소하는 등 사업활동이 크게 지장받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한겨레신문이 지난 9월 20일자 1면, 3면 기사 및 9월 21일자 사실 『못믿을 ‘Y2K’ 인증』이란 제하에서 정보통신기술사협회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여, 마치 당해 기관이 Y2K인증에 관한 부실당어리인 양 보도한 바 있다.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 왔다.

”기술사협회는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전문기술인들의 단체로 Y2K인증에 관하여 지금까지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관련된 기관단체들에게 올바른 기술적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론 이들의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 보도로 인하여 기술사들의 명예와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당해 보도는 주요부분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1999년 5월 21일자 국민일보에 전개된 기사와 유사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본보의 이와 같은 보도를 통해 많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및 소속회원 여러분과 당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Y2K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게 되신 국민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한겨레신문이 지난 9월 20일자 1, 3면 및 9월 21일자 사실란에 『못믿을 ‘Y2K’ 인증』 제하의 기사에서 정보통신기술사협회의 Y2K인증작업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는 바 신청인 협회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기술사협회는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전문기술인들의 단체로 Y2K인증에 관하여 지금

까지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관련된 기관단체들에게 올바른 기술적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론 이들의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당해 보도는 일부분이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기술사들의 명예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신청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회장 여인갑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1999년 10월 25일자 제23면 하단에 1

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중재 대상기사의 부제목(정보통신기술사협회...)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문』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25일자 2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주후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332

청 구 명 : 주후보도청구

신 청 인 : 윤 동 수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1999. 10.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8뉴스」 프로그램(1999년 6월 21일 20 : 00)

내 용 : ▷앵커 : 유명 상표 위조현장을 단속한 다면서 지갑공장에 들이닥쳐 가죽원단 8천만원 어치를 빼앗아 달아났던 현직 경찰관들이 붙잡혔 습니다.

▷기자 : 지난 11일 낮 12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피혁제품 가내공장에 경기 부천경찰서 소속 윤모 경장 등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유명 상표를 위조해 지갑을 만드는 현장을 단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기자 : 하지만 이 단속은 현직 경찰이 가죽 원단을 빼앗기 위해 벌인 가짜 단속이었습니다. 윤경장은 자신의 근무지가 부천이면서도 이곳 서

울 홍제동까지 와서 가짜 단속을 벌이고, 피혁 원 단 8천만원 어치를 빼앗아 갔습니다. 윤경장 등 은 빼돌린 원단을 시중에 내다팔려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경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 씨 등으로부 터 유명상표를 도용하는 약점을 잡아 원단을 갈 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어처구니없는 단속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장 : 창고가 비좁아서 창고를 빌려가지고 그 창고에다 보관하게 됐습니다.

▷기자 : 경찰은 윤모 경장에 대해서 공갈혐의 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정모 씨 등 두 명을 구 속했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부천중부경찰서 수사2계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SBS-TV 99. 6. 21. 저녁8시 뉴스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현직경찰관이 가죽원 단을 빼앗기 위하여 벌인 가짜단속이었다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1999. 6. 11. 11 : 50경 위 공장에서 불법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제조한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한 사실이 있으며, 가축원단을 빼앗기 위해 벌인 가짜 단속은 아니었다.

가짜 지갑과 원단을 압수한 상태에서 가짜 상표부착 지갑제조 범인을 검거치 못하여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 진행 중, 정보를 제공한 정보 씨와 1명이 신청인 몰래 압수원단 일부를 처분하려다 검거된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본 방송이 지난 99. 6. 21. 저녁 8시 뉴스에서 부천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경찰이 가축원단을 빼앗기 위해 벌인 가짜 단속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윤경장은 평소 알고지내던 정보 씨 등으로부터 유명상표를 도용하는 약점을 잡아 원단을 갈취하는 제의를 받고 어처구니없는 단속을 벌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윤경장은 지난 9. 29. 자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밝힙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도둑 경찰 무혐의 처분
- 내용 : 지난 6월 21일 부천중부서에 근무했던 윤모 경장이 낀 사기단이 적발됐다는 보도는 검찰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경장은 신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압수된 물건을 빼돌리는 바람에 이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복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 TV 「8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29일까지 보도하되, 제목은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의 육성으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8뉴스」 프로그램(1999년 10월 28일 20: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언론대책문건을 입수한 기자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이회창 총재와 상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35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1999. 11.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1) 『이기자 “이총재 먼저 만났다”』 제하의 기사(1999년 11월 2일자 22:47)

내 용 :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 기자가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 부총재 사무실에서 빼온 ‘언론대책 문건’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먼저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찾아가 문건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2일 “당초 이기자의 주장과는 달리 이기자는 먼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 문건을 보여주었고, 이를 본 이총재가 이기자에게 ‘정형근 의원에게 설명해 주라’고 해 정의원을 만났다”며 “이에 따라 이기자가 이총재에게 문건의 출처를 어떻게 밝혔는지 등에 대해 검찰이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략)

(2) 『새 국면 맞은 ‘문건과문’』 제하의 기사 (1999년 11월 2일자 23 : 22)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 기자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게 앞서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먼저 만나 ‘언론대책 문건’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문건과문’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초 이기자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정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이총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기자가 정의원을 만나기 전 이총재를 먼저 찾아가 문건을 보여 주었으며, 이총재는 정의원을 만나 문건에 대해 상의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중략)

아울러 정의원이 이기자로부터 받은 ‘편지’ 중 검게 지워진 부분에 이총재와 사적으로 ‘깊숙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문구가 있는게 아니냐는 추정 아래 이기자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는 한편 지워진 부분의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이기자가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이총재를 ‘독대’한 자리에서 ▲정의원으로부터의 금전 수수 ▲지난 대선 때의 이총재 지원 사실 등을 얘기하며 문건과문 공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시각을 보였다.

이기자는 그동안 여야 몇몇 인사들에게 ‘지난 대선 때 구 안기부 ○○○특보와 함께 이회창 후보를 지원했다’, ‘내 집사람이 이총재의 딸과 절친한 관계로 선거지원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이회창-이도준-정형근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1999년 11월 3일자 13 : 49)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 기자가 언론대책 문건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게 넘기기 전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사전에 상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회창=이도준 커넥션’ 의혹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략)

이기자와 이총재가 처음 만난 것은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 초기 감사원장과 청와대, 감사원

을 출입하는 취재기자로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총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때 출입기자였고 지난달 28일 찾아왔을 때도 ‘세배 때 뵙고 처음’이라고 했었다”며 “이기자와 가깝다거나 이기자로부터 직접 문건을 건네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정형근 의원은 대공수사 2단장으로 본격적인 안기부 생활을 시작하는 지난 85년, 초기 재야 활동을 하던 이기자를 알게 된 뒤 14년간 정보와 문건을 주고받고, 돈도 오가는 ‘100% 검증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기자에 대한 정의원의 믿음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회창-이도준’을 밀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특히 이기자가 정의원의 문건 폭로후 파문이 확산되자 이총재를 독대했던 배경도 이런 맥락에서 보는 관측도 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연합뉴스는 11월 2일과 11월 3일 연이틀에 걸쳐 언론장악문건과 관련하여 확인하지 않은 내용과 진실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진실인 양 단정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연합뉴스의 기사와 관련, 검찰도 “이기자를 상대로 ‘정의원을 만나기 전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언론문건에 대해 얘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정의원을 만나기 전 이총재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연합뉴스의 기사가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형근 의원이 이도준 기자의 편지 중 일부를 검게 칠해서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근거도 없이 “이기자가 이총재와 사적으로 깊숙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문구가 있는게 아니냐”면서 사실 관계를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추측에 의해서만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사실 확인결과 검게 칠해진 부분은 이기자의 개인 집안문제로 이기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음이 여실히 확인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정정보도와 사과문게재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는 바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연합뉴스는 지난 11월 2일 22시 47분, 23시 22분 통신란의 작성기사에서 『이기자 총재 먼저 만났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도준 기자가 언론대책 문건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먼저 이회창 총재를 찾아가 문건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고, 11월 3일 13시 49분 『이회창-이도준-정형근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정형근 의원이 이도준 기자와 100% 검증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는 등 3회에 걸쳐 언론보도문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의 잘못으로 인하여 보도됨으로써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에 본의아닌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 그리고 기사의 열람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연합뉴스는 지난 2일 『이기자 총재 먼저 만났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도준 기자가 언론대책 문건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먼저 이회창 총재를 찾아가 문건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고, 3일 『이회창-이도준-정형근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정형근 의원이 이도준 기자와 100% 검증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임을 밝힙니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에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연합뉴스 1999년 11월 18일자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11월 18일 17 : 52)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관급공사의 불법 하도급 목인을 조건으로 중고차 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광주중재42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최찬수
 피신청인 : 全光日報
 중재부 : 광주중재부
 접수일 : 1999. 11.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全光日報 :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성행』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7일자 11면)

내 용 : 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목인으로 방치되면서 부실과 체불 등 각종 민원을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남 동부지역의 여수, 고흥, 구례 등에서 발주되는 대규모 관급공사가 낙찰 건설업체에서 무자격 하도업자에게 넘어가면서 각종 공사에 부실을 낳고 있거나 임금체불에 관한 집단 민원과 공사대금 미납 등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사업비 7억4천5백만원의 도로 개설 등 화양면 원포리의 받 기반조성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목포소재 K건설이 낙찰했으나 실제 시공은 무자격자인 정모 씨와 나모 씨가 총공사비의 72%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나 감독관에게 은혜를 위한 금품수수행위가 발생돼 말썽이 되기도 한다는 것.

여수 원포지구의 경우 감독관이 하도급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을 강요하면서 금품을 챙기는가 하면 향응이나 선물을 수수하는 수법의 의혹을 사고 있다. 하도급자 박모 씨 (45·보성군 별교읍)는 “자격이 없는 이유로 과도한 부금과 비용이 누적되면 결국은 자재를 줄인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이나 감독관의 묵인이 없이는 불법하도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담당으로부터 갖은 요구를 당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후략)

(2) 『관급공사 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13일자 1면)

여수·고흥·구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불법하도급이 성행하면서 감독공무원의 금품수수 사실이 연이어 접수돼 물의를 빚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보 7일자 보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K건설이 수주한 화양면 발 기반조성공사를 무자격업자가 채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감독관 최모 씨가 자신의 중고승용차를 턱없는 가격으로 인수해 줄 것을 강요, 2백50만원을 뜯는 등 공사감독과정의 금품수수혐의를 포착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전광일보 1999. 10. 7.자와 13.자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불법하도급자로 지목된 나종근은 공사시공전반에 걸쳐 현장임무만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착공일 5개월 이전에 본 시공회사에 재직하다 현장 대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본 공사의 하도급 관련 부분과 무관하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노임 체불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또한 신청인은 공사착공일 이전인 98. 10. 15. 부터 중이염을 앓고 있어 음주한 적이 없고, 금품수수행위도 없었다.

중고차는 현장과 아무 관련없는 제3자에게 50

만원을 받고 이전했으므로 중고차를 강매케 해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적인 기사이다.

이와 같은 보도로 신청인은 막대한 명예훼손 및 상급자인 신청인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불러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정정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바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 99. 10. 7.자(11면)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성행』, 99. 10. 13.자(1면) 『관급공사 공무원 금품수수 혐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부실공사의 근본으로 지목되는 2~3차에 걸친 하도급이 여수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원포발기반조성공사)에 거둬진 도급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무자격자가 일괄수주를 받아 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부실 시공, 노임체불,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많다.”, 불법하도급 묵인으로 감독공무원이 중고차매매를 강요하면서 향응, 선물, 금품수수 등 수법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 성행 중 감독공무원 금품수수 물의 빚자 검찰수사 착수, 이와 관련 감독공무원 ‘최모’ 씨 자신 중고자동차 강요매매 250만원 금품수수혐의를 포착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불법도급자로 지목된 ‘나종근’은 본공사 현장대리인계를 시에 제출한 후 99. 1. 6. 공사 착공일부터 99. 10. 7. 준공시까지 현장근무자와 현장사무소에서 숙식하며 공사 시공전반에 걸쳐 현장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본 공사착공일인 99. 1. 6. 보다 5개월 이전인 98. 7. 6.부터 이미 본 시공회사에 재직해 오다 현장대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본 공사의 하도급 관련 부분은 무관하다. 또한 본 공사기간 동안 현장근로자 노임 체불한 사례가 없고, 이루 중기사용료, 사급자채대금은 준공금 수령 후 지급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다소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 공사현장에서의 경미한 민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민원도 발생치 않았음이 밝혀졌다.

또한 향응, 금품수수 혐의자로 지목된 공사감독공무원인 ‘최모’ 씨는 현재 산단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토목7급 ‘최찬수’로 밝혀졌으며,

‘최찬수’는 공사착공일(99. 1. 6)이전인 98. 10. 15.부터 중이음을 앓고 있어서 음주를 한 적이 없고, 금품수수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도 없었으며, 중고차는 99. 4. 8.자 부서를 옮긴 이후인 99. 5. 4.자 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담양군 거주 ‘문신’에게 50만원을 받고 99. 5. 7.자 이전 했으므로 공사관련 현장에 중고차를 강매케하여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 없었음이 밝혀져 이상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본지가 지난 10월 7일자 11면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성행』, 13일자 1면 『관급공사 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제하의 각 기사에서 여수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원포받기반조성공사)에 재도급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무자격자가 일괄수주를 받아 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분쇄점이 많고, 불법 하도급 목인을 조건으로 감독공무원이 중고차 매매를 강요하면서 향응, 선물, 금품수수 등의혹을 사고 있으며, 감독공무원 금품수수 건이 물의를 빚자 검찰이 수사를 착수, 이와 관련 감독공무원 최모 씨는 자신의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강요하여 250만원이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불법도급자로 지목된 나모 씨는 본 공사착공일 5개월전인 98. 7. 6.부터 이미 본 시공 회사에 재직해 오다 현장대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본 공사의 하도급 관련 부분은 무관하며, 공사 감독원 최모 씨는 공사착공일 이전부터 중이음을 앓고 있어서 음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가 없는 처지였으며, 금품수수 또한 어떠한 형태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고차 강매건과 관련하여 최모 씨는 99. 4. 8.자로 부서를 옮긴 후 공사화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담양군 거주 문모 씨에게 50만원을 받고 99. 5. 7.자로 이전하였으므로 중고차를 강매케 하여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광일보 1999. 11. 17.자 10면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1999. 10. 7.자) 부제목(감독기관 목인...)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全光日報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11월 17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지도부를 비난한 산하 지부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회장의 독선적 운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경기중재53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한국예총 의정부지부(지부장 이홍재)
피신청인 : 漢北新聞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1999. 11. 8.
처리결과 : 합 의

漢北新聞 : 『의정부藝總, 징계행위로 분열위기』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20일자 3면)

내 용 : 창립6주년을 맞은 의정부예총(사진, 미술, 문인, 무용, 국악, 음악)이 미흡지부와 음악협회지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두 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심각한 내분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예총 이홍재 회장은 96년 2월, 2대회장으로 취임후 그동안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

보도내용

데, 실례로 연극지부에 연극과는 아무관련이 없는 인물을 지부장으로 임명했다가 문제가 되자 사무국장(현성주)으로 임명하고 연극인으로 지부장(무세중)을 바꾸었으며 또한 인가도 받지 않은 시민예술학교(교장 정영수)를 개교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나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어 지부장들과의 잦은 마찰을 빚었다.

또 이홍재 회장은 3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회장임기 정관을 한국예총에서는 4년으로 한다며 고쳐 또 한 번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정관에도 없는 예총 징계위원회(위원장 무세중)를 만들어 지도부에 대한 비협조와 지도부를 비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미술협회지부(지부장 이종오)와 음악협회지부(지부장 박정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1999. 10. 22.자 한복신문에 실린 『의정부예총, 징계행위로 분열위기』 기사가 사실과 달라 신청인 지부에 많은 피해를 주었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다. 신청인 지부는 미술협회의 의정부지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적이 없으며, 다만 예총사업을 방해한 미술협회 소속 개인 1명을 예총회원 자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리고 신청인 지부는 8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원단체 정관에 따라 지부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신청인 지부 회장이 회원단체의 연극지부장을 임명했다고 보도한 것은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시민과 예술인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고 있는 시민예술학교에 대해서 “인가받지 않은”,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는다”, “지부장과 마찰이 있다”고 보도하여 시민예술학교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회장의 임기는 예총본부 정관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을 신청인지부 회장의 개인의 사욕에 의해 고쳐 물의를 빚었다고 잘못 보도하여 개인 명예를 실추시켰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보보도문 :

본지가 지난 10월 20일자 신문에 『의정부예총, 징계행위로 분열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첫째, “의정부예총이 미협지부와 음악협회지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미협지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으므로 바로잡습니다.

둘째, “실례로 연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현성주 씨(현재 의정부예총 사무국장)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현성주 씨는 현재 경기도 연극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극단 의정Y대표, 발마디 대표로 의정부에서만 30여 편을 제작, 기획하였고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우수상 수상, 의정부시장의 감사장(1회), 시상(2회), 한국예총공로상(한국예총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10여 년 이상 경기연극 발전에 공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99 경기연극대상 금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으나, 본지에서 확인없이 연극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기사로 현성주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셋째, “이홍재 회장이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하며, 그 실례로 지부장, 사무국장을 임명하였다고 하였으나, 각 회원단체의 지부장은 예총회장이 임명할 수 없으며(각 협회 총회에서 정식절차를 거쳐 선출하므로), 의정부예총 사무국장도 98년 제7차 간사회의('98. 12. 4) 찬반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는데, 객관적인 판단없이 독선적 운영이라 표현하고, 예총을 이끌고 있는 이홍재 씨 실명까지 기사화 해 명예를 훼손시킴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넷째, “인가받지 않은 시민예술학교(교장 정영수)를 개교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나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있어 지부장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시민예술학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예총정관에 따른 예총목적에 알맞은 사업이며, 등록된 시민들은 매주 정식 강의계획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현재의 시민예술학교 강사와의 마찰은 없으며, 사실 확인없이

보도한 한복신문은 정영수 학장에게 진심으로 사과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이홍재 회장은 3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회장임기 정관을 한국예총에서는 4년으로 한
다며 고쳐 또한번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결과 예총회장의 임기는 예총본부(한
국예총)정관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4년 임기를 함
께 시행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

• 내용 : 본지가 지난 10월 20일자 3면에 『의정
부예총, 징계행위로 분열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의정부 예총이 미협지부와 음악협회지부를 징계
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홍재 회장은 취임 후 독
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연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성주 씨를 지부장으로 임
명했다가 다시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는 내용과
의정부 예총이 인가받지 않은 시민예술학교를 개
교하여 모집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있어 지부장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홍재 회장
은 3년 단임의 회장임기를 4년으로 고쳐 물의를
일으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의정부예총은 미협지부
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없고 사무국장인 현

성주 씨는 현재 경기도 연극협회 부회장으로 재
직하고 있는 등 연극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연
극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
르며, 각 지부의 지부장은 각 지부에서 선출되므
로 예총회장이 무세중 씨를 연극지부장에 임명했
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또한 시민예술학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
한 예총 설립목적에 적합한 사항으로서 매주 정
식 강의계획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사와의 마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회장임
기를 4년으로 바꾼 내용도 예총본부 정관에 의해
전국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바꾼 것이므로
의정부예총이 독자적으로 바꾼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위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
는 한복신문 1999년 11월 30일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와 같은
면(사랑의 도배해주기운동)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분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漢北新聞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1999년 11월
30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병대 사령관직을 불명예 퇴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35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전 도 봉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1999. 11.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부대복지금 전용 해병대사령관 사퇴』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15일 17 : 55)

내 용 : 이갑진(李甲珍·55) 해병대사령관이
해병 1사단장 재직 시절 부대 복지금을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15일 이사령관이 해병 1사단장 재직
중이던 97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부대 복
지금 3천여 만원을 전용, 이중 2천만원을 전도봉
(全道奉·57)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상납하고 나

머지를 부대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이사령관의 부하였던 김모 중령이 이달초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사령관은 당시의 일로 물의가 빚어지자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을 찾아가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조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정기인사때 이사령관을 경질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사령관은 전도봉 전사령관이 부하장교로부터 진급청탁과 함께 1억3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뒤 지난해 4월 해병대 사령관에 임명됐으며 임기를 6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해병대 사관후보생 제35기로 입교, 1998년 4월 18일 명예전역후 예비역에 편입되기까지 33년간 해병대에 헌신하였다.

신청인은 사령관 재임 중 신청정부의 군수비부조정의 일환으로 군 정기인사시 정상적으로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5개월 후인 98년 9월 29일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진행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다.

신청인이 정상적인 전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999. 10. 15.자 기사를 통해 신청인

이 마치 1억3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것처럼 표현하여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상처를 입었기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10월 15일자 사회면에 『부대복지금 전용 해병대사령관 사퇴』 제하의 기사에서 “이사령관은 전도봉 전사령관이 부하장교로부터 진급청탁과 함께 1억3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뒤 지난해 4월 해병대 사령관에 임명됐으며...”란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전임 전도봉 사령관은 1998년 4월 18일 군수비부 정기인사시 정상적으로 전역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연합뉴스로 1999년 11월 24일 13:00에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11월 23일자 20:13)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학교에 단군상을 설치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며 특정 종교를 비호하는 것이라는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368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한문화운동연합(회장 장영주)

피신청인 : 國民日報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1999. 11. 1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國民日報 : 『“단군상 설치하는 교육법 위배”』 제하의 기사(1999년 10월 26일자 27면)

내용 : 평택기독교연합회(김순보 목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단군상이 평택 소사벌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데 대해 항의단을 구성해 학교를 방문,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평택교육청을 방문해 단군상 설치하는 교육기본법에 위배된 처사일 뿐 아니라 특정종교 비호라고 항의하고 철거를 촉구했다.

한편 연합회는 평택교육청이 통일교 산하단체인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경기남부지부가 26일 오후 평택 뉴코아 뷔페에서 가질 ‘고등학교장 초청 성과 순결 가치관 교육 세미나’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주최기관의 성향을 설명한 후 교육청측의 구분별한 처사에 항의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한문화운동연합은 국민일보는 '99. 10. 25. 자 일간지에서 『단군상 설치하는 교육법에 위배... 평택기련, 교육청 항의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기사이므로 중재신청을 한다.

피신청인 국민일보는 공정한 보도라는 언론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단군상 문제에 관해 한쪽 당사자의 잘못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신청인 한문화운동연합은 평택교육청으로 하여금 교육법을 위반하게 하고 평택교육청으로부터 비호받은 특정종교집단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신청인 연합은 10여 년 동안 민족정신회복을 위하여 일구어 온 명예를 하루 아침에 짓밟혔으며 앞으로 범 국민적인 민족정신회복운동을 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국민일보가 지난 99년 10월 26일자 일간지에 『단군상 설치하는 교육법 위배... 평택기련, 교육청 항의 방문』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문화운동연합이 기증하여 평택 소사벌초등학교 교정에 설치한 단군상에 대하여 단군상 설치하는 교육기본법

에 위배된 처사이며, 특정 종교 비호’라는 평택기독교연합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게재하여 올바른 역사와 문화전통속에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갈 가치있고 주체적인 인간상을 키우자는 한 문화운동연합의 교육적 의도를 왜곡 보도한 바 있다.

단군상 건립은 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먼저 교내에 단군상을 건립한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교육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99년 10월 21일자 청주지역기독교연합회에 밝힌 내용을 보면 단군상 건립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한 일이므로 앞으로도 단위 학교별로 원만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9년 7월 20일자 조선일보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6대 종교지도자들이 “단군은 어느 한 종단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의 뿌리이자 건국의 상징이다.”라고 밝혀 국조인 단군이 신앙의 대상으로 축소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문화운동연합이 건립한 단군상은 IMF라는 민족의 국난을 홍익인간이라는 큰 정신으로 뭉쳐서 민족통일과 인류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뜻있는 시민들이 한푼 두푼 정성을 모아 단군상을 기증한 것으로 종교단체가 아니라 민족정신을 회복코자 하는 시민단체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위 보도에서 특정종교 비호라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임을 밝힌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본보의 지난 10월 26일자 27면 『“단군상 설치하는 교육법 위배”』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 문화운동연합측은 “단군상 설치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교육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단군은 어느 한 종단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의 뿌리이자 건국의 상징이다.”고 밝혀왔

습니다. 아울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단군상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한문화운동연합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민족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라고 밝혀왔습니다.

반론보도신청인 한문화운동연합 회장 장영주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6면 또는 27면에 1999년 12월 8일까지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

의 부제목(평택기련...)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國民日報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12월 9일자 2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찰인 신청인들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사고차량의 물건을 빼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99충북중재14

청 구 명: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1. 정현석

2. 오병수

피신청인: 청주MBC-TV

중 재 부: 충북중재부

접 수 일: 1999. 11. 29.

처리결과: 합 의

보도내용

청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1999년 11월 5일 21:00)

내 용 : ▷앵커: 경찰이 교통사고가 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운동화를 가져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물건 가운데 일부가 갑작같이 사라졌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모두 분실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30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산휴게소 부근에서 운동화를 가득 싣고 서울로 가던 화물차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시가 5백만원 상당의 신발 6박스를 잃어버린 운전자는 다음날 경찰 순찰차에 신발이 실려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운전자: 신발 2박스를 콘테이너 박스안에 가져와 가지고 있던 경찰하고 렉카차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기자: 경찰은 분실품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실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은 신발을 가져간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보상을 받으려다 보험회사에서 못 받으니까 경찰관을 물고 늘어지는 거지. 경찰관이 해 주라는 식으로...

▷기자: 그러나 사고현장에 있던 렉카차 운전자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렉카 운전자: 그것 내가 볼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기사화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기자: 신발의 행방을 놓고 운전자와 경찰 사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청주MBC-TV에서는 지난 11. 5.

21:26에 ‘사고차량 물건 빼돌린 경찰’이라는 제하로 고속도로 사고현장에서 진도된 화물차의 운동화 6박스를 경찰이 빼돌려 렉카기사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도하여 경찰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사고현장에 흩어진 화물을 빼돌리는 형편없는 경찰인 양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허위보도는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뿐만 아니라,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충남지방경찰청, 더나아가 전 15만 국립경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고 열심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경찰관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상실시킨 것이다.

제반 조사결과 청주MBC-TV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과장된 내용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실추된 경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1999. 11. 5. 21:26 청주MBC-TV뉴스에서 ‘사고차량 물건 빼돌린 경찰’ 제하에 방송된 “지난 8월 30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산휴게소 부근에서 운동화를 가득 싣고 서울로 가던 화물차가 전복되어 흩어진 운동화 중 6박스를 경찰이 빼돌렸다.”는 보도는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방송되어 정정보도합니다.

당시 피해운전자 김모 씨는 자신이 경찰관과 렉카기사들이 운동화 2박스를 렉카사무실에서 나누어 가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 것은 허위내용을 인터뷰한 것이며 이것을 사실 확인없이 그대로

로 보도한 것으로 사실을 조사해본 바 당시 사고현장에 2박스가 파손되어 렉카기사들이 화물을 옮겨주고 화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고생하여 그 파손된 2박스 중 5켤레가 사용가능하였으므로 김모 씨는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렉카기사들에게 준 것을 렉카기사 4명이 나누어 가졌고 경찰관은 전혀 운동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기에 정정보도합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보도문

• 내용 : 1999년 11월 5일 청주 MBC 뉴스데스크에서 ‘사고차량 물건 빼돌린 경찰’ 제하에 방송된 “지난 8월 30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산휴게소 부근에서 운동화를 가득 싣고 서울로 가던 화물차가 전복되어 흩어진 운동화 중 6박스를 경찰이 빼돌렸다.”는 보도에 대해서, “당시 보도화면은 현장 화면이 아니고 자료화면이었으며, 경찰관은 운동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경찰 내부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청주MBC-TV의 1999. 12. 4. 21:00 “뉴스데스크” 시간에 진행자의 육성으로 방송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청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1999년 12월 4일 2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外國의 言論關係判決

獨逸判決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원고의 사진을 비하적인 문구와 함께 시사만평에 게재하여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원헌 고등법원 1997. 12. 5. 선고-21 U 3698/97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823조 제1항,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

판시사항

1.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피사자(被寫者)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진은 물론 그 사진에 수반되는 문구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근거없이 “가죽바지를 입은 멍청한 바이에른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은 충족된다.

2. 위와 같은 사례에서 기본법 제5조 제3항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Stern이라는 잡지의 “BONNBON”이라는 표제가 붙은 면에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묘사가 있는 경우 10,000마르크의 금전배상에 관하여

사실관계

원고는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Bad Tölz에 사는 사업가이고, 피고는 Stern이라는 잡지의 발행 회사이다.

원고는 1994년 8월 바이에른 지방의 전통민속 의상을 입고 Bonn에 있는 바이에른주 대표부의 여름축제에 참석하였다. 이 여름축제에서 사진 기자가 몇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은 원고가 CSU총재 및 연방재무장관 Theo Waigel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Stern지 1995년 15호의 “BONNBON”이라는 표제가 붙은 면에, 위와 같이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들 중 3장이 연속적으로 실렸다. 그 사진에다가 풍선모양으로 입에 연결되는 원을 그려 그 안에 대화 내용을 적어 넣었다. 그 대화 내용에 의하면, 연방재무장관 Waigel은 원고를 Hingerl 씨로서 CSU 사무총장이 될 사람이며, Protzner 씨와 꼭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원고는 이 사진들의 공표에 동의한 바 없었다.

원고는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피고가 사진에 수반된 문구와 함께 그 사진을 공표함으로써 원고가 아주 전형적인 “멍청한 바이에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였다. 특히 원고는 그 사진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표되는 데 대하여 동의한 바 없고 그 동의를 추단할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원고는 주변의 친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당에서도 조롱을 당했다.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최소한 10,000 마르크의 위자료가 상당하다.

판결이유

1. 그 사진에는 원고의 초상권에 대한 피고의 위법한 침해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823조 제2항,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의 요건은 충족된다.

1) 자신의 사진을 구체적인 형태로 공표하는데 대한 원고의 동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진기자의 활동을 용인하였다고 하여 사진의 공표에 대한 원고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문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자신의 사진이 공표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2)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하여는 지방법원의 상세한 논거를 원용한다.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을 긍정한 점에 있어서도 지방법원의 견해는 옳다.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진의 공표에 관하여 피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것이, 피사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진의 배포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피사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진의 공표를 전체적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고 그 사진을 그에 수반된 문구와 독립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BGH NJW 1965, 1374—뚱뚱한 독일 사람). 세 장의 사진과 그에 부가된 문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존재한다. 즉 인격권의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가 존재한다.

3) 원고를 모욕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사진을 공표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형법 제193조의 준용)에도 해당하지 않고 의견 표명의 자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다. 원고는 시사성 있는 인물도 아니다. 또 원고는, 대중적인 활동을 하는 공인이 됨으로써, 자신이 비판당하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당해야 될 근거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끝으로 기본법 제5조 제3항도 이러한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풍자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묘사내용에 대한 평가와 사실의 주장인지 아니면 가치평가인지를 구별, 진실한 내용인지 여부, 그리고 공중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작품에 적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 심미적 효과라는 평면의 특유한 영향력과 독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Steffen in Löffler Presserecht 4. Aufl. §6LPG Rd.-Nr. 78b). 비록 풍자와 캐리커처가 전적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할 뿐이고 예술가적인 공명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풍자와 캐리커처는 묘사내용을 확정하고 구별함에 있어 여타의 모든 비판적인 표현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는 없다는 점은 물론이다. 풍자와 캐리커처의 묘사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단어와 그림에서 선택된 형식상의 왜곡 즉 비하적인 표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표현양식상의 수단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왜곡은 제거되어야 한다(Steffen 앞의 책 Rd.-Nr. 78c 및 거기에 실린 문헌 참조). 지방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풍자가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정당하다. 원고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풍자에서, “가죽바지 입은 어리석은 바이에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 버렸다. 원고는 CSU의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는, 이상한 말만을 하는 Hingerl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풍자의 최종목표가 되지는 않았지만—풍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분명히 CSU의 인물 정책과 특히 CSU의 사무총장이었다—원치 않는

희생자가 되었다.

2. 사진과 문구를 결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법 제823조 제1항의 요건도 충족된다. 제823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823조 제2항,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에 근거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금까지 실시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3. 원고의 초상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금전배상청구권의 특별요건도 존재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인격권 또는 초상권의 침해가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다른 방법, 특히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의 취소에 의하여 만족할 만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가령 BGHZ 128,1-Caroline von Monaco).

1) 이러한 의미에서의 중대한 침해는 존재한다. 원고는 명칭한 바이에른 사람, 한 번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가족까지 입은 Seppl이라고 평가되었다. 원고의 환하게 웃는 웃음과 고약한 본문을 놀랄 만하게 대비시켜 놓은 것은 것이 중대한 침해의 주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풍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원고를 원시적이고 자만하는 바이에른 사람으로 폄하한 문구의 내용이 특히 문제가 된다. 원고는 이로써 자신의 인격의 핵심 부분이 침해를 당했다.

2) 이러한 침해는 다른 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전보가 행하여질 수 없다. 문구와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이 점은 명백하다. 특히 반론보도나 취소를 통한 손해의 전보는 생각할 수 없다. 전보를 해주어야 할, 가장 중한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이 존재한다.

4. 배상액에 관하여는 법원은 10,000마르크를 적정한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1) 이 금액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전배상청구권의 전보기능과 위무기능으로부터 도출된다.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가 된 공표가 행해진 잡지의 발행부수가 매우 많다는 점과 이 잡지가 그 분야에서 매우 두드러진 위치에 있다는 점도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진이 세 장이나 되고 그 사진이 잡지의 한 면을 전부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그 동안 인정되어 온,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전배상청구권의 예방기능은 원용하지 않았다. 고의적인 남용이라고 볼 만한 단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동안 계속되어 온 이 법원의 실무관행과 다른 유사한 사례들을 참고하였다.

출처 : AFP 1999, 71,72

번역 : 이진만 (수원지방 여주지원 판사) □

프랑스判決

선거 일주일전부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와 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 보호”에 부합한다

A. Meyet

국가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1999년 6월 2일 판결

사실관계

1999년에 실시된 유럽의회의원선거(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s)에

즈음하여, 고등시청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1999년 3월 9일자 권고(recommandation)와 1999년 3월 11일자 결정을 통하여, 유럽의회의원선거에서의 공식적 선거운

동보도와 관련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제작·편성·방영조건에 관한 권고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같은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기관과 여론조사기관에 보낸 1999년 4월 20일자 여론위원회(Commission des sondages)의 커뮤니케(communiqué)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두 기관은 권고·결정·커뮤니케를 통해 1997년 7월 19일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투표가 실시되는 직전 주(일주일)에는 선거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보고내용을 담고 있는 여론조사 관련 보고서의 배포나 발행 및 논평이 금지되고 있음을 모든 언론기관·여론조사기관 및 후보자에게 주지시킨 바 있다.

원고측 주장

첫째, 원고는 언론보도기관이나 여론조사기관 및 후보자에 대하여 여론조사 관련 보고서의 배포나 발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법의 일반원리의 하나인 적법성의 원리(principe de légalité)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제11조 또한 프랑스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더 이상 이 규정은 국제조약과 병립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정의 변경에 따라 동 법률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유럽인권협약으로 불림)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또한 동 협약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재산, 출신 성분 등 어떠한 다른 사정에 따라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측 주장에 의하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는 ‘시민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Pacte international relatif aux droits civils et politiques) 제19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견해)의 자유와 평등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유럽연합협약(Trait sur l’Union européenne) 제2조 F항은 암스테르담협약의 발효에 따라 제6조 제2문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유럽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존중한다. 그것은 유럽연합 구성국의 공통적인 헌법적 전통이며, 유럽연합법의 일반원리로 본다.”

끝으로 원고측 주장에 의하면, 원래 이 금지규정은 유럽인권협약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오늘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배포가 국내에서는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언론기관이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이들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들 규정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이 금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행은 결과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금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판시이유

그런데 마지막 규정에 관해서 원고측의 주장은 혼동이 있는 것 같다. 즉 헌법 제55조에 의거한 규범의 단계구조에 비추어 본다면, 적법하게 체결되고 비준된 조약과 배치되는 법률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할법원은 이 입법규정의 개입으로 인하여 배치되는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그것이 사전적으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와 배포를 금지하는 이들 규정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견해)의 자유, 즉 정보나 사상의 자유로운 수수나 유통의 자유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자유의 행사는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며,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게 되며”라는 규정에 따른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협약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권리 보호”라는 명제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금지를 규정하는 법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투표가 임박한 시점에 발표된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잘못의 수정도 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금지규정의 목적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 보호”에 부합하는 규정이다.

한편 원고측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더 이상 동 법률조항은 유효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입법자가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볼 때 헌법 제55조에 비추어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권고나 결정은 법 적용을 잘못하였다거나 왜곡시켰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단계 구조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월권소송(recours d'excès au pouvoir)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안은 수리대상이 아니다.

해 설

프랑스에서는 1977년 7월 11일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언론기관·여론조사기관 및 후보자가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도 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이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더욱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파리지방법원은 위 법률 제11조는 프랑스가 가입한 유럽인권협약 제11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권리, 즉 알 권리에 배치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TGI Paris 17e ch., Min. public c/Ph. Amaury, Lé gipresse, no 158-3, p.5, note E. Derieux).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의 이 사건 판결 논지에 의하면, 프랑스가 가입한 유럽인권협약에 의거한 정보의 자유의 원리와 현행 프랑스법이 상호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가 비준 동의한 국제협약에 대한 법률의 적합성, 특히 유럽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자유의 적합성 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 최고법원인 파기원 형사부 1996년 5월 14일 판례 (Petites Affiches, 8 juin 1999, p.15)와 마찬가지로, 국사원은 국내법과 유럽인권협약의 양립에 따른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국내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acte administratif)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이 사건에서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권고나 결정의 적법성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정도의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국사원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적시하면서, 프랑스법의 규정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이들 제한 규정은 그 시행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원고측의 또 다른 주장에 의하면, 원래 프랑스법의 규정은 적법한 것이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외국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컴퓨터를 통한 정보전달체계의 진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적법한 제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사원은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 이를 사법기관이 법 적용에 있어서나 행정기관의 법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이 형사법원에 제소될 경우 형사법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은 남아 있다.

하지만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 폐지를 입법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사실적인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시행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법관의 임무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국사원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입법자가 입법형성과정에서 이러한 제반문제를 재고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일에 임박한 여론조사결과와 공표나 배포 금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론의 조작이나 압력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배제하고, 민주적 선택의 완전한 자유와 투표의 신성함을 보장할 수도 있다. 비록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나 여론조사의 남용 등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국사원과 파기원이라는 프랑스의 양대 최고법원으로서 이들 규정이 프랑스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법률의 시행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결과와 공표에 호의적인 다수의 여론이나 캐나다 최고법원과 같이 이를 허용하는 판례(Cour suprême du Canada, du 29 mai 1998, Thomson Newspaper Company c /Canada, L gipresse, no 158-3, p.19, note E. Derieux)가 결국 프랑스 입법자로 하여금 이들 규정의 폐지로 가게 할 것인지, 또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다르게 해석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결과와 공표나 배포금지는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법 제108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헌재 1995. 7. 21, 92헌마177, 199(병합),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헌재 판례집 제7권 2집, 112면 이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는 민주정치구현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우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밴드왜곤 효과(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

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효과(Underdog Effect)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결과와 공표가 선거에 미치는 효과는 각각의 경우마다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공표가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일에 가까와질수록 그 영향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진의와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선거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아닐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는 불공정·부정확하게 행하여지기가 쉽고 그러한 여론조사결과와 공표는 많은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론조사의 긍정적 기능도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만일 여론조사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된다면 국민을 오도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와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표금지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는 여론조사가 갖는 민주정치구현수단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저해하고, 무엇보다도 민주국가에서 고도의 공공적 기능을 지니고 있고 또한 마땅히 최 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와 공표금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선거문화 및 국민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재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금지기간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결과와 공표 및 배포금지에 관해서 이를 입법재량사항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 같다. 현행법상 선거과열을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법정선거기간이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은 1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국회의원선거 포함)는 불과 17일,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에 불과하다.

생각건대 선거전일까지 여론조사결과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자칫 선거일에 임박하여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로 인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결과와 정확성 여부에 관한 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선거기간 중 전면적으로 여론조사결과와 공표를 금지시키는 현행법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기간에 진입하게 해 놓고 막상 선거기간 중에는 금지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프랑스에서와 같이 일주일전 금지조항도 유럽인권협약에 비추어 본 적법성의 논란이 있는 차제에 한국에서와 같이 선거기간 중 전면적인 금

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원고측 주장을 통하여 적절히 적시된 바와 같이 현대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비추어 보건대 외국언론이나 인터넷통신을 통한 보도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 등에만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정보전달체계의 차별만 야기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프랑스와 같이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의 금지규정도 위헌·위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에서는 적어도 일주일 이내 예컨대 5일이나 3일 정도의 금지조항으로 발전적인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LEGIPRESSE(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1999년 제7호(1999, no 164), pp.113-115.

번역 : 성낙인 (서울대 법학과 교수) □

위 원 회 소 식

언론중재위원 위촉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법원 인사이동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중재위원 7명을 새로 위촉했다.

◇ 서울제1중재부

柳元奎 서울지법 부장판사

◇ 서울제2중재부

黃盛載 서울지법 부장판사

◇ 부산중재부

金宗圭 부산지법 부장판사

◇ 광주중재부

吳世旭 광주지법 부장판사

◇ 강원중재부

崔秉喆 춘천지법 부장판사

◇ 충북중재부

주한일 청주지법 부장판사

◇ 경남중재부

朴基東 창원지법 부장판사

사무처 인사 (12월 15일자)

權五根 전북사무소장

外國新聞評議會事例



유족의 어린 딸에 대한 불필요한 보도는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불만 내용

샐리즈베리시에 거주하는 브라운 박사는 1999년 3월 11일자 '샐리즈베리 저널'에 게재된 "아들 자살 1년 후 어머니도 뒤따라"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죽은 여인의 16세 된 딸의 사생활을 불필요할 정도로 침해하여 보도실천강령 제6조(어린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였다. 신청인의 불만은 수용되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자살한 가족의 주치의인 신청인은 정황상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여인의 시체를 처음 목격하였다. 이 여인은 리딩교도소에서 죽은 아들의 사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주장한 뒤로 출판 지역언론의 보도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기사는 이 여인의 16세 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명을 밝히고, 그리고 향후 누가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뤘다. 브라운 박사는 소녀의 어린 나이와 학력평가시험을 앞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기사는 그녀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샐리즈베리 저널의 편집장은, 어느 기자도 소녀에게 접근한 사실이 없고 또 그녀의 나이가 16세 미만도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사는 단지 죽은 여인의 살아있는 유일한 혈육으로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편집장은 밝혔다. 또한 그는, 만약 이 불만이 수용된다면 (부음란을 비롯하여) 모든 사망관련 기사에서 생존자나 미망인의 이름을 다룰

수 있는 신문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평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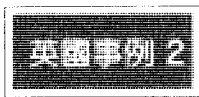
PCC는 편집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보도실천강령 제6조 제1항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불필요한 언론보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PCC는, 16세의 나이와 오빠에 이어 어머니까지 잃어버린 슬픔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소녀야말로 보도실천강령의 보호가 필요한 상처받기 쉬운 사람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PCC는 소녀의 이름과 학교, 거주지 등이 반드시 기사에 있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는 없다고 보았으며, 이 불만을 수용하는 것이 신문사의 보도권리를 제한하는 전례가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PCC는 신청인의 불만을 수용하였으며, 이 사건은 샐리즈베리 저널의 편집장이 일찌감치 해결했어야 옳았다고 평가했다.

브라운 박사는 문제의 기사가 부정확한 내용을 다뤄 보도실천강령 제1조를 위반하였으며, 기사 게재로 말미암아 죽은 여인의 생존 가족들의 슬픈 마음에 상처를 줌으로써 보도실천강령 제5조 (Intrusion into grief or shock)도 위반하였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죽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급하게 신문의 1면에 게재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여인의 죽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다룬 기사에 자신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마치 자신이 모든 정보를 신문사에 제공한 듯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보도내용대로 여인의 시체를 찬장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찬장을 지탱하는 구조물에 목을 매단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샬리즈베리 저널의 편집장은 보도실천강령이 허용하는 조건들에 비춰볼 때 부정확하게 보도된 부분의 중요성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기사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죽은 여인의 동료를 만나려했으나 실패했다고 그는 밝혔다. 기사를 1면에 게재한 것과 보도실천강령 제5조 위반은 연관성이 없으며, 더구나 죽음 직후에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일반적인 보도관행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PCC는, 한 사람의 죽음을 가까운 가족·친지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은 신문의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문 보도가 가장 빨랐던 것도 아닐 뿐더러 기자가 가족에게 접근하여 취재한 것도 아니었다. 비록 신청인은 기사 게재 시점과 1면 게재 사실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은 신문사의 편집재량권에 속하므로 보도실천강령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도정황상 자신이 신문사에 죽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기사가 특정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형식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의 신청인이 지적했던 부정확한 보도내용에 대해 PCC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던 교도소장의 여자관계를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불만 내용

웨이커필드시에 거주하는 린다 화이트 양과 굿윈 씨는 1999년 3월 13일자 '선'지에 게재된 "교도소장과 그의 수감자"란 기사가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는 보도실천강령 제3조(사생활)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그들은 그 기사에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은 수용되지 않았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한 교도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문제의 기사는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였다. 굿윈 씨가 소장으로 있는 뉴홀교도소는 '수감자들'이란 제목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시리즈물의 촬영현장이었으며, 굿윈 소장도 몇 편의 초기 작품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화이트 양은 교도소 직원으로 근무해왔으며 굿윈 소장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동료직원과 연인관계

였다.

이들은 지난 해에도 '선'지가 자신들을 괴롭힌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PCC에 의해 기각당한 적이 있는 신청인들은, 이번엔 자신들이 인지한 부정확한 보도내용들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문제의 기사가, 두 사람의 관계가 같은 교도소에서 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수감자들'이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면서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하였다가, 둘 사이의 관계가 알려지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화이트 양의 옛 연인도 함께 근무지를 옮겼다는 인상을 주는 악의적인 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굿윈 소장은 자신의 지난 과거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따라서 기사 내용에 대해 반박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문제의 기사가 자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을 뿐 그 어떤 공익적 가치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기사와

함께 게재된 몇 장의 사진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생활은 한층 더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화이트양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수감자’란 단어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불평했다.

보도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신문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세 명의 교도소 직원들이 여타 직원들의 사기와 수감자들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도 가치는 충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교도소를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로서 굿윈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예상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신문사는 자사의 보도내용 중에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보도실천강령의 테두리를 벗어날만큼 중대한 불일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도소 규칙에 의해 직원들간의 교제가 금지된 것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폭로도 직업상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지의 두 기자가 기사 게재 직전과 지난 해에 각각 굿윈씨 집을 방문하였으나 신청인들 모두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였던 바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불만은 의미없는 것이라고 신문사는 주장했다.

평 결

PCC는 우선 신청인들이 출연했었던 ‘수감자들’이란 다큐멘터리 시리즈물이 방송되면서 뉴홀교도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져왔음을 지적했

다. 이렇듯 교도소와 굿윈 소장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정황을 감안할 때, 해당 신문사가 이 사건을 파헤쳐 보도한 것은 더 많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 실제로 BBC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문제삼아 시리즈 중에서 굿윈 소장이 출연한 장면을 삭제하고 방송하기도 하였다.

PCC는 신문사가 주장한 이번 보도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하지만, PCC는 굿윈 씨의 경우 자신의 공적 지위 때문에 보도실천강령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신문사 측의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은 대신, 이번 사건의 독특한 상황 요인과 공익적 의미를 가중시킨 BBC의 조치를 그 이유로 폄하였다. 수감자들과 교도소 직원들이 이번 사건에 이들 세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PCC는 회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신청인들의 관계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이번 보도의 공익적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PCC는 간주했다. 단, 굿윈 소장과 화이트양의 사생활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장소(굿윈 씨의 집)에서 찍은 사진을 해당 신문사가 게재한 것에 대해 PCC는 불만을 나타냈다.

신문사로부터의 괴롭힘과 관련해 제기된 불만에 대해 PCC는 재차 심의를 하였으나 중전의 결정은 뒤집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화이트양을 ‘수감자’라 표현한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일 뿐, 보도실천강령 위반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PCC는 밝혔다. □



**기사내용의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균형감각을 상실한 보도를 한 것은 잘못**

호주신문평의회는 발레리 스토크 씨가 1998년 12월 12일자 ‘큐리어 메일’지에 실린 의견기사와 12월 13일자 ‘선데이 메일’지에 게재된 보도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들을 인정하였다.

두 기사는 모두 퀸즈랜드주 달링 다운즈시에 속한 소도시 드릴햄의 한 공립학교 교장이 마을 주민의 학대와 괴롭힘을 피해 다른 학교로 전출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 교장

은 12개월이란 짧은 기간 사이에 세 번째로 그 학교에 취임한 사람이었다.

조안 미첼 교장은 인근 도시의 경찰서로 출두해 자신이 마을사람들로부터 당해왔던 괴롭힘에 대해 호소했다. 협박 전화, 한밤 중에 창문을 깨트리거나 큰 소리로 자신을 욕하는 주민들, 그녀가 기르던 개와 고양이의 독살 등등. 이 사건은 교원노조를 통해 퀸즈랜드주 교육장관인 딘 웰즈에게 전해졌으며, 딘 장관은 문제의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평의회에 불만을 신청한 스티브 부인은, 고정 칼럼니스트가 쓴 의견기사는 드릴햄 주민에 대한 거짓 정보와 악담으로 가득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극악한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악의적이고 편파적이며 중상모략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평의회는 “지옥 같은 마을의 부끄러움이 주는 교훈”이란 기사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문제의 의견기사에 정도를 넘어선 단어들 많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 기사에서 미첼 교장은 마을사람들에 대해 “시골뜨기들의 광란”의 재물로 삼은 “멍청이들”과 “지적 저능아들”로 지칭하고 있

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기사는 “드릴햄의 합리적 학부모들”에게 앞으로 “그 지옥 같은 학교”를 그 누구도 떠맡으려 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 묻기도 하였다.

퀸즈랜드주 교육부가 드릴햄 공립학교 교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의견기사에 언급된 몇몇 사실들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신문평의회가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들의 진위 여부를 파헤칠 입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평의회 입장에서 볼 때, 문제의 의견기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진술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는 보도의 균형감을 심각하게 상실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해당 신문사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다루려는 합리적 수준의 사후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평의회는 12월 13일자 ‘선데이 메일’지의 스트레이트 기사에 딸린 자료사진 제목(“무지하고 거친 시골사람들 : 세 명의 교장을 내쫓은 문제의 학교”) 역시 부정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인정하였다. □

澳洲事例 2

민감한 사안에 대한 증언내용을 보도할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증언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호주신문평의회는 4월 11일자 ‘선데이 텔레그라프’지의 한 기사에 대해 스텐트 프라트씨가 제기한 불만을 수용하였다. 이 기사는 신청인의 친형제이자 Care Australia라는 국제단체에서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스티브 프라트 씨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제협력 자원봉사자의 비밀스런 과거”, “국제협력 자원봉사자의 비밀스런 유엔 활동”이라는 제하의 두 기사는 스티브 프라트 씨가 걸프전이 진행되는 동안 이라크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그의 모친의 증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프라트 씨는 이라크 북부의 난민촌에서 일하는 동안 이런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라크 당국이 현상금까지 내걸어 그를 죽이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그곳으로부터 돌아왔다고 한다.

문제의 기사는 자신의 형제가 유엔을 위한 간첩행위를 했음을 암시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신청인은 기사가 보도된 당시에 자신의 형제인 스티브 프라트 씨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체포된 상황이었는데, 이 보도로 말미암아 그는 간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걸프전 당시 스티브 프라트 씨는 Care Australia가 아닌 호주군대를 위

해 일했으며, 정작 이라크 지역엔 있지도 않았던 만큼 보도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신문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였고, 프라트씨 모친은 자신의 얘기가 기사화될 줄 몰랐으며, 기사 게재 이전에 이런 뜻을 신문사에 전달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한다. 나아가 프라트씨 가족들은 어머니와의 인터뷰 내용도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보도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했었다면 신문사로선 당연히 보도내용의 정확성을 모든 면에서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선데이 텔레그래프’지측은 더도 덜도 없이 프라트 여사가 밝힌 내용만을 기사화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사는 해당 기사들이 스티브 프라트 씨를 간첩행위자로 암시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더욱이 이 기사가 유고슬라비아 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프라트 여사는 자신이 신문 기자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프라트 여사로부터 얻으려했던 신문기자의 시도는 가족들의 비협조로 인해 무산됐다고 신문사는 밝혔다.

평의회는 문제의 기사가 스티브 프라트 씨의 간첩행위를 암시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간주했다. 또한, 이런 식의 보도가 프라트씨 신병에 대한 유고슬라비아 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문사의 판단은 안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그 결과 한 호주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문사는 당연히 보도내용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했어야만 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기억을 보장할 수 없는 프라트 여사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보도한 것은 불충분하였다. 신문사는 다른 경로를 통해 증언 내용의 정확성을 보강해야만 했었으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기사화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평의회는 판단했다. □

위 원 회 소 식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개설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상담 등의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12월 1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소개 및 중재신청 절차 안내, 자료실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on-line 상담실도 개설되어 있다.

한편 <web zine 언론중재>를 별도로 마련, 『언론중재』 1999년 가을호부터 특집논문을 비롯한 학술논문과 해외동향 기사, 외국언론관계판결, 외국신문평의회 사례 등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실에는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에 수록된 판결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어 언론법제에 관심있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國內言論關係判決

判決 1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공익을 목적으로 방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1999년 10월 22일 이○○ 씨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의 촬영거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방영, 원고의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인 경우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공공의 관심대상이므로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 행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방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SBS는 1997년 11월 23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술이 부른 비극-음주운전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음주운전 단속현장과 음주운전자의 뺑소니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방영하면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의 원고의 취중 모습을 음성변조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방영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고, 결국 퇴사에 이르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촬영거부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방영,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判 決 文

사 건 : 99나4900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이 ○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2의 133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배경, 윤석희, 이
영진, 이호천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세영, 송도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우

변론판결 : 1999. 10. 1.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 5. 14. 선고 98가
단779 판결

-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3.부터 1999. 10. 22.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
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
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
달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는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1. 23. 일요일 문성근의 ‘그
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프로에서 ‘술이 부른 비
극-음주운전의 말로’라는 제목하에 음주운전
단속현장, 음주운전자의 뺑소니로 인한 피해 사
례 등을 방영하였다.

나. 위 방송프로 중 약 30초 정도 원고와 관련
된 부분이 방영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남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원고가 앉
아서 ‘나 음주운전 했어, 난 음주운전해서 범법행
위를 했어’라는 원고의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막과 동시에 방영되었고, 원고의 얼
굴은 흐릿하게 영상처리되어 방영되었다.

② 계속하여 원고가 의자에서 일어나 취재진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려다 넘어지는 장면, 의자에
앉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는 장
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들이 방
영되었다.

③ 원고의 얼굴은 음주측정을 하는 장면에서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을 뿐, 다른 장면에서는 원
고의 얼굴이 흐릿하게 영상처리되어 줄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보이는 얼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누
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

다. 당시 원고는 피고 소속 취재 기자들에 대하
여 촬영하지 말 것으로 요구하였는데도, 위 기자
들은 이를 거절한 채 계속하여 원고의 술에 취한
모습을 촬영한 후 위와 같이 방영하였다.

라. 한편 그 무렵 원고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공
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공적인 활동을 한 바
가 없이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사업소장으로 근무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원
고의 모습이 방영되자, 위 회사로부터 간부품위
손상 및 회사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하여 1997.
12. 12.부터 1997. 12. 23.까지 위 영업소장에서
동부사업부지점 지원팀으로 대기발령된 후
1997. 12. 24.에는 서부사업부 장기채권팀으로 전
근되는 인사처분상의 불이익을 받았고, 1998. 2.
7.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1997. 11. 28. 자신의 처와 협의이혼
하였다(한편, 원고는 피고 서울방송의 이와 같은
방영으로 인하여 이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화영의 증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영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
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

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 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음주운전의 폐해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후의 원고의 취중(醉中) 모습을 방영한 것이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항인지에 대하여 살펴건대,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없이 많이 행해지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취재 기자들이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원고의 촬영거부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원고를 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촬영하여 방영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

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 소속 취재 기자들이 원고의 촬영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촬영한 후 음성변조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방영된 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9.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재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22.

재판장 판사 최 은 수
판사 정 창 호
판사 박 연 옥

□

判決 2

동의없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넘겨받아 음성변조처리 없이 방송하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999년 7월 7일 변호사 손경한 씨가 전 세매매계약체결과 관련된 자신의 전화통화 내용

을 음성 변조처리 없이 방송한 SBS와 소속 기자, 그리고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방송사에 넘긴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BS는 1998년 4월 28일 ‘뉴스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매매 및 전세계약 당사자의 분쟁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취재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조창원이 매매계약 이행문제로 원고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넘겨주자 음성변조 처리없이 그대로 재생하여 방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가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건내용이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뿐 전체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대란’에 관한 보도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명예훼손을 전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判 決 文

사 건 : 98가합51935 손해배상등

원 고 : 손 경 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의 7 대정빌딩 6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광 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 변호사 전 경 희

피 고 : 1.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 혁 기

2. 이 승 주

3. 고 철 중

피고 2, 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동 10의 2 서울방송 내

4. 김 용 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2 현대빌라 나
동 201호

5. 조 창 원

서울 송파구 방이1동 한양상가 104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종걸, 이광수, 정현교

변론종결 : 1999. 6. 16.

-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 이승주, 고철중, 조창원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28.부터 1999. 7. 7.까지는 연 5%, 199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로 씬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김용화가 1997. 11. 9.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한양3차아파트 1동 1401호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은 1998. 4. 28.자 뉴스추적 프로그램에 방송된 원고에 관한 보도를 언급하는 일체의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에게, 피고 김용화는 146,810,000원, 피고 조창원은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씬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로 씬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의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명예훼손 사실광고’ 기재와 같은 광고문을 제목은 45급 고덕채 활자로, 본문 내용은 20급 명조체 활자로 각 1회 기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매매 계약의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의 보도

가. 원고와 피고 김용화는 1997. 11. 9.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한양3차아파트 1동 1401호(이하 위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① 매매 대금 : 405,000,000원
- ② 대금 지급일 :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30,000,000원은 1997. 12. 20., 잔금 205,000,000원은 1998. 2. 28.
- ③ 특약 사항 :

· 등기상의 담보 설정 내용은 매수인이 승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할 시만 승계받는다.

· 잔금은 매수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 지급한다.

· 매수인 명의로 용자(은행) 신청시 매도인은 은행 규정에 따른다.

나. 피고 김용화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70,000,000원을, 1998. 12. 20.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 김용화는 잔금 지급일 2일 전에 위 매매 계약을 증개한 피고 조창원을 통하여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김용화에게서 지급받을 매매대금으로 새로 구입할 주택의 대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아파트 1채를 8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이하 피고 방송이라고 한다.)은 방송 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회사이고, 피고 고철중, 이승주는 피고 방송의 기자이다.

마. 피고 방송과 고철중, 이승주(이하 피고 방송 등이라고 한다.)는 1997년 말 외환 위기로 국내 경제 전반이 침체 상태에 빠지고 부동산의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폭락으로 매매 및 전세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여 사회 문제로 되자 이에 관한 적당한 사례들을 찾아 보도하기로 하였고, 마침 피고 김용화에게서 위 매매 계약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자 위 매매 계약이 이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피고 고철중, 이승주가 피고 김용화와 피고 조창원을 상대로 위 매매 계약 성립과 이행 과정을 취재한 후, 피고 방송의 1998. 4. 28. 자 “뉴스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 보도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바. 피고 조창원은 위 매매 계약 이행 문제로 원고와 전화를 하던 중 별지 보도내용 중 “손변호사와 부동산중개업자와의 전화통화”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통화 내용을 원고 몰래 녹음한 뒤, 피고 방송 등에게 그 녹음 테이프를 넘겨 주었고, 피고 방송 등은 위 “뉴스 추적” 프로그램 시간에 위 녹음 테이프 내용을 음성 변조 처리 없

이 그대로 재생하여 방송하였다.

(증거) 갑 3, 4, 5, 6, 7, 10, 21-1, 2, 22-1, 2의 각 기재, 증인 백인영, 장덕수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 보도내용 기재 내용 중 다음 부분은 사실과는 다른 허위 보도이다.

① “집을 전세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주인과 합의를 보았다.”는 부분 : 피고 김용화가 위 건물을 전세 놓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취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잔금 지급일까지는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위 건물의 전세 보증금으로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②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 “하는 수 없이 그 집을 전세 내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주인과 합의” 부분 : 피고 김용화가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며, 위 매매 계약 당시에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위 건물을 전세 놓는 것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피고 김용화가 알아서 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③ “손변호사는 삼풍아파트 66평 짜리를 8억 3천만원에 구입해 두 달 전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부분 : 원고가 잔금 지급일 두 달 전에 미리 이사를 간 것처럼 이해되나, 원고는 피고 김용화의 잔금 지급 약속을 받고 잔금 지급일 이틀 전에 이사를 하였다.

④ “저희들은 26일인가 25인가 통보를 했어요.” 부분 : 원고는 피고 김용화에게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⑤ “그러면서 손변호사는 집을 산 김씨가 잔금을 제 날짜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을 해야겠으며, 김씨에게 팔았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로 산 삼풍아파트를 다시 팔아야겠는데 가격이 그 사이 1억 3천만원이 하락했으니 그 가격 하락분과 잔금에 이자까지 합쳐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분 : 원고로서는 피고 김용화에게서 잔금을 받아야 원고가 구입한 삼풍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 김용화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삼풍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제당하게 되고, 그러면 위 삼풍아파트 매도인은 원고에게 아파트 가격 하락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것이며, 그 손해는 결국 피고 김용화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인데, 이 보도 부분은 전후 부분을 생략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⑥ “자기네 집값하고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가진 자의 횡포지. 왜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미리 이사 가놓고 왜 저한테 집값 내려간 거를 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것과 위 매매 계약 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와는 전혀 별개인데 마치 원고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손해가 확대되었고, 그 확대된 손해를 피고 김용화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다.

⑦ 원고와 피고 조창원 사이의 통화 내용 부분: 통화 내용 전체를 정취하여 보면 쌍방이 IMF 사태의 피해자인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쌍방이 노력하고, 위 건물을 원고와 피고 김용화 모두 매도하여 보아 나온 가격으로 처분하자는 취지인데, 전후를 생략하고 계약 위반시 실손해 배상 원칙을 설명한 부분만 재생하여 방송함으로써 대화 전체의 취지를 왜곡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② 부분의 전체 취지는 피고 김용화가 위 건물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없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김용화가 잔금 지급 방법 중 하나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김용화가 위 매매 계약 체결시 특약 사항 중 하나로, 잔금은 위 건물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부분은 문맥상 위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두 달 전에 이사를 갔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④ 부분은 피고 김용화가 잔금 지급일 2일 전에 피고 조창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⑤, ⑥, ⑦ 부분은 전체로 보면, ‘원고가 위 삼풍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피고 김용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이 사건 보도의 핵심 내용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특별 손해’로서 피고 김용화가 그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야 배상 책임을 지는데도,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인 원고가 이러한 법리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에게 위 ‘특별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법률 문외한인 피고들이 원고의 이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음은 어찌면 당연한 바이고, 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이를 허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자초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 내용은 다소 과장된 표현(“어처구니 없는 일”, “착취”, “횡포”, “터무니 없는 요구”, “허가 낸 도둑”, “칼만 안 든 강도”)이 있을 뿐 전체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허위 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위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경위나 목적은 1997년 말 외환 위기로 국내 경제 전반이 침체 상태에 빠지고 부동산의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폭락으로 매매 및 전세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여 사회 문제(이른바 “전세 대란”)로 되자 이에 관한 적당한 사례들을 찾아 보도하고, 그에 관한 타당한 해결 방

법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었으므로, 위 보도는 단순히 원고와 피고 김용화 사이의 매매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된 “전세 대란”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위 보도는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비방 및 보도 금지 청구와 광고문 게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김용화가 1997. 11. 9. 위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은 1998. 4. 28.자 뉴스추적 프로그램에 방송된 원고에 관한 보도를 언급하는 일체의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다소 과장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위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시 원고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보도를 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의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명예훼손 사실광고 기재와 같은 광고문을 제목은 45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내용은 20급 명조체 활자로 각 1회 기재하라는 청구 부분은,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유 없다.

4. 비밀 녹음과 녹음 테이프 재생 방송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가. 피고 방송 등과 피고 조창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창원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와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테이프를 피고 방송 등에게 넘겨 주어, 피고 방송 등이 위 프로그램에서 위 녹음 테이프를 음성 변조 처리 없이 재생하여 방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창원과 피고 방송 등은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인 음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창원이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한 점, 위 녹음 테이프가 음성 변조 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되어 방송된 점, 위 프로그램의 시간대, 시청률, 방송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김용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김용화도 위 비밀 녹음에 가담하였으므로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용화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 김용화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김용화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1998. 7. 23. 위 건물을 당시 시세인 277,500,000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원래의 매매 대금인 405,000,000원과 재매매 대금 277,500,000원과의 차액인 127,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또 피고 김용화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김용화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모두 특별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김용화에게 그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김용화가 잔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할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 조창원에 대한 중개 수수료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매매 계약 당일인 1997. 11. 9. 피고 조창원에게 중개 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조창원은 피고 김용화와 통정하여 잔

금 지급을 지연시켰고, 또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창원에게 중개 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조창원이 피고 김용화와 통정하여 잔금 지급을 지연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김용화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된 이상 그 후 피고 김용화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창원에게 중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방송 등과 피고 조창원은 연대

하여 원고에게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1999.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7.

재판장 판사 이성룡
판사 함석천
판사 김선일



判決 3

원고의 공천헌금수수 관련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999년 9월 1일 새정치국민회의 양성철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연합뉴스, SBS, 세계일보 및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 허기하 전남도의원들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연합뉴스는 5천만원, SBS와 세계일보는 각 1천만원, 피고 허기하는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8년 6·4 지방선거 당시 원고가 공천헌금 5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피고 허기하의 발언내용이 정치인인 원고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임에도 사실 확인 절차도 밟지 않았고, 결국 많은 언론사들이 원고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검찰청이 원고의 공천헌금 수수혐의를 포착한 바 없음에도 마치 검찰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원고의 공

천헌금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다른 언론사들에 송부함으로써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피고 SBS에 대해서는 검찰청이 원고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피고 연합뉴스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종결 계획 기사까지 송부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타언론사가 이미 원고에 대한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 (98서울중재214, 215, 216) 연합뉴스와 SBS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정정보도가 게재되었고,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세계일보측에서 정정보도를 게재하여 취하한 바 있다.

判 決 文

사 건 : 98가합107104 손해배상(기)

원 고 : 양 성 철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5 호수마을
럭키롯데아파트 407동 902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박 연 철

피 고 : 1. 허 기 하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고운아파
트 1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용 학

2.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의 1

대표이사 김 종 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이상직, 나승복

3. 주식회사 서울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대표이사 윤 혁 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
무소

담당변호사 이광수, 정현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형 성

4.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의 1

대표이사 이 상 회

지배인 이 정 재

변론종결 : 1999. 7. 28.

주 문 : 1. 원고에게, 피고 허기하는 100,000,000
원,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5,000,
000원, 피고 주식회사 서울방송, 주식회
사 세계일보는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1999. 9. 1.까지
는 연 5%, 1999. 9. 2.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허기하 사
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허기
하가 각 50%를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
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가 90%를, 나머지 피고들이 10%를 부
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허기하는 2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 주식회사 서울방송, 주
식회사 세계일보는 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
여 1998.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이 사건 보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박철귀의 증언과
이 법원의 조선일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
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
증이 없다.

가. 원고는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구례·곡성 지
구당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이고, 피고 허기하는 새
정치국민회의 전남 도지부 대변인이자 전남 도의
회 의원이며,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피고
연합이라고 한다.)는 다른 언론 매체 등에 기사를
송부하는 통신사이고, 주식회사 서울방송(이하 피
고 서울방송이라고 한다.)은 방송 사업 및 문화 서
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SBS-TV 방송
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
(이하 피고 세계일보라고 한다.)는 일간 신문인
세계일보를 발행,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
다.

나. 피고 허기하는 1998. 9. 29. 12:00경 광주 동
구 남동에 있는 ‘갯마을 식당’에서 전라남도 의회
출입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위
식당에 들어서던 중, 홀에서 소외 박래명을 만났
는데, 위 박래명에게서 ‘원고가 1998. 6. 4. 지방 선
거 당시 소외 국정환에게 소위 공천 현금 500,000,
000원을 받은 뒤 돌려 주지 않아 위 국정환이
1998. 9. 30. 오전 서울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기
자 회견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광주일보 기
자 조경완, 전남일보 기자 김정현, YTN 기자 이
인배 등 언론사 기자 10명이 모여 있는 방으로 들

어와 박래명에게서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였다.

다. YTN 기자 이인배는 피고 허기하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14:00경 YTN의 광주지방검찰청 출입 기자인 김범환에게 원고가 공천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취재를 부탁하였다.

이에 위 김범환은 피고 연합의 검찰청 출입 기자인 정열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한 뒤 같은 날 17:00경 함께 광주지방검찰청 정민수 차장 검사를 찾아가 피고 허기하가 말한 바가 사실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정민수 차장 검사는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위 검찰청 강영권 특수부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이에 강영권 특수부장은 같은 날 19:00경 국정환을 출석케 한 뒤 원고에게 공천 현금을 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국정환은 원고에게 공천 현금을 준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며, 같은 날 19:30경 강영권 특수부장은 피고 연합의 정열 기자에게 연락하여, 국정환이 돈을 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라. 피고 연합의 정열 기자는 1998. 9. 30. 10:03경 별지 1-1 기재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서울방송,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 이를 송부하였고, 같은 날 15:25경 별지 1-2 기재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이를 송부하였으며, 피고 연합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송부받은 문화일보, 광주타임즈, 전남매일, 중부일보 등 많은 언론사는 위와 같이 송부받은 기사를 참조하여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마. 피고 서울방송은 1998. 9. 30. 11:00 뉴스 프로그램과 17:00 뉴스 프로그램에서 별지 2-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20:00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별지 2-2·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바. 피고 세계일보는 1998. 10. 1. 자 세계일보에 별지 3-1·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 피고 허기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허기하는 위와 같이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

치인에 대해 정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을 경우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발언 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원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정환을 출석시켜 조사하게 되었으며, 결국 피고 연합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많은 언론사들이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허기하는 위와 같은 발언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허기하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 허기하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허기하의 발언 내용이 정치인인 원고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임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절차도 밝지 않은 점, 위 발언으로 결국 많은 언론사들이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원고가 마치 공천 현금을 받은 듯한 인상을 심어 주게 된 점, 원고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고소 취소로 석방되기도 위 명예훼손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허기하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피고 연합, 서울방송, 세계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1998. 9. 29. 17:00경 YTN의 김범환 기자와 피고 연합의 정열 기자에게서 원고의 공천 현금과 관련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서 국정환을 출석케 하여 조사를 하였고, 그 전에는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은 사실 여부에 관하여 내사나 수사를 벌인 적이 없음이 분명하며, 같은 날 19:00경 국정환을 출석케 한 뒤 조사를 하였지만 국정환은 원고에게 공천 현금을 준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고, 위 검찰청은 그 후에도 별다른 조사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 연합의 정열 기자는 1998. 9. 30. 10:03경에 별지 1-1 기재와 같이 “광주 지검 특수부(강영권 부장검사)는 30일 국민회의 전남도 지부장 직무대행 양성철 의원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의원 공천과 관련, 거액의 공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씨가 도의원 공천을 대가로 양의원에게 5억원을 건넸는데도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탈락된 뒤에도 양의원이 돈을 돌려 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다른 언론사에 송부하였는 바, 위와 같은 표현은 전체적으로 위 검찰청이 원고가 국정환에게서 공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확실하게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국씨가 공천 현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검찰청은 1998. 9. 29. 17:00경 피고 연합의 정열 기자와 YTN의 김범환 기자에게서 원고의 공천 현금과 관련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비로소 국정환을 출석케 하여 조사를 하였을 뿐, 다른 수사 자료 등을 통해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바가 없고, 또 같은 날 바로 국정환을 조사하였으나, 국정환이 공천 현금을 준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강영권 특수부장이 피고 연합의 정열 기자에게 연락하여 ‘국정환이 공천 현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였음에도, 피고 연합의 정열 기자는 마치 위 검찰청에서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다른 언론사들에 송부함으로써 다른 언론사들도 1998. 9. 30. 위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연합은 그 소속 기자인 정열의 위와 같은 기사 작성과 송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가) 공공의 이익

피고 연합의 별지 1-1 기재와 같은 기사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진실인지 여부

피고 연합은, 위 기사 내용이 원고가 국정환에게서 공천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도한 것이고, 또 위 검찰청이 국정환을 출석케 하여 이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원고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사에는 허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연합의 위 기사 내용이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임은 그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검찰청은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았고, 단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국정환을 조사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검찰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원고의 공천 현금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였으므로, 피고 연합의 위 기사 내용은 결국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위 기사 내용 중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한 부분은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국정환이 공천 현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인데, 검찰 관계자가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 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연합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연합이 위와 같은 보도를 하게 된 경위, 보도 내용이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인 점, 위와 같은 보도가 나간 지 5시간 22분 후 별지 1-2와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공천 현금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를 작성 보도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연합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서울방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서울방송은 위와 같이 1998. 9. 30. 자 11:00 뉴스 프로그램에서 별지 2-1 기재와 같이 위 검찰청이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도를 하였고, 피고 연합에서

같은 날 15:25경 “양성철 의원 공천비리설은 사실 무근”이란 제목으로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사실 무근이어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란 기사까지 송부받았음에도 같은 날 17:00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며, 같은 날 20:00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별지 2-2 기재와 같이 “양성철 의원의 공천 현금 수수 의혹은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일단 내사를 종결하였다.”는 보도를 하면서도, “양성철 의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검찰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더불어 보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듯한 보도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서울방송은 위와 같은 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서울방송의 별지 2-1·2·3 기재와 같은 보도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진실한지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피고 서울방송은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검찰청이 원고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를 개시한 바가 없음에도, 별지 2-1 기재와 같이 위 검찰청이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처럼 보도하고, 더구나 피고 연합에서 원고에 대한 수사 종결계획 기사까지 송부받았음에도 17:00 뉴스 프로그램에서 아직도 수사 중인 것처럼 보도를 한 이상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또 피고 서울방송이 위와 같은 보도를 함에 즈음하여 보도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서울방송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이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인 점, 별지 2-2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공천 현금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이어서

내사를 종결하였다고 보도한 점, 그러면서도 원고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긴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서울방송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 세계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세계일보는 1998. 9. 30.에 이미 원고에 대한 현금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판명되었고, 피고 연합을 비롯한 다른 언론사들이 이미 원고에 대한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음에도, 1998. 10. 1.자 세계일보에 별지3-1·2 기재와 같이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회의 의원은...양성철...의원 등이다.”, “...양성철 의원 등 호남출신들이 공천비리 의혹 등과 관련, 잇달아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마치 아직도 원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세계일보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3-1·2 기사의 초점은 원고가 공천 현금을 받았거나 이로 인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기보다 사정 대상이 주로 일부 지역 의원들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인 점, 1998. 10. 17.자 세계일보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긴 했으나, 최초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16일 후에야 그것도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정정보도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세계일보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허기하는 100,000,000원, 피고 연합은 5,000,000원, 피고 서울방송, 세계일보는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8.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199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5%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9. 1.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함 석 천
판사 김 선 일

<별지 1-1>

연합뉴스 1998/09/30 10:03

• 제목 : 국민의회의 梁性喆 의원 공천비리 의혹 수사

• 내용 : (광주=연합) 鄭 熱기자=광주지검 특수부(姜永權 부장검사)는 30일 국민의회의 전남도 지부장 직무대행 梁性喆 의원(구례·곡성)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공천과 관련,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梁의원이 6·4 지방선거 당시 곡성 제2 선거구 국민의회의 전남도의원 공천과 관련해 광주 K음식점 대표 鞠모 씨로부터 5억원의 공천현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29일 오후 鞠씨를 소환,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鞠씨가 도의원 공천을 대가로 梁의원에게 5억원을 건넸는데도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탈락된 뒤에도 梁의원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鞠씨가 혐의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사실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L, P, K 등 국민의회의 호남출신 의원 3~4명이 공천과 관련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지 1-2>

연합뉴스 1998/09/30 15:25

• 제목 : “梁性喆 의원 공천비리설은 사실무근” (속보)

• 내용 : (광주=연합) 鄭 熱기자=광주지검 특수부(姜永權 부장검사)는 30일 “국민회의 梁性喆 의원이 전남도의원 공천과 관련해 5억원을 받았다는 설은 조사 결과 잘못 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梁의원이 6·4 지방선거 당시 곡성 제2선거구 도의원 공천과 관련해 鞠모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9일 오후 鞠씨를 소환, 사실여부를 추궁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梁의원이 공천현금을 받았으며 鞠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이를 폭로하려 한다는 얘기가 29일 전남도 모의원에 의해 제기됐으나 鞠씨가 극구 부인하고 梁의원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지금으로선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梁의원에게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별지 2-1>

• 제목 : 양성철 의원 관련 SBS뉴스 보도 녹취록

• 내용 : 1. 1998. 9. 30. SBS 오전 11시 뉴스

검찰은 채의원 말고도 양성철 의원 등 호남출신 국민의회의의원 너댓명이 공천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1998. 9. 30. SBS 오후 5시 뉴스

검찰은 전남 도의원 공천과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성철 의원을 비롯해 서너명의 호남출신 국민의회의 의원의 공천비리도 수사 중입니다.

<별지 2-2>

SBS 1998/09/30 오후 8시뉴스

• 제목 : 황낙주, 수뢰혐의 소환

• 내용 : 국회의장을 지낸 한나라당 황낙주 의원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채영석 의원을 비롯한 호남출신 국민의회의 의원 너댓명도 공천관련 비리로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로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황낙주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7선의 한나라당 중진입니다. 황의원은 지난 95년 창원의 한 호텔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공무원 인사, 지방선거 공천에 두루

개입해 수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의원이 경성으로부터도 2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소환에 끝내 불응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권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은 오늘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하루 이틀 기다려 본 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사전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 채영석 의원도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국민회의 군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손모 씨로부터 억대의 공천현금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의원 말고도 호남출신 국민회의 의원 서너명의 공천비리 혐의를 잡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철 의원의 공천현금 수수 의혹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일단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지검은 경성비리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현철 씨의 측근으로 미국에 도피 중인 모 사립대 김원용 교수가 경성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성비리 수사는 한나라당 이기택 전의원의 사법처리만을 남겨둔 채 넉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SBS 박성구입니다.

<별지 2-3>

SBS 1998/09/30 오후 8시뉴스

- 제목 : 단식에 삭발까지
- 내용 :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검찰의 소환소식에 정치권은 하루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단식에 삭발까지 강행하며 반발했습니다. 원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이기택 의원의 단식에 이어 이젠 국회의원 삭발이라는 극단적인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수사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국민회의 지도부까지 모두 나서 삭발을 말렸지만 정의원의 삭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황낙주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국민회의 김종배, 채영석 의원과 양성철 의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야당의 거물급 중진위원이 비리 혐의로 또다시 소환될 것이라고 밝혀 정치권은 더욱 움츠러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SBS 원일희입니다.

<별지 3-1>

세계일보 1998. 10. 1.자

- 제목 : 국민회의 司正 대상의원들 “왜 하필 우리나라”

金宗培 의원 등 호남4명/대부분 초선이나 비주류/결백주장 “희생양” 반발

- 내용 : 호남출신으로서 검찰수사의 「타깃」으로 떠오른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여당 내 비주류와 초선의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회의 의원 4명은 鄭鎬宣(정호선), 金宗培(김종배), 梁性喆(양성철), 蔡映錫(채영석) 의원 등이다. 3선의 蔡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이고 전국구인 金의원은 金相賢(김상현) 고문 계보의 비주류다.

더구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소환통보를 받은 鄭의원과 金의원은 이미 「흠집」이 난 상태다. 鄭의원은 6·4 지방선거 때 나주시장 공천비리로 한차례 검찰수사를 받았고 金의원은 다른 뇌물사건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재고처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는 金潤煥(김윤환), 李基澤(이기택) 전 부총재와 7선의 黃珞周(황낙주) 전국회의장 등 실세와 중진이 사정칼날을 맞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사정당국 관계자는 『투서나 루머가 많다 보니 내사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초년생들이 주로 걸린 데 대해서는 『경쟁자 등 주변관리를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는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鄭의원은 이날

공천대가로 2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까지 했고, 金의원도 후배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이권 청탁 대가가 아니라며 뇌물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鄭虎元 기자)

<별지 3-2>

세계일보 1998. 10. 1.자

• 제목: 국민회의 “혹시나도…” 호남출신의 원 초진장

鄭鎬宣·蔡映錫 의원 등 잇단 거론 / “물갈이 시작된 것 아니냐” 불안감

국민회의도 소속 의원들이 속속 검찰에 「呼名(호명)」되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호남출신 의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鄭鎬宣(정호선) 의원에 이어 蔡映錫(채영석), 梁性喆(양성철) 의원 등 호남출신들이 공천비리 의혹 등과 관련, 잇달아 검찰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金宗培(김종배) 의원도 전국구이긴 하나 호남출신이다.

호남출신들은 사정당국이 경찰까지 동원, 대대적인 내사에 들어간 데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음은 누구 차례냐』, 『언제 끝나는 거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종 투서나 지역구와 정치권루머 등에 대해 광범위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 사정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호남에 司正 칼끝을 겨누는 데 대해 야당의 편파·보복사정 주장을 희석시키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당내 불만도 많다.

「호남 물갈이」가 본격화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金大中 대통령이 질책한 전례에서 알 수 있듯 지역세에 안주해 온 호남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었다는 얘기다.

물론 이들이 사법처리된다고 보긴 아직 이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부분 내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정리과정에서 클리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黃政美 기자) □

1999년도 총목차 색인

제70호(1999년 봄)

- ▣ 취임사
언론 피해자들의 권익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박영식
- ▣ 이임사
언론의 자유는 더욱 신장하고 피해구제는
더욱 완벽하게 김두현
- ▣ 언론중재위원 위촉
- ▣ 특집 / 언론피해구제와 ombudsman 제도
ombudsman 제도의 기능과 역할 안광식
한국 언론의 ombudsman 제도 운용
실태와 전망 김재홍
- ▣ 국내논문
'98년도 언론관계판결 회고 장영수
- ▣ 위원칼럼
신입생의 변 최춘근
- ▣ 기고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현행 법제의
비교분석 방석호
- ▣ '98년도 언론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 해외동향
- ▣ 자료 I / 언론중재신청사례
- ▣ 자료 II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미국·독일·프랑스·일본
- ▣ 자료 III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미국·영국·호주·중화민국
- ▣ 자료 IV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1.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원고의 편지를 '김일
성 애도서신'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왜곡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
상하라
 2. 자동차연비향상장치를 생산하는 원고와의
인터뷰를 자의적으로 삽입, 편집보도하여

- 효과없는 제품의 제조업자라는 인상을 받
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유명작가의 남편인 원고가 사진 제공 및 사
생활에 대한 기사화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여 초상권, 프
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 4. 원고단체가 친북·이적 활동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손해배상과 함께 정
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제71호(1999년 여름)

- ▣ 특집 /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 김영철
공적기록의 보도와 사생활보호 성낙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면책사유 강경근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한위수
- ▣ 국내논문
위법적 취재 관행과 법적 환경 유일상
- ▣ 위원칼럼
여성과 언론 최중현
1999년 지방토론회
<대전>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 판례 ... 오영권
토 론 사회·최근학
<강원> 수용자 주권의 법제론적 고찰... 박용수
토 론 사회·지규현
- ▣ 해외동향
- ▣ 자료 I / 언론중재신청사례

▣ 자료 II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자료 III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 · 호주

▣ 자료 IV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1. 직접 취재에 의해 원고의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 기사를 게재한 경우 보도의 신속성일가는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위법성 조각정도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없다
2.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전제로서 적시한 사실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하라
3. 유명가수의 사망사건과 관련, 혐의를 받은 원고가 범인으로 확정된 듯 오락프로그램에서 수차례 방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정간법에 정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정간물등록신청을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관청에서 시설미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감정 다스리기..... 김학수

▣ 해외동향

▣ 자료 I / 언론중재신청사례

▣ 자료 II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미국 · 일본

▣ 자료 III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미국 · 호주 · 영국

▣ 자료 IV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1.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간법 제 18조 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보도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소한 부분에 대한 저위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검사인 원고가 청탁을 받아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제72호(1999년 가을)

▣ 1999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

<제1주제>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 최영훈

<제2주제>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한위수

<제3주제>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배금자
종합토론 사회 · 김학수

▣ 국내논문

범죄보도와 면책사유의 적용..... 이인호

▣ 언론관계판례평석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 오경식

▣ 위원칼럼

제73호(1999년 겨울)

▣ 특집 / <결산> 1990년대 한국언론과 언론법제

언론관계판결 경향 황도수

언론자율규제의 변천과 성과 최선열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 ... 한동원

언론법제연구 동향 정진석

▣ 국내논문

한국언론과 보도유보(엠바고) 김해도

▣ 위원칼럼

언론의 진실보도와 오보 공병진

▣ 기고

공직자와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염규호

▣ 지방토론회

〈광주〉 언론자유와 중재제도..... 서정우
 토 론 사회·구양술

〈경남〉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김현태
 토 론 사회·조현중

▣ 해외시찰

해외언론계 시찰기 황정근

▣ 해외동향

▣ 자료 I / 언론중재신청사례

▣ 자료 II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독일·프랑스

▣ 자료 III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미국·호주

▣ 자료 IV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1.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공적 인
 물이 아니라면 공익을 목적으로 방영한 것
 이라 볼 수 없다
2. 동의없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를 넘겨받아 음성변조처리 없이 방송하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하라
3. 원고의 공천헌금수수 관련 혐의가 포착되
 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
 으므로 손해배상하라

▣ 1999년도 총목차 색인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仲裁業務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是正勸告業務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전국 15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관련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 (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經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言論社가 反論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회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的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的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的 內容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代表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 ① 言論報道로 인한 紛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人 이상 8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文化觀光部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 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중 5分の 1 이상은 言論界 人士 중에서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 言論人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仲裁節次等) ① 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報道로 인한 反論報道請求權 또는 民法 第764條에 의해 訂正報道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第16條 第1項이 정하는 期間(第16條 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 協議 不成立된 날로부터 14日)안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仲裁은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仲裁部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 仲裁部의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言論社에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④ 仲裁은 申請接受日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仲裁部의 長은 지체없이 仲裁期日을 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取下한 것으로 보며, 言論社인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趣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이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仲裁部는 職權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參작하여 申請趣旨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公평한 해결을 위한 仲裁決定을 할 수 있고, 仲裁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仲裁不成立 決定을 한다. 다만, 職權으로 仲裁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仲裁申請 接受日로부터 21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다만 當事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送達받은 날로부터 7日 이내에 仲裁部에 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그 決定은 效力을 상실한다.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의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

에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反論報道請求의 訴는 第18條 第6項의 仲裁不成立 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者는 反論報道請求의 訴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民事訴訟法 第693條에 의한 申請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8條 第1項의 規定은 民法 第764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反論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19條의 2(不服節次) ①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하는 裁判에 대하여는 抗訴하는 이외에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不服節次에서 審理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을 取消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論報道請求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 取消裁判의 내용을 報道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 言論社가 이미 이행한 反論報道와 取消裁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損害의 賠償을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에 局限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反論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 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文化觀光部 長官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 23 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재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을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 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 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 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事實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 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周 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 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 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 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 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종합유선방송법

第45條(反論報道請求權) ① 綜合有線放送에 公表된 事實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 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綜合有線放 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綜合有線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反論報道는 사실적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的인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綜合有線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時間帶에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⑦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프로그램供給者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供給者도 第6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 ⑩ 綜合有線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第8條의 3(放送의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 選舉日전 90日부터 選舉日까지 放送에 의하여 公表된 人身攻擊,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② 放送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時間 이내에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放送社의 代表는 選舉放送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回附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 放送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第8條의 4(定期刊行物の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 選舉日전 90日부터 選舉日까지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人身攻擊,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報道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發行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言論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48時間 이내에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の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掲載하여야 하되, 다음 發行號가 選舉期間 종료후에 發行되는 경우에는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日刊新聞에 이를 掲載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言論社의 代表는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言論仲裁委員會는 回附를 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Press Arbitration Quarterly

Vol. 19, No. 4, Winter 1999

— CONTENTS —

- 6 • Retrospect of the Press and Press Law
in the 1990's
- 70 • Critical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Embargo in Korea
- 114 • Cases of Press Arbitration in Korea
- 142 • Cases of Court Ruling in Foreign Countries
- 149 • Cases of Press Council in Foreign Countries
- 154 • Current Court Ruling Cases in Korea

Published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5F., Korea Press Center Bldg., 25, 1-ga, Taepyung-ro, Joong-gu, Seoul, Korea